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329-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 1 7 1 0 8 호



승인번호
제 117108 호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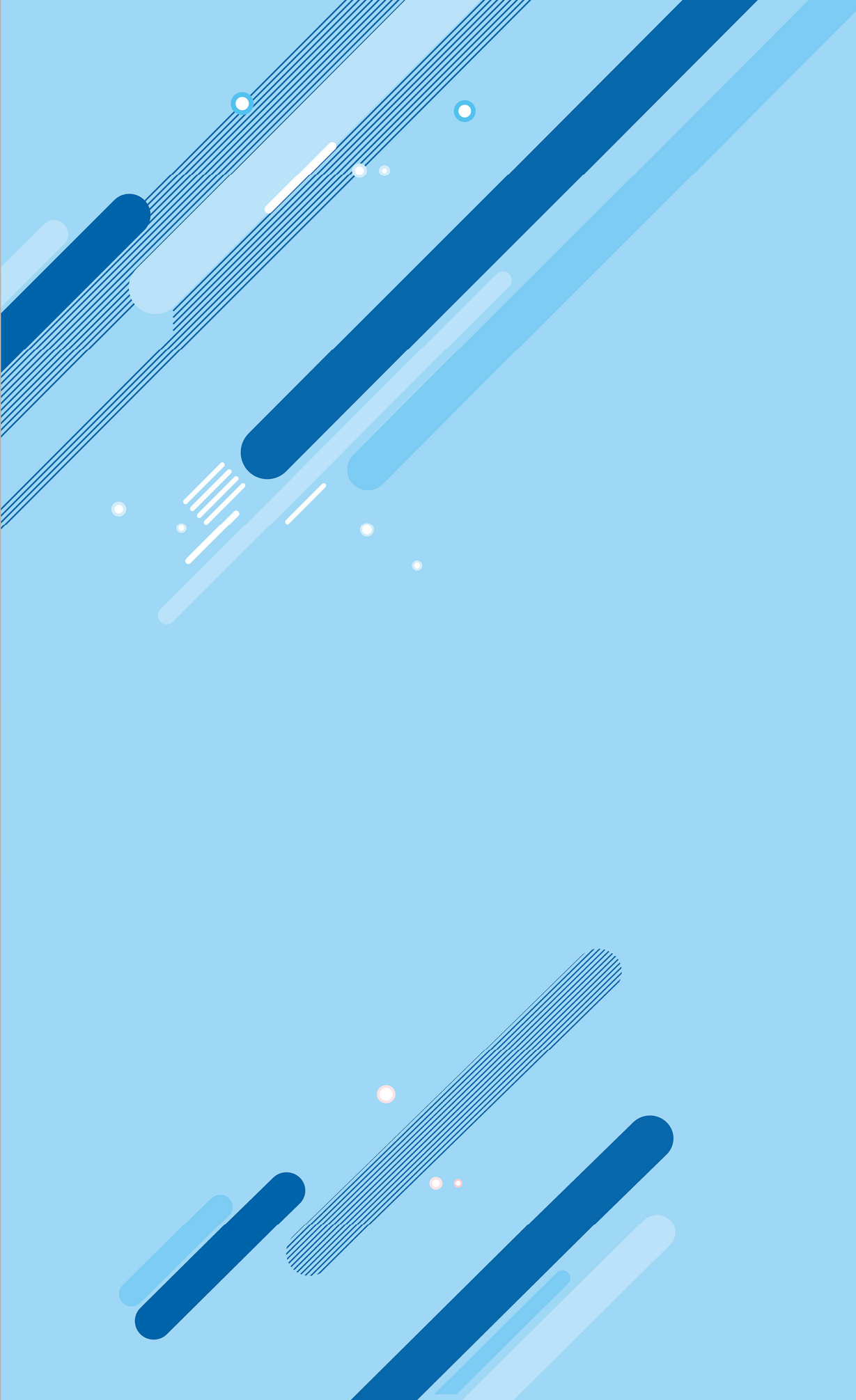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329-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 1 7 1 0 8 호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주요 용어 설명	27
----------------	----

주요현황	35
------------	----

제1장 서론	47
--------------	----

1. 발간목적	47
2. 법적근거	48
3. 자료수집 및 분석	48
4. 주요 분석항목	48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53
-------------------------	----

1. 신고접수	53
가. 전체 신고접수	53
나. 시·군·구별 신고접수	55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3
라. 월별 신고접수	65
2. 신고접수 방법	66
3. 신고접수 경로	66



4. 신고자 유형	67
가. 신고자 유형	67
나. 신고의무자 유형	69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73

제3장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79

1. 학대조사	79
가. 전체 학대조사	79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80
2. 사례판정	81
가. 전체 사례판정	81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82
3. 상담 및 지원	84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84
1) 2024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84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85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당 평균 상담 및 지원	87
4. 사례종결	89

제4장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9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93

가. 피해장애인 93

1) 성별 93

2) 연령 94

3) 장애유형 및 정도 95

4) 거주형태 98

5) 국민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 여부 98

나. 학대행위자 99

1) 성별 99

2) 연령 100

3) 피해장애인과 관계 101

4)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104

2. 장애인학대 양상 105

가. 학대 발생장소 105

나. 학대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107

3. 장애인학대 유형 109

가. 장애인학대 유형 109

1)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09

2)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10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11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11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2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3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4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4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6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8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21
4. 응급조치	122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123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123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124
1) 의료지원	124
2) 심리지원	124
3) 거주지원	125
4) 사법지원	125
5) 복지지원	126
6) 예방교육지원	126
7) 학업지원	126
8) 중재지원	127
9) 진정지원	127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128

6. 사례종결	129
7. 사후모니터링	130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135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35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6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7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8
1) 성별 및 연령	138
2) 거주유형	139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9
4) 재학대 사례	139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40
1) 성별	140
2) 피해 발달장애인과 의 관계	141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43
1) 학대 발생장소	143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45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46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6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7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48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8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8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49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9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151
1) 응급조치	151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152
2. 장애아동 학대사례	153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53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154
1) 성별 및 연령	154
2) 장애유형 및 정도	155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6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157
1) 성별	157
2) 연령	157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8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160
1) 학대 발생장소	160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61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162
1)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62
2) 장애아동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63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64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64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64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65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66
1) 응급조치	166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166
3. 노동력 착취사례	168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69
1) 성별 및 연령	169
2) 장애유형	170
3) 거주유형	171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71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72
1) 성별	172
2) 연령	173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174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75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5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6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76
1) 응급조치	176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177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78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8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178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179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180
1) 성별	180
2) 연령	180
3) 장애유형 및 정도	181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182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82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185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86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86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87
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89
1)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189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190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91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92
1) 응급조치	192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192

5. 재학대 사례	194
가. 재학대 피해장애인	194
1) 성별 및 연령	194
2) 장애유형	195
3) 거주유형	196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96
나. 재학대 행위자	197
1) 성별	197
2) 연령	198
3) 피해장애인과 관계	199
다. 재학대 발생현황	201
1) 재학대 발생장소	201
2) 재학대 지속시간 및 발생빈도	202
라. 재학대 학대유형	202
1)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02
2)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3
마.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	204
1) 응급조치	204
2)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204

제6장 일반사례 현황 209

1. 일반사례 유형	209
------------	-----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210
3. 차별사례 현황	211
가. 차별사례 유형	211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212
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217
1. 연도별 신고접수	217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19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1
4. 연도별 학대행위자	223
5.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225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5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7
6. 연도별 재학대	229
부록	233
1. 특성별 장애인학대 상담 및 지원 부표	233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안내	241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244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48
[표 2-1]	신고접수	54
[표 2-2]	시·군·구별 신고접수	55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3
[표 2-4]	월별 신고접수	65
[표 2-5]	신고접수 방법	66
[표 2-6]	신고접수 경로	66
[표 2-7]	신고자 유형 I	67
[표 2-8]	신고자 유형 II	68
[표 2-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1
[표 2-10]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3
[표 2-11]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74
[표 3-1]	전체 학대조사	79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80
[표 3-3]	전체 사례판정 결과	81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82
[표 3-5]	2024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84
[표 3-6]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85
[표 3-7]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87
[표 3-8]	사례종결	89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93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94
[표 4-3]	장애인 등록 여부	95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96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7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98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8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99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100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2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04
[표 4-1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6
[표 4-13]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7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09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10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11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2
[표 4-18]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3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4
[표 4-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5
[표 4-21]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6
[표 4-22]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8
[표 4-23]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21
[표 4-24]	응급조치	122
[표 4-25]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23
[표 4-26]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124
[표 4-27]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124
[표 4-28]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125
[표 4-29]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25
[표 4-30]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126
[표 4-31]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126
[표 4-32]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127
[표 4-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127

[표 4-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127
[표 4-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28
[표 4-36]	사례종결	129
[표 4-37]	사후모니터링	130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6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7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8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39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9
[표 5-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 사례	139
[표 5-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40
[표 5-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2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44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5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6
[표 5-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7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8
[표 5-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8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49
[표 5-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50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51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52
[표 5-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52
[표 5-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53
[표 5-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54
[표 5-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55
[표 5-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156

[표 5-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6
[표 5-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57
[표 5-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58
[표 5-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9
[표 5-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60
[표 5-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61
[표 5-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2
[표 5-31]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3
[표 5-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64
[표 5-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64
[표 5-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65
[표 5-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166
[표 5-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66
[표 5-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167
[표 5-38]	노동력 착취 발생	168
[표 5-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9
[표 5-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70
[표 5-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71
[표 5-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71
[표 5-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72
[표 5-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73
[표 5-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74
[표 5-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5
[표 5-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6
[표 5-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76
[표 5-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7
[표 5-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77

[표 5-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8
[표 5-5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9
[표 5-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180
[표 5-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180
[표 5-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81
[표 5-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81
[표 5-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183
[표 5-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84
[표 5-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185
[표 5-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86
[표 5-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87
[표 5-6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189
[표 5-6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190
[표 5-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91
[표 5-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92
[표 5-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2
[표 5-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93
[표 5-68]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94
[표 5-69]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95
[표 5-70]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96
[표 5-71]	재학대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96
[표 5-72]	재학대 행위자 성별	197
[표 5-73]	재학대 행위자 연령	198
[표 5-74]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99
[표 5-75]	재학대 발생장소	201
[표 5-76]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202
[표 5-77]	재학대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02



[표 5-78]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3
[표 5-79]	재학대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204
[표 5-8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04
[표 5-81]	재학대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205
[표 6-1]	일반사례 유형	209
[표 6-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210
[표 6-3]	차별사례 유형	211
[표 6-4]	차별사례 지원결과	212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218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20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1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23
[표 7-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5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7
[표 7-7]	연도별 재학대	229
[부표 1-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233
[부표 1-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233
[부표 1-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233
[부표 1-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234
[부표 1-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234
[부표 1-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234
[부표 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234
[부표 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234
[부표 2-1]	피해 장애아동 의료지원 유형	235
[부표 2-2]	피해 장애아동 심리지원 유형	235
[부표 2-3]	피해 장애아동 거주지원 유형	235
[부표 2-4]	피해 장애아동 복지지원 유형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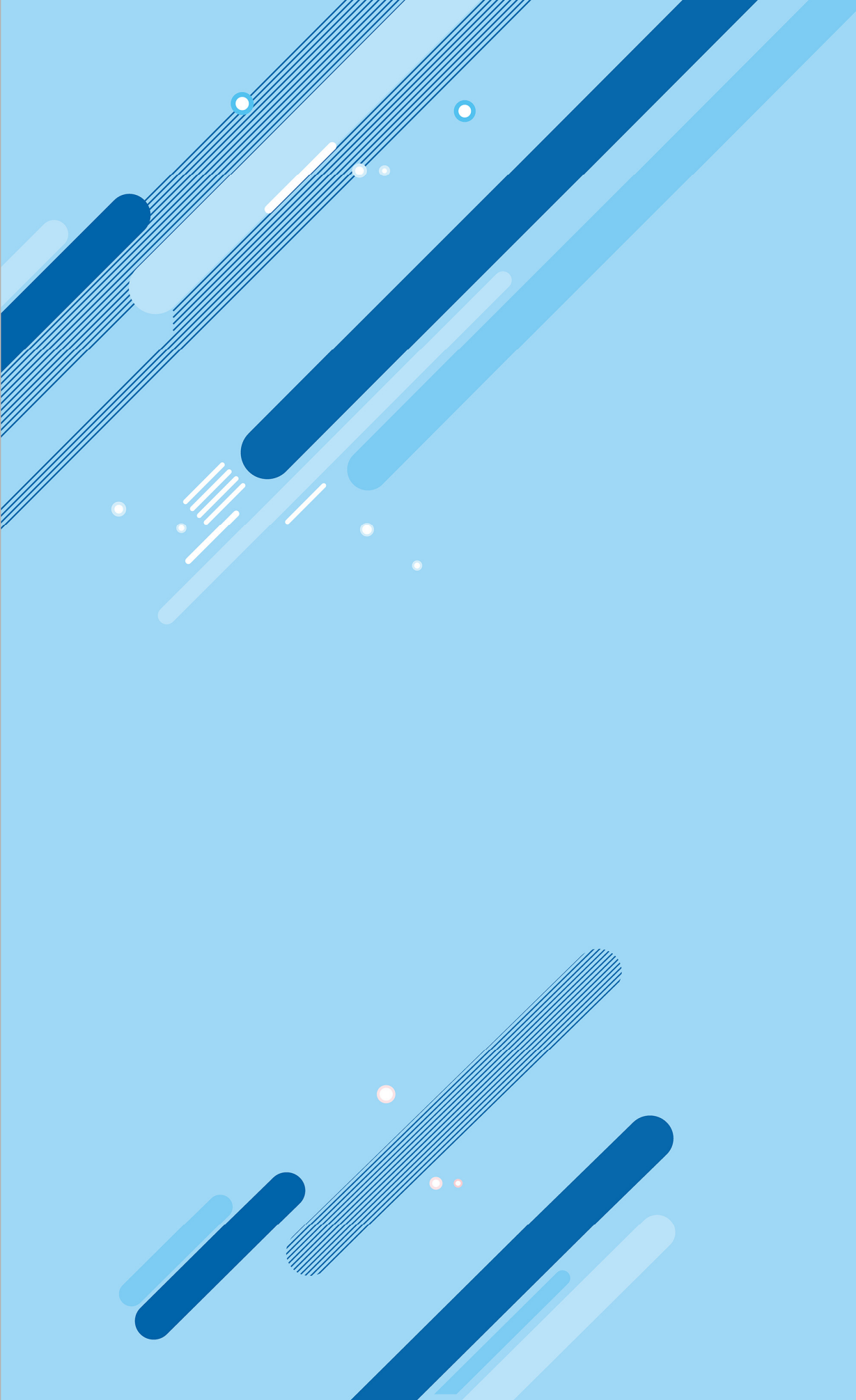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부표 2-5]	피해 장애아동 예방교육지원 유형	235
[부표 2-6]	피해 장애아동 학업지원 유형	236
[부표 2-7]	피해 장애아동 중재지원 유형	236
[부표 2-8]	피해 장애아동 진정지원 유형	236
[부표 3-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236
[부표 3-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236
[부표 3-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237
[부표 3-4]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237
[부표 3-5]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237
[부표 3-6]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237
[부표 3-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237
[부표 3-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237
[부표 4-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238
[부표 4-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238
[부표 4-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238
[부표 4-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238
[부표 4-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238
[부표 4-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239
[부표 4-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239
[부표 4-8]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239
[부표 5-1]	재학대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239
[부표 5-2]	재학대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239
[부표 5-3]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240
[부표 5-4]	재학대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240
[부표 5-5]	재학대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240
[부표 5-6]	재학대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240
[부표 5-7]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240
[부표 5-8]	재학대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240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54
[그림 2-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4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65
[그림 2-4]	신고자 유형	67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2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2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결과	81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83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86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88
[그림 3-5]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88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93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94
[그림 4-3]	장애인 등록 여부	95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96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7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8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99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1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대분류)	101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중분류)	103
[그림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5
[그림 4-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8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10
[그림 4-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10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11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2
[그림 4-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7
[그림 4-18]	응급조치	122
[그림 4-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23
[그림 4-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29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8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40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1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143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5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6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7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51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52
[그림 5-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54
[그림 5-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56
[그림 5-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57
[그림 5-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58
[그림 5-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9
[그림 5-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61
[그림 5-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2
[그림 5-17]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3
[그림 5-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67
[그림 5-19]	노동력 착취 발생	168
[그림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9
[그림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70
[그림 5-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72

[그림 5-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73
[그림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74
[그림 5-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5
[그림 5-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6
[그림 5-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7
[그림 5-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88
[그림 5-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8
[그림 5-30]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190
[그림 5-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3
[그림 5-32]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94
[그림 5-33]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95
[그림 5-34]	재학대 행위자 성별	197
[그림 5-35]	재학대 행위자 연령	198
[그림 5-36]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00
[그림 5-37]	재학대 발생장소	200
[그림 5-38]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03
[그림 5-39]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3
[그림 5-4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04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218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2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6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8
[그림 7-5]	연도별 재학대	229



주요 용어 설명

—

주요 용어 설명

기본개념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1개소)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9개소)¹⁾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1)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각각 2개소가 운영 중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3년에 개소함.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
-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으로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미신고시설 포함)
-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
-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치는 단계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
-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신고접수

-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 **학대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 **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의 사유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에 부여
-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 의무자라고 하며,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부(父), 모(母),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인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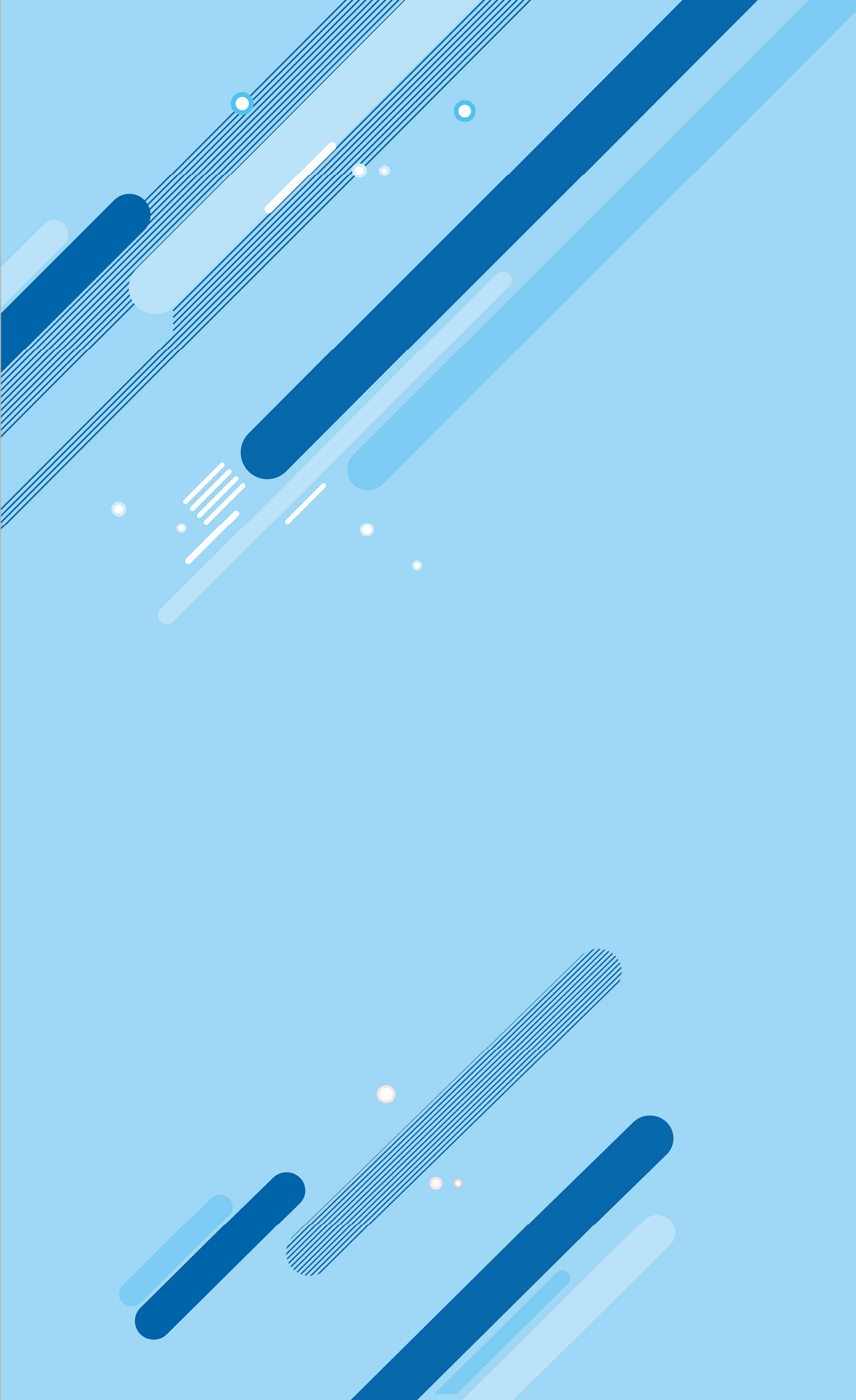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 또는 비학대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해당 위원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 판단이 유보된 사례 등에 대해, 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 ◆ **재학대 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피해자 등 지원

-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 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지원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도록 지원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연계·제공하는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 형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 등으로 분류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
 - **복지지원:** 장애인 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
 - **예방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학업지원:**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 (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방법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과정을 의미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예방교육·학업·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지원
 - **기타지원:** 각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주요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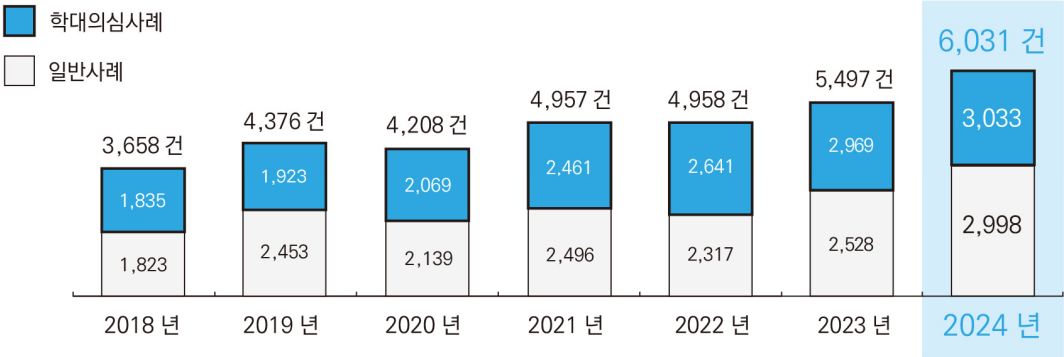
주요 현황

- ◆ 본 보고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6,03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 본 보고서는 신고접수 현황,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현황,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학대 양상 및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재학대 사례, 일반사례 현황,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함
- ◆ 일부 항목은 유형별 현황의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체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함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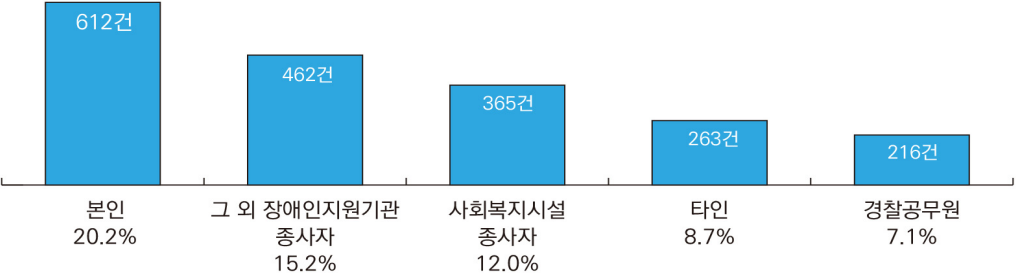
신고접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2024년 6,031건으로,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50.3%), 일반 사례는 2,998건(49.7%)임. 전체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5,497건보다 9.7% 증가함. 학대의심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전년도 2,969건 대비 2.2% 증가하였고, 일반사례 역시 전년도 2,528건 대비 18.6% 증가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 1,317건(21.8%), 서울특별시 827건(13.7%), 충청북도 541건(9.0%) 순으로 신고가 많았음.



신고자

-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236건(73.7%)임.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8년 1,033건에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도 2,167건 대비 3.2% 증가함. 현재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자는 본인이 612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62건(1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5건(12.0%), 타인 263건(8.7%), 경찰공무원 216건(7.1%) 순으로 나타남. ※ [표 2-8] 신고자 유형Ⅱ 참고(68쪽)
 - 특히,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2018년 194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전년도 530건 대비 15.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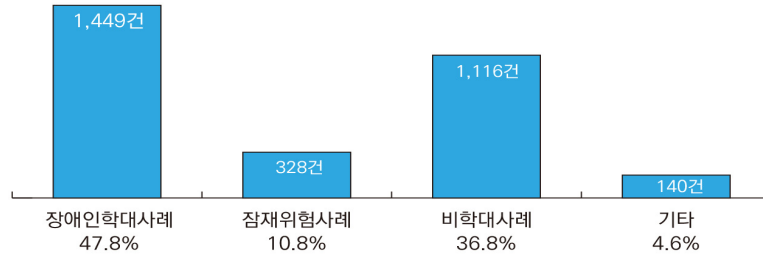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현황

학대조사

-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2,984건(98.4%)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조사 횟수는 6,855회로 사례당 평균 2.3회 조사를 실시함. 학대조사실시율은 전년도 97.3% 대비 1.1%p 상승했으며, 조사 횟수도 전년도 6,277회 대비 9.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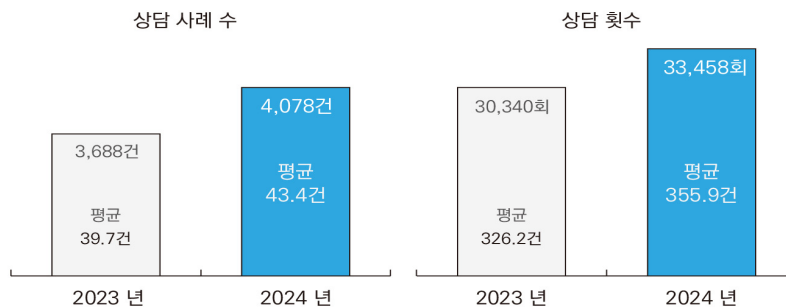
사례판정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8년 889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4년도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1,449건이 장애인학대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1,418건 대비 2.2% 증가한 수치임.
 - 장애인학대사례 1,449건(47.8%), 잠재위험사례 328건(10.8%), 비학대사례 1,116건(36.8%), 기타 140건(4.6%)



상담 및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4,078건의 학대의심사례(2024년 이전 접수 사례 1,045건, 2024년 접수 사례 3,033건)에 대해 총 33,458회(2024년 이전 접수 사례 10,411회, 2024년 접수 사례 23,047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사례당 평균 8.2회 상담 및 지원이 이뤄졌으며, 전년도 30,340회 대비 10.3% 증가한 수치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총 94명) 1인당 연평균 담당 사례는 43.4건, 1인당 연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355.9회임. 전년도(상담원 1인당 평균 39.7건, 326.2회)와 비교하면, 상담원 1인당 사례 건수 평균 3.7건, 상담 및 지원 횟수 평균 29.7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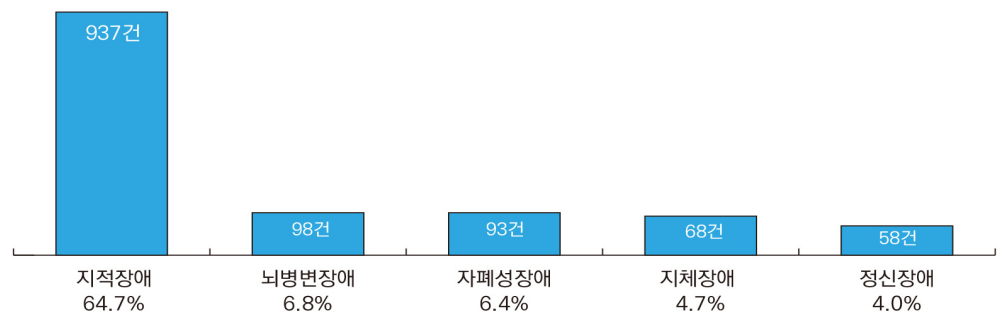
사례종결

- 2024년도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종결된 사례는 1,692건('24.12.31.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례 종결율은 55.8%임.

학대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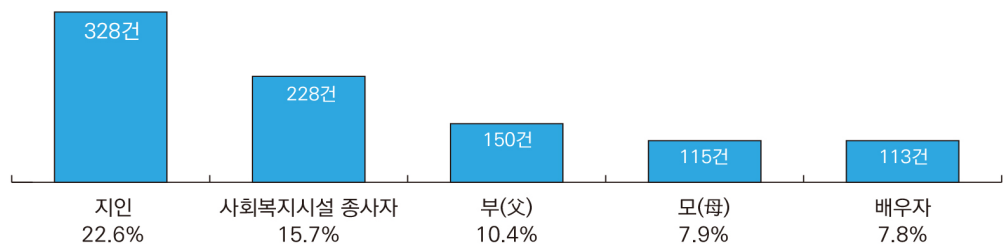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 학대판정사례 1,449건의 피해장애인 성별은 여성 783건(54.0%), 남성 666건(46.0%)임. 여성 피해 장애인 학대사례는 전년도 770건 대비 1.7%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사례가 330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이었음. 10대 이하 사례는 전년도 314건 대비 5.1% 증가함.
 - 주장장애유형은 지적장애 937건(64.7%), 뇌병변장애 98건(6.8%), 자폐성장애 93건(6.4%), 지체장애 68건(4.7%), 정신장애 58건(4.0%) 순으로 나타났고, 미등록장애는 87건(6.0%)으로 확인됨.
 -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2018년 65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4년에는 1,088건으로 전년도(1,111건) 대비 소폭 감소함. 다만,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1,088건(75.1%)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274건(18.9%)보다 약 4.0배 많음.
- ※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참고(96쪽)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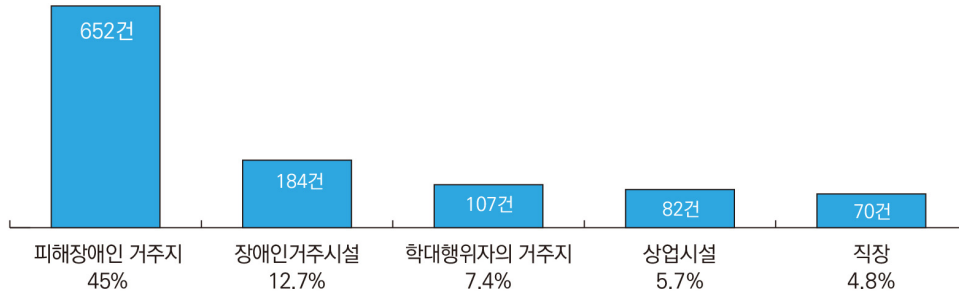
- 학대사례의 행위자 성별은 남성 969건(66.9%), 여성 479건(33.1%), 파악 안 됨 1건(0.1%)임.
 -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551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542건(37.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98건(20.6%),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40건(2.8%) 순으로 나타남.
 - 세부유형별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부(父) 150건(10.4%), 모(母) 115건(7.9%), 배우자 113건(7.8%) 순임.
- ※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참고(102쪽)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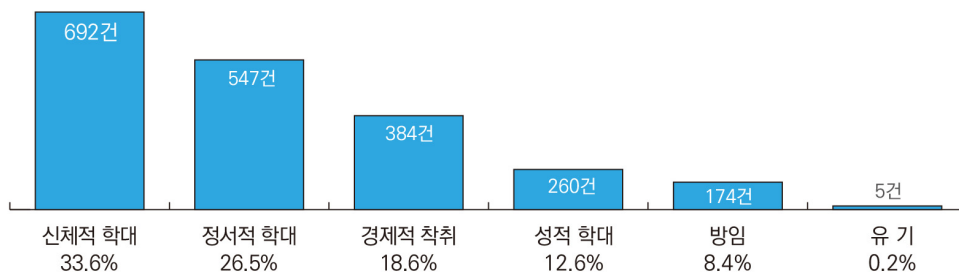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652건(45.0%), 장애인거주시설 184건(12.7%),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107건(7.4%), 상업시설 82건(5.7%), 직장 70건(4.8%) 순으로 나타남.

※ [표 4-1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참고(1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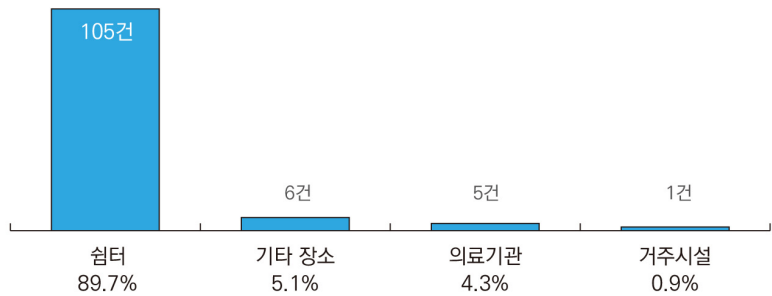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유형

- 중복 학대를 별도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1,449건 중 중복 학대 460건 (31.7%), 신체적 학대 336건(23.2%), 경제적 착취 253건(17.5%), 성적 학대 188건(13.0%), 정서적 학대 146건(10.1%), 방임 64건(4.4%), 유기 2건(0.1%) 순으로 나타남.
- 중복 학대를 미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유형 총 2,062건 중 신체적 학대 692건 (33.6%), 정서적 학대 547건(26.5%), 경제적 착취 384건(18.6%), 성적 학대 260건(12.6%), 방임 174건(8.4%), 유기 5건(0.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사례 1,44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2,062건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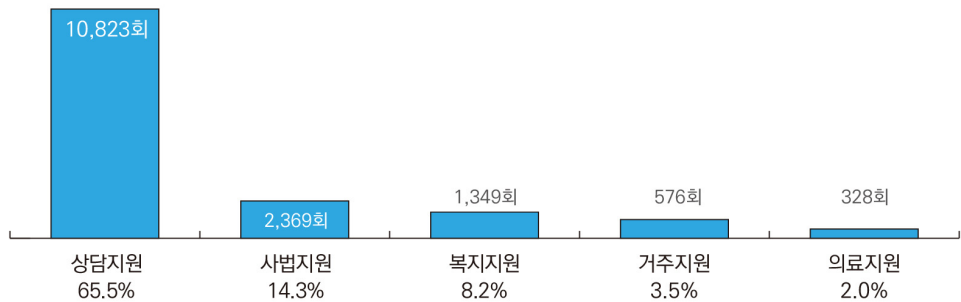
응급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117건(전체 학대사례의 8.1%) 실시하였고, 이 중 쉼터 이용은 105건(89.7%)임.
 - 기타 장소 동행 6건(5.1%), 의료기관 연계 5건(4.3%), 거주시설 입소 1건(0.9%)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2024년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한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은 총 16,514회 실시됨.
 - 상담지원 10,823회(65.5%), 사법지원 2,369회(14.3%), 복지지원 1,349회(8.2%), 거주지원 576회(3.5%), 의료지원 328회(2.0%) 순으로 나타남.
- ※ [표 4-25]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참고(123쪽)



- 2024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학대사례(2024년 접수 학대사례 및 2024년 이전 접수 학대사례) 총 2,285건에 대한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26,142회임.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피해자의 주·부장애유형 모두 발달장애인인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72.9%(1,056건)임.
 -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554건(52.5%), 남성 502건(47.5%)임.
 - 재학대 사례 189건 중 160건(84.7%)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사례임.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의 행위자 성별은 남성 716건(67.8%), 여성 339건(32.1%), 파악 안 됨 1건(0.1%)임.
 - 학대행위자 유형은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57건(2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9건(17.0%), 부(父) 108건(10.2%), 모(母) 91건(8.6%), 모르는 사람 66건(6.3%)의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의 학대유형별 현황은 신체적 학대 508건(33.7%), 정서적 학대 378건(25.1%), 경제적 착취 282건(18.7%), 성적 학대 205건(13.6%), 방임 129건(8.6%), 유기 5건(0.3%) 순임.

장애아동 학대사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임.
 -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피해자 성별은 남아 149건(55.2%), 여아 121건(44.8%)임.
 -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44건(53.3%), 자폐성장애 59건(21.9%), 미등록장애 37건(13.7%), 뇌병변장애 17건(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행위자 성별은 남성 155건(57.4%), 여성 114건(42.2%), 파악 안 됨 1건(0.4%)임.
 - 학대행위자 유형은 부(父)·모(母) 107건(39.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9건(1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건(13.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학대유형별 현황은 신체적 학대 153건(39.4%), 정서적 학대 111건(28.6%), 방임 63건(16.2%), 성적 학대 59건(15.2%), 경제적 착취 2건(0.5%) 순임.

노동력 착취사례

- 경제적 착취사례 384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는 7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5.1%임.
 - 노동력 착취사례의 학대피해자 성별은 남성 45건(60.8%), 여성 29건(39.2%)임.
 - 노동력 착취사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타인 42건(56.8%), 신고의무자인 유관기관 종사자 20건(27.0%), 가족 및 친인척 8건(10.8%) 순으로 나타남.
 -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는 직장(일하는 곳) 29건(39.2%), 피해장애인 거주지 18건(24.3%), 학대행위자 거주지 9건(12.2%) 순으로 나타남.
 - 노동력 착취 지속 기간이 1~3년 미만인 사례가 21건(28.4%), 3~6개월 미만인 사례 13건(17.6%), 10년 이상인 사례 12건(16.2%) 등의 순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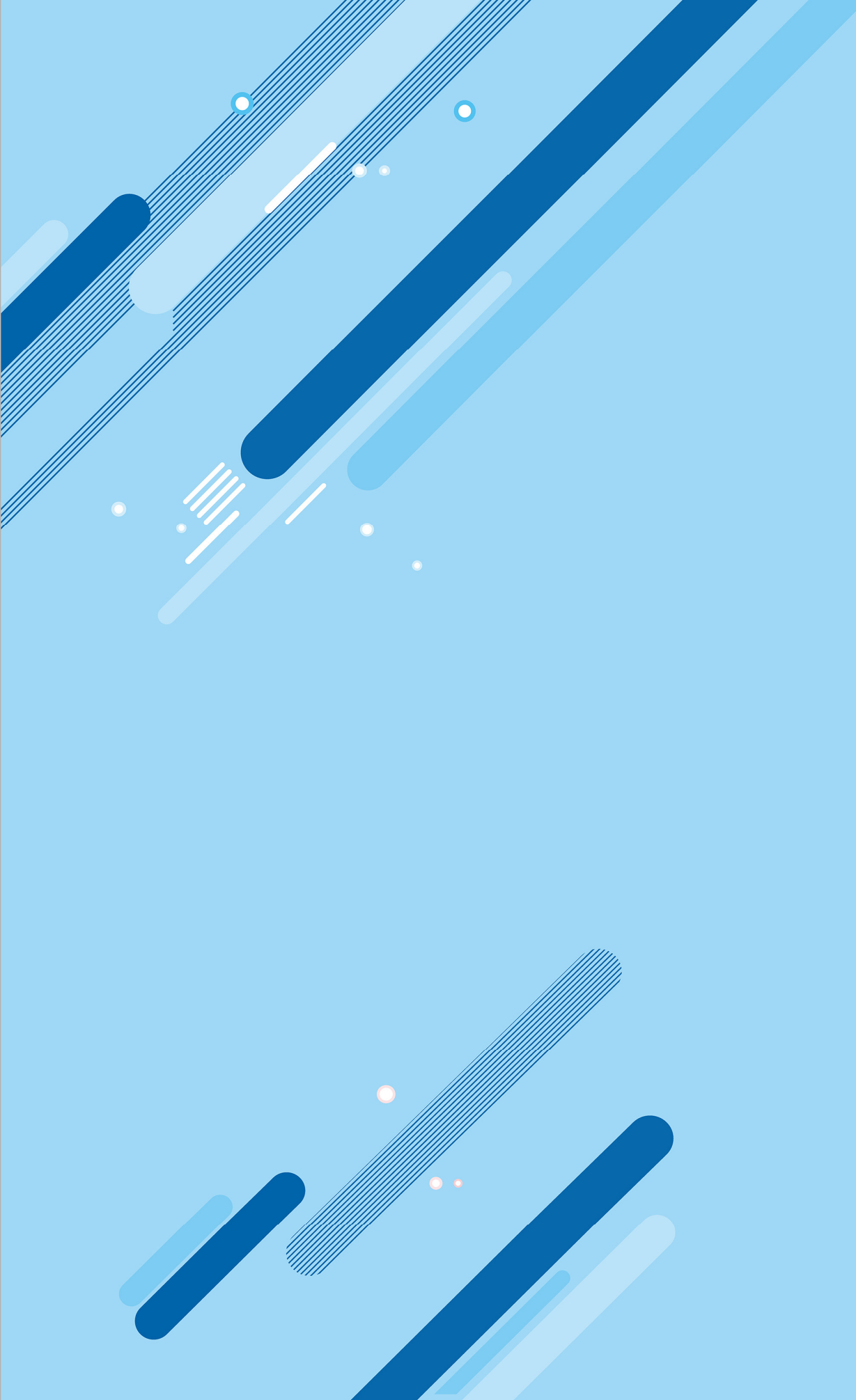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23.8%(345건)임. 전년도(385건) 대비 10.4% 감소함.
 - 학대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 184건(53.3%), 교육기관 48건(13.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6건(13.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4건(7.0%)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213건(61.7%), 자폐성장애 52건(15.1%), 뇌병변장애 34건(9.9%), 시각장애 20건(5.8%)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7건(60.0%),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4건(12.8%), 초·중등 학교 종사자 23건(6.7%),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5건(4.3%) 순임.
-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의 학대유형별 현황은 신체적 학대 198건(33.0%), 정서적 학대 176건(29.3%), 방임 91건(15.2%), 성적 학대 82건(13.7%), 경제적 착취 52건(8.7%), 유기 1건(0.2%) 순임.

재학대 사례

- 재학대로 인한 학대피해 장애인은 전체 학대사례의 13.0%(189건)임.
 - 재학대 사례의 피해장애인 성별은 여성 124건(65.6%), 남성 65건(34.4%)임.
 -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50건(79.4%), 자폐성장애 9건(4.8%), 지체장애 8건(4.2%) 순임.
 - 재학대 사례의 행위자 성별은 남성 137건(72.5%), 여성 52건(27.5%)임.
 - 재학대 사례의 행위자 연령은 30대 38건(20.1%), 50대 36건(19.0%), 40대 32건(16.9%) 순임.
 - 재학대 사례의 행위자 유형은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4건(28.6%), 부(父)·모(母) 39건(20.6%), 모르는 사람 19건(10.1%)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93건(49.2%), 기타 16건(8.5%), 온라인 15건(7.9%), 학대 행위자 거주지 14건(7.4%)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별 현황은 신체적 학대 84건(36.2%), 경제적 착취 51건(22.0%), 정서적 학대 47건(20.3%), 성적 학대 36건(15.5%), 방임 14건(6.0%) 순임.

일반사례 현황

- 일반사례 2,998건의 유형별 현황은 정보문의 1,708건(57.0%), 기타 사례 733건(24.4%), 불만·민원 제기 사례 312건(10.4%), 장애인차별 사례 245건(8.2%) 순임.
 - 차별사례 유형은 시설물 접근 관련 사례 65건(26.5%), 기타 사례 41건(16.7%), 고용 관련 사례 35건(14.3%), 재화·용역 일반 사례 23건(9.4%) 순으로 나타남.



1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다.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북, 충북북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 12월 설치되어 2023년 3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직접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원하고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는 국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개정 추진과 정부의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장애인학대 발생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제2호,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호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모든 지원과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 분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정보를 취합하였다.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비율의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다.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 오차 크기보다 작으므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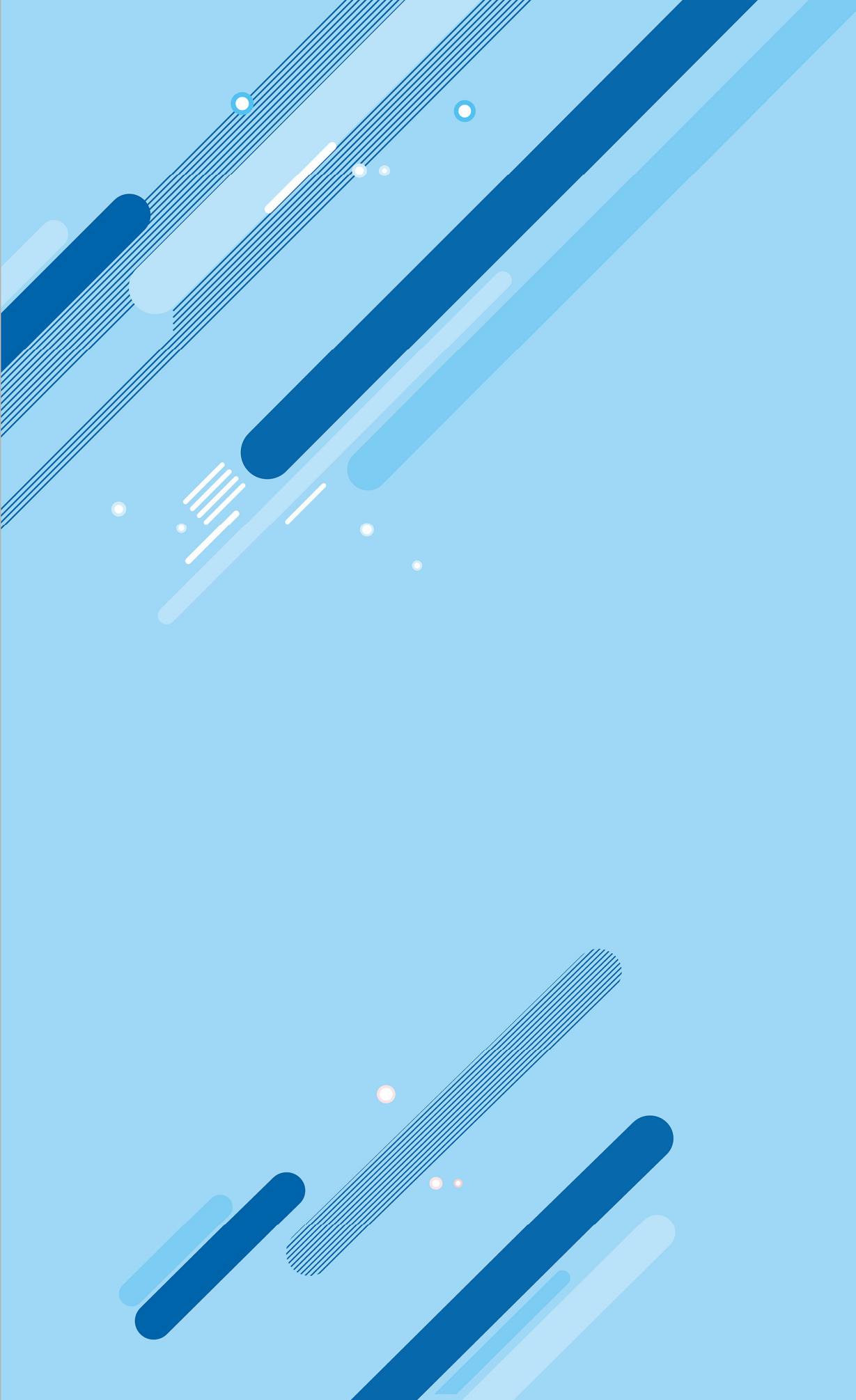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분류	분석항목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 전체, 시·군·구별, 지역·기관별, 월별 신고접수 • 신고접수 방법 • 신고접수 경로 • 신고자 -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유형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현황	• 학대조사 - 전체, 지역·기관별 학대조사 • 사례판정 - 전체, 지역·기관별 사례판정 • 상담 및 지원 - 전체,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분류	분석항목
학대사례 분석	- 인구사회학적 요인 - 피해장애인(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학대행위자(성별, 연령, 피해장애인과 관계, 동거여부) - 장애인학대 양상 - 학대 발생장소,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장애인학대 유형 -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응급조치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지원 현황,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장애아동 학대사례 -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장애아동 학대유형,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 노동력 착취사례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 재학대 사례 - 재학대 피해장애인, 재학대 행위자, 재학대 발생현황, 재학대 학대유형, 재학대에 대한 조치
일반사례 현황	- 일반사례 유형 - 지역·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 차별사례 현황 - 유형, 지원결과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 연도별 신고접수 -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 연도별 학대행위자 - 연도별 재학대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4. 신고자 유형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여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사례, 복지상담이나 정보문의, 일반 법률상담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사회나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장애인 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 등의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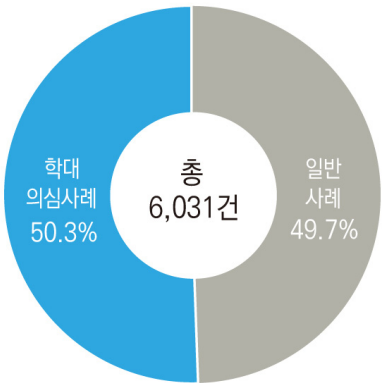
2024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도 5,497건보다 9.7% 증가하였다. 학대의심 사례는 3,033건(50.3%)으로 전년도 2,969건보다 2.2% 증가하였다. 일반사례는 2,998건(49.7%)으로 전년도 2,528건보다 18.6% 증가하였다.

[표 2-1]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3,033	50.3	2,998	49.7	6,031	100.0

[그림 2-1] 신고접수



나. 시·군·구별 신고접수

피해장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643건(21.2%)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319건(10.5%), 경상남도 260건(8.6%), 전라남도 195건(6.4%)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단일 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1건(3.0%), 대전광역시 동구 65건(2.1%), 울산광역시 북구 62건(2.0%), 충청북도 충주시 61건(2.0%), 경기도 파주시 51건(1.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각각 50건(1.6%) 등의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표 2-2] 시·군·구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서울	종로구	4	3.2	0.1
	중구	4	3.2	0.1
	용산구	4	3.2	0.1
	성동구	1	0.8	0.0
	광진구	-	-	-
	동대문구	1	0.8	0.0
	중랑구	6	4.8	0.2
	성북구	6	4.8	0.2
	강북구	6	4.8	0.2
	도봉구	4	3.2	0.1
	노원구	9	7.2	0.3
	은평구	10	8.0	0.3
	서대문구	4	3.2	0.1
	마포구	5	4.0	0.2
	양천구	7	5.6	0.2
	강서구	8	6.4	0.3
	구로구	5	4.0	0.2
	금천구	5	4.0	0.2
	영등포구	3	2.4	0.1
	동작구	3	2.4	0.1
	관악구	8	6.4	0.3
	서초구	1	0.8	0.0
	강남구	6	4.8	0.2
	송파구	6	4.8	0.2
	강동구	9	7.2	0.3
	소계	125	100.0	4.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부산	중구	3	1.9	0.1
	서구	7	4.3	0.2
	동구	2	1.2	0.1
	영도구	6	3.7	0.2
	부산진구	12	7.5	0.4
	동래구	8	5.0	0.3
	남구	6	3.7	0.2
	북구	14	8.7	0.5
	해운대구	24	14.9	0.8
	사하구	17	10.6	0.6
	금정구	9	5.6	0.3
	강서구	3	1.9	0.1
	연제구	17	10.6	0.6
	수영구	9	5.6	0.3
	사상구	20	12.4	0.7
	기장군	4	2.5	0.1
	소계	161	100.0	5.3
대구	중구	-	-	-
	동구	22	23.2	0.7
	서구	9	9.5	0.3
	남구	9	9.5	0.3
	북구	18	18.9	0.6
	수성구	8	8.4	0.3
	달서구	15	15.8	0.5
	달성군	13	13.7	0.4
	군위군 ²⁾	1	1.1	0.0
	소계	95	100.0	3.1
인천	중구	8	8.6	0.3
	동구	4	4.3	0.1
	미추홀구	19	20.4	0.6
	연수구	4	4.3	0.1
	남동구	6	6.5	0.2
	부평구	19	20.4	0.6
	계양구	12	12.9	0.4
	서구	20	21.5	0.7
	강화군	1	1.1	0.0
	옹진군	-	-	-
	소계	93	100.0	3.1

2)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법률 개정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광주	동구	9	11.4	0.3
	서구	24	30.4	0.8
	남구	5	6.3	0.2
	북구	17	21.5	0.6
	광산구	24	30.4	0.8
	소계	79	100.0	2.6
대전	동구	65	45.8	2.1
	중구	18	12.7	0.6
	서구	28	19.7	0.9
	유성구	15	10.6	0.5
	대덕구	16	11.3	0.5
	소계	142	100.0	4.7
울산	중구	29	16.7	1.0
	남구	34	19.5	1.1
	동구	20	11.5	0.7
	북구	62	35.6	2.0
	울주군	29	16.7	1.0
	소계	174	100.0	5.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63	100.0	2.1
	소계	63	100.0	2.1
경기 ³⁾	수원시 장안구	16	2.5	0.5
	수원시 권선구	22	3.4	0.7
	수원시 팔달구	17	2.6	0.6
	수원시 영통구	8	1.2	0.3
	용인시 처인구	11	1.7	0.4
	용인시 기흥구	10	1.6	0.3
	용인시 수지구	3	0.5	0.1
	고양시 덕양구	17	2.6	0.6
	고양시 일산동구	11	1.7	0.4
	고양시 일산서구	9	1.4	0.3
	화성시	28	4.4	0.9
	성남시 수정구	9	1.4	0.3
	성남시 중원구	11	1.7	0.4
	성남시 분당구	8	1.2	0.3
	부천시	22	3.4	0.7
	남양주시	40	6.2	1.3

3) 경기남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21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10곳):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기	안산시 상록구	25	3.9	0.8
	안산시 단원구	20	3.1	0.7
	평택시	20	3.1	0.7
	안양시 만안구	10	1.6	0.3
	안양시 동안구	6	0.9	0.2
	시흥시	34	5.3	1.1
	파주시	51	7.9	1.7
	김포시	15	2.3	0.5
	의정부시	28	4.4	0.9
	광주시	18	2.8	0.6
	하남시	5	0.8	0.2
	광명시	8	1.2	0.3
	군포시	5	0.8	0.2
	양주시	27	4.2	0.9
	오산시	9	1.4	0.3
	이천시	4	0.6	0.1
	안성시	10	1.6	0.3
	구리시	14	2.2	0.5
	의왕시	1	0.2	0.0
	포천시	41	6.4	1.4
	양평군	13	2.0	0.4
	여주시	11	1.7	0.4
	동두천시	18	2.8	0.6
	과천시	-	-	-
	가평군	3	0.5	0.1
	연천군	5	0.8	0.2
	소계	643	100.0	21.2
강원	춘천시	40	25.3	1.3
	원주시	46	29.1	1.5
	강릉시	8	5.1	0.3
	동해시	2	1.3	0.1
	태백시	1	0.6	0.0
	속초시	5	3.2	0.2
	삼척시	9	5.7	0.3
	홍천군	4	2.5	0.1
	횡성군	4	2.5	0.1
	영월군	1	0.6	0.0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강원	영월군	1	0.6	0.0
	평창군	5	3.2	0.2
	정선군	6	3.8	0.2
	철원군	-	-	-
	화천군	7	4.4	0.2
	양구군	15	9.5	0.5
	인제군	2	1.3	0.1
	고성군	2	1.3	0.1
	양양군	1	0.6	0.0
	소계	158	100.0	5.2
충북 ⁴⁾	청주시 상당구	41	12.9	1.4
	청주시 서원구	50	15.7	1.6
	청주시 흥덕구	46	14.4	1.5
	청주시 청원구	31	9.7	1.0
	충주시	61	19.1	2.0
	제천시	17	5.3	0.6
	보은군	9	2.8	0.3
	옥천군	6	1.9	0.2
	영동군	21	6.6	0.7
	증평군	3	0.9	0.1
	진천군	6	1.9	0.2
	괴산군	1	0.3	0.0
	음성군	15	4.7	0.5
	단양군	12	3.8	0.4
	소계	319	100.0	1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18	11.8	0.6
	천안시 서북구	25	16.3	0.8
	공주시	11	7.2	0.4
	보령시	12	7.8	0.4
	아산시	10	6.5	0.3
	서산시	16	10.5	0.5
	논산시	14	9.2	0.5
	계룡시	1	0.7	0.0
	당진시	14	9.2	0.5
	금산군	3	2.0	0.1
	부여군	-	-	-
	서천군	1	0.7	0.0
	청양군	3	2.0	0.1

4)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8곳):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지역(3곳):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충남	홍성군	11	7.2	0.4
	예산군	6	3.9	0.2
	태안군	8	5.2	0.3
	소계	153	100.0	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12	14.6	0.4
	전주시 덕진구	13	15.9	0.4
	군산시	12	14.6	0.4
	익산시	6	7.3	0.2
	정읍시	6	7.3	0.2
	남원시	4	4.9	0.1
	김제시	3	3.7	0.1
	완주군	11	13.4	0.4
	진안군	-	-	-
	무주군	6	7.3	0.2
	장수군	2	2.4	0.1
	임실군	-	-	-
	순창군	1	1.2	0.0
	고창군	2	2.4	0.1
	부안군	4	4.9	0.1
	소계	82	100.0	2.7
전남	목포시	39	20.0	1.3
	여수시	17	8.7	0.6
	순천시	13	6.7	0.4
	나주시	6	3.1	0.2
	광양시	13	6.7	0.4
	담양군	-	-	-
	곡성군	3	1.5	0.1
	구례군	1	0.5	0.0
	고흥군	6	3.1	0.2
	보성군	6	3.1	0.2
	화순군	21	10.8	0.7
	장흥군	3	1.5	0.1
	강진군	4	2.1	0.1
	해남군	5	2.6	0.2
	영암군	6	3.1	0.2
	무안군	3	1.5	0.1
	함평군	1	0.5	0.0
	영광군	9	4.6	0.3
	장성군	2	1.0	0.1
	완도군	3	1.5	0.1
	진도군	5	2.6	0.2
	신안군	29	14.9	1.0
	소계	195	100.0	6.4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북	포항시 남구	18	10.2	0.6
	포항시 북구	17	9.6	0.6
	경주시	38	21.5	1.3
	김천시	6	3.4	0.2
	안동시	19	10.7	0.6
	구미시	10	5.6	0.3
	영주시	-	-	-
	영천시	11	6.2	0.4
	상주시	4	2.3	0.1
	문경시	2	1.1	0.1
	경산시	22	12.4	0.7
	의성군	-	-	-
	청송군	2	1.1	0.1
	영양군	1	0.6	0.0
	영덕군	-	-	-
	청도군	16	9.0	0.5
	고령군	-	-	-
	성주군	-	-	-
	칠곡군	5	2.8	0.2
	예천군	-	-	-
	봉화군	1	0.6	0.0
	울진군	5	2.8	0.2
	울릉군	-	-	-
	소계	177	100.0	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50	19.2	1.6
	창원시 성산구	13	5.0	0.4
	창원시 마산합포구	10	3.8	0.3
	창원시 마산회원구	4	1.5	0.1
	창원시 진해구	11	4.2	0.4
	진주시	30	11.5	1.0
	통영시	11	4.2	0.4
	사천시	13	5.0	0.4
	김해시	27	10.4	0.9
	밀양시	5	1.9	0.2
	거제시	16	6.2	0.5
	양산시	32	12.3	1.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남	의령군	2	0.8	0.1
	함안군	5	1.9	0.2
	창녕군	4	1.5	0.1
	고성군	-	-	-
	남해군	3	1.2	0.1
	하동군	10	3.8	0.3
	산청군	1	0.4	0.0
	함양군	3	1.2	0.1
	거창군	8	3.1	0.3
	합천군	2	0.8	0.1
	소계	260	100.0	8.6
제주	제주시	91	79.8	3.0
	서귀포시	23	20.2	0.8
	소계	114	100.0	3.8
계		3,033	100.0	100.0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317.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평균 289.3건보다 9.7%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7건(21.8%)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 827건(13.7%), 충청북도 541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는 기관당 평균 159.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전년도(평균 156.3건)와 비교했을 때 평균 3건의 신고가 더 접수되었다. 지역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626건(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북도 321건(10.6%), 경상남도 259건(8.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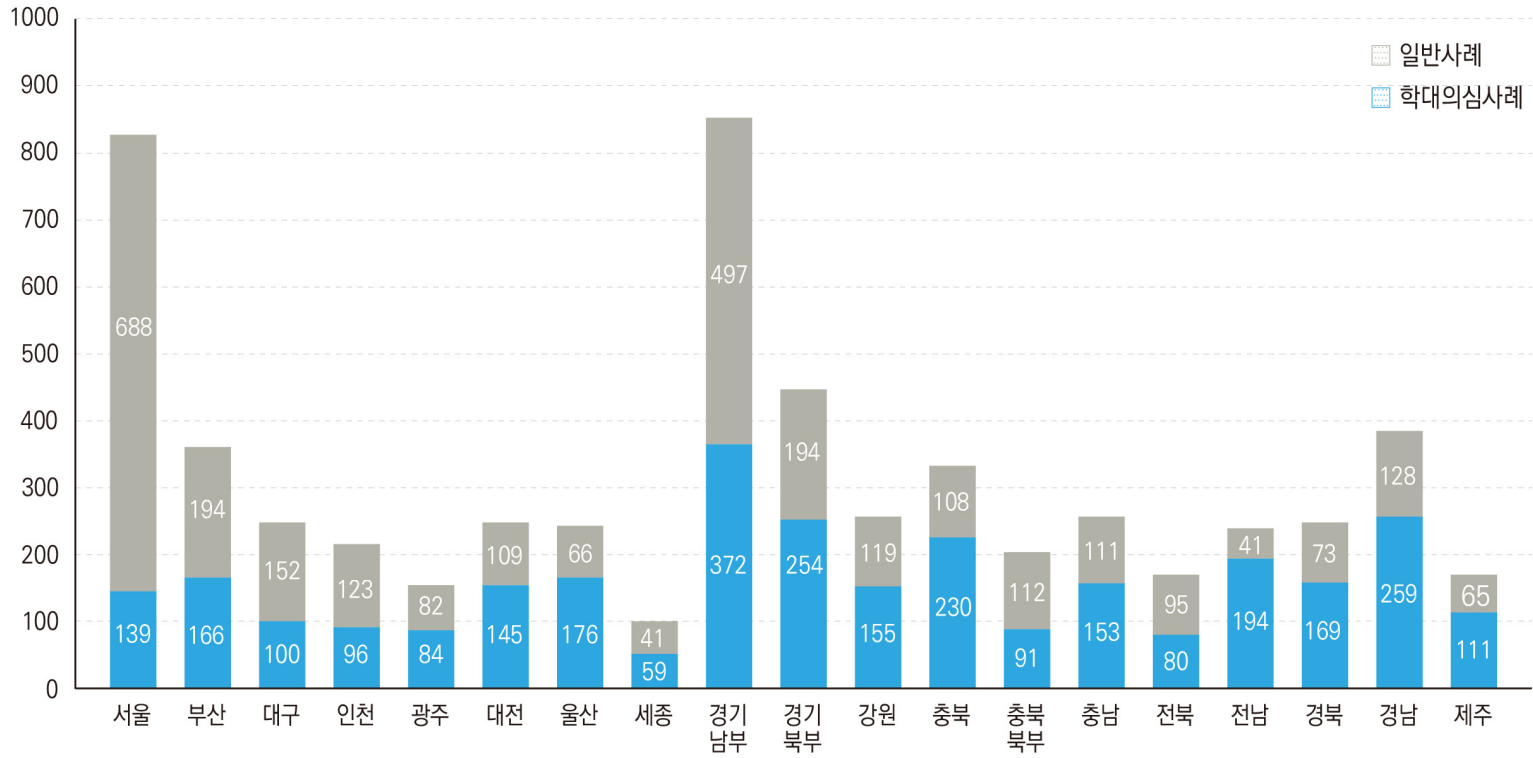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39	4.6	688	22.9	827	13.7
부산		166	5.5	194	6.5	360	6.0
대구		100	3.3	152	5.1	252	4.2
인천		96	3.2	123	4.1	219	3.6
광주		84	2.8	82	2.7	166	2.8
대전		145	4.8	109	3.6	254	4.2
울산		176	5.8	66	2.2	242	4.0
세종		59	1.9	41	1.4	100	1.7
경기	경기남부	372	12.3	497	16.6	869	14.4
	경기북부	254	8.4	194	6.5	448	7.4
	소계	626	20.6	691	23.0	1,317	21.8
강원		155	5.1	119	4.0	274	4.5
충북	충북	230	7.6	108	3.6	338	5.6
	충북북부	91	3.0	112	3.7	203	3.4
	소계	321	10.6	220	7.3	541	9.0
충남		153	5.0	111	3.7	264	4.4
전북		80	2.6	95	3.2	175	2.9
전남		194	6.4	41	1.4	235	3.9
경북		169	5.6	73	2.4	242	4.0
경남		259	8.5	128	4.3	387	6.4
제주		111	3.7	65	2.2	176	2.9
계		3,033	100.0	2,998	100.0	6,031	100.0

[그림 2-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라. 월별 신고접수

2024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월평균 502.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252.8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249.8건 접수되었다.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7월에 583건(9.7%)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다음으로 5월 545건(9.0%), 6월 541건(9.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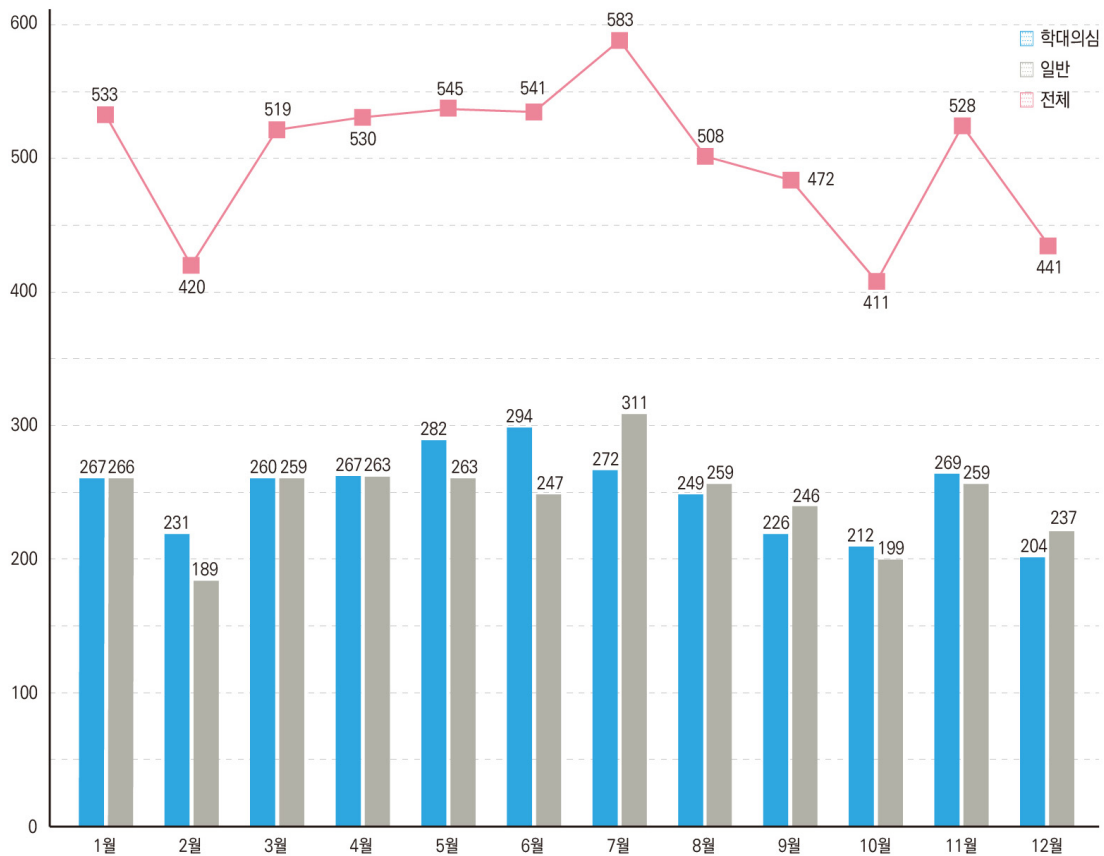
[표 2-4]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의심	267	231	260	267	282	294	272	249	226	212	269	204	3,033
일반	266	189	259	263	263	247	311	259	246	199	259	237	2,998
계	533	420	519	530	545	541	583	508	472	411	528	441	6,031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 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 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그 외 문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자(SMS),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4년 신고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의 68.2%에 해당하는 4,112건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 1,077건(17.9%), 인지 신고 333건(5.5%), 내방 신고 251건(4.2%), 팩스 신고 147건(2.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팩스에 의한 신고는 경찰의 장애인학대 통보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5]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4,112	1,077	62	147	7	251	333	42	6,031
68.2	17.9	1.0	2.4	0.1	4.2	5.5	0.7	100.0

3. 신고접수 경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의 경우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24년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일반적인 신고가 4,773건(7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통보 721건(12.0%), 인지 333건(5.5%), 연계 145건(2.4%), 이관 59건(1.0%) 순이었다.

[표 2-6]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4,773	333	59	145	721	6,031
79.1	5.5	1.0	2.4	12.0	100.0

4. 신고자 유형

가.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을 정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학대 의심사례 3,033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으로 전년도(802건) 대비 0.6% 감소하였다.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236건(73.7%)으로 전년도(2,167건) 대비 3.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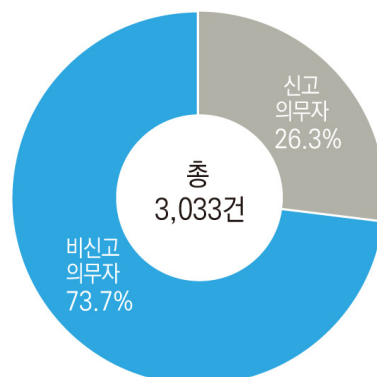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신고의무자가 학대 인지 및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2-7]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797	26.3	2,236	73.7	3,033	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표 2-8] 신고자 유형II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 고 의 무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7	3.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5	12.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3	0.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96	3.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5	0.5
	의료기사		-	-
	응급구조사		-	-
	119구급대의 대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8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7	0.2
	초·중등학교 종사자		113	3.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36	1.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4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8	0.9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3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3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0
	장기요양요원		6	0.2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2	0.1
	소계		797	26.3
비 신 고 의 무 자	본인		612	20.2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4	0.8
		부모	199	6.6
		자녀	47	1.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80	2.6
		그 외 친척	71	2.3
	유관 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216	7.1
		일반공무원	85	2.8
		공공기관 종사자	14	0.5
		교육기관 종사자	17	0.6
		의료기관 종사자	6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62	15.2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9	0.3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6	0.5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72	2.4
	타인		263	8.7
	파악 안 됨		43	1.4
	소계		2,236	73.7
	계		3,033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학대사례의 특성상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학대의 징후를 관찰하고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22.1.28. 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초·중등학교 교직원은 초·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2025. 4. 22.>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65건(45.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종사자 113건(14.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7건(13.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96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의무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 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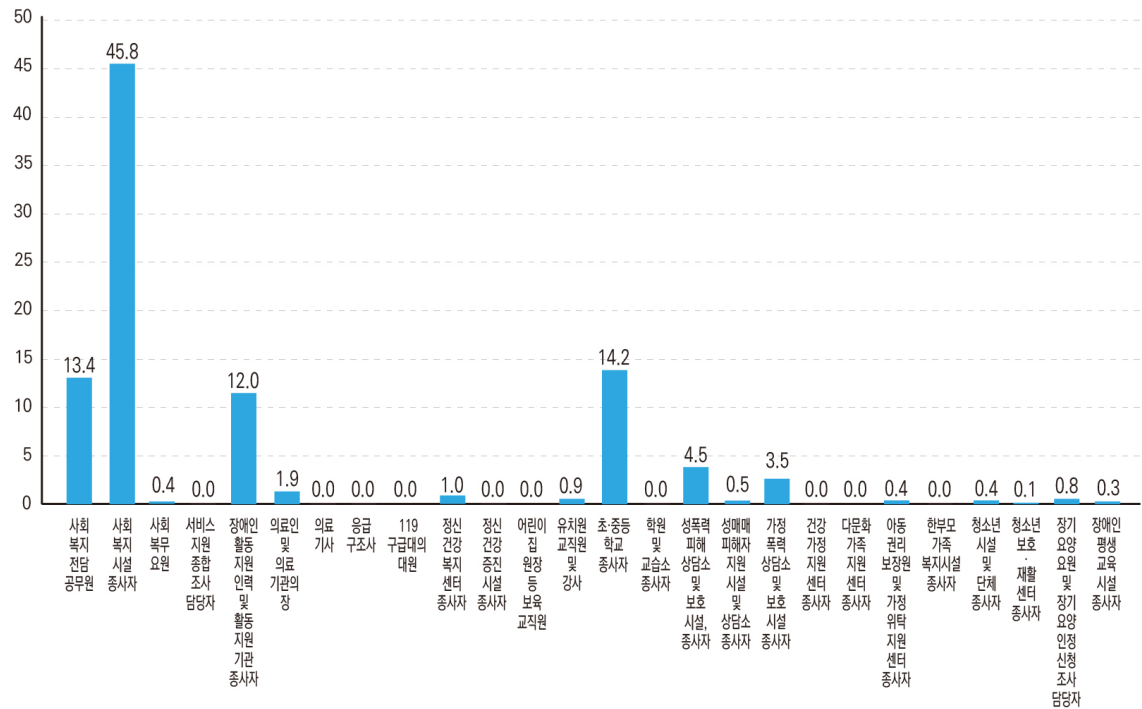
[표 2-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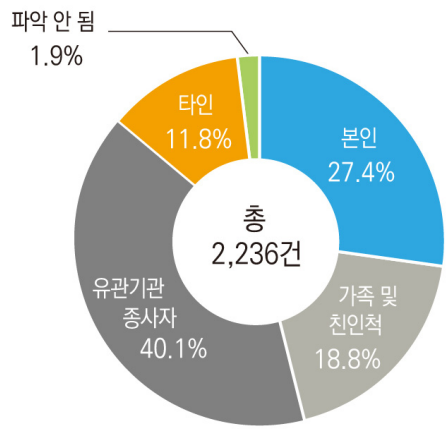
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7	13.4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365	45.8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3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96	12.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5	1.9
의료기사	-	-
응급구조사	-	-
119구급대의 대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과 종사자	8	1.0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과 종사자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7	0.9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종사자	113	14.2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36	4.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장과 종사자	4	0.5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28	3.5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3	0.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장과 종사자	3	0.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과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6	0.8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과 종사자	2	0.3
계	797	100.0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을 기준으로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고가 897건(40.1%)으로 가장 높았고, 본인 612건(27.4%), 가족 및 친인척 421건(18.8%), 타인 263건(11.8%), 파악 안 됨 43건(1.9%)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중 본인에 의한 신고가 612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62건(20.7%), 타인 263건(11.8%), 경찰공무원 216건(9.7%), 부모 199건(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는 612건(27.4%)이며, 전년도(530건)와 비교했을 때, 15.5% 증가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지도 향상에 따라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는 해마다 100여 건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0]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본인		612	27.4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4	1.1
	부모	199	8.9
	자녀	47	2.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80	3.6
	그 외 친척	71	3.2
	소계	421	18.8
유관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216	9.7
	일반공무원	85	3.8
	공공기관 종사자	14	0.6
	교육기관 종사자	17	0.8
	의료기관 종사자	6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62	20.7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6	0.7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9	0.4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72	3.2
	소계	897	40.1
타인		263	11.8
파악 안 됨		43	1.9
계		2,2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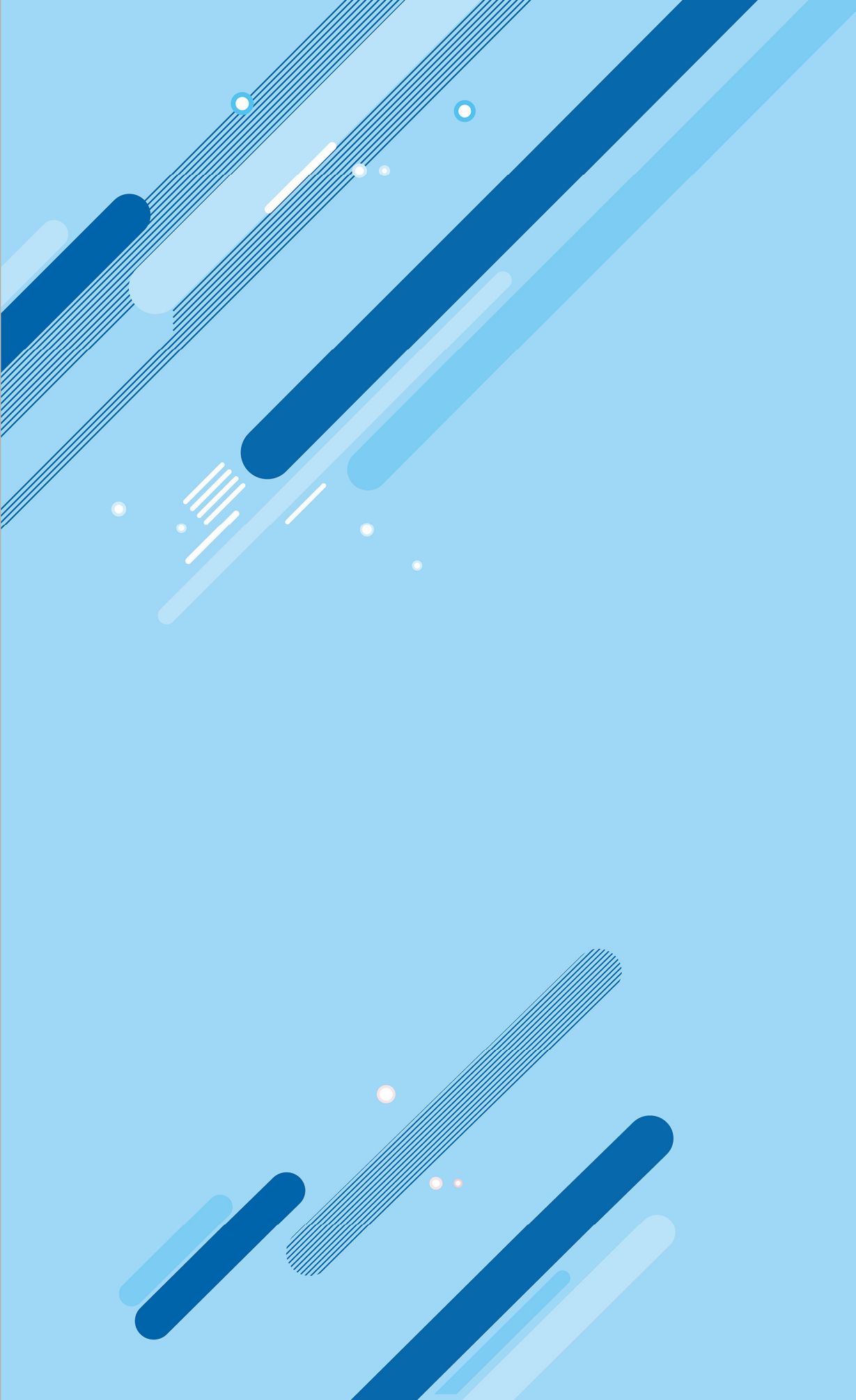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한 경우는 612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20.2%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530건) 15.5% 증가하였다. 직접 피해 신고를 한 본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32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체장애 79건(12.9%), 뇌병변장애 55건(9.0%), 정신장애 48건(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도(266건)보다 21.1% 증가하였고, 미등록 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32건(5.2%)으로 나타났다.

[표 2-11]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79	12.9
뇌병변장애	55	9.0
시각장애	36	5.9
청각장애	20	3.3
언어장애	-	-
안면장애	1	0.2
지적장애	322	52.6
자폐성장애	7	1.1
정신장애	48	7.8
신장장애	5	0.8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뇌전증장애	7	1.1
미등록	32	5.2
계	612	100.0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1. 학대조사
2.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제3장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1. 학대조사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는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해 면담하고,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모든 학대의심사례는 학대조사가 원칙이나 피해장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이미 경찰 또는 유관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등 조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학대조사실시율은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033건에 대해 2,984건을 조사했으며, 학대조사실시율은 98.4%로 나타났다. 학대조사 횟수는 6,855회로 사례별 평균 2.3회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조사실시율은 전년도(97.3%) 대비 1.1%p 상승했고, 조사 횟수도 전년도(6,277회) 대비 9.2% 증가했다.

[표 3-1]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학대의심사례 (A)	학대조사사례 (B)	학대조사실시율 (C=B/A*100)	학대조사 횟수 ⁵⁾ (D)	학대의심사례별 평균 조사 횟수 (E=D/A)
3,033	2,984	98.4	6,855	2.3

5)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대조사 실시 여부와 사례별 학대조사 횟수를 집계하고 있다.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1회의 조사로 보며, 조사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조사로 집계한다. 1회 조사에 조사대상이 1명 이상이라도 조사는 1회로 집계한다.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지역별 학대조사 실시율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10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각각 99.4%, 충청남도 99.3%, 충청북도 99.1% 순으로 높았다. 전라남도 93.8%, 경상북도 94.7%, 경상남도 95.4%, 전북특별자치도 97.5% 순으로 학대조사 실시율이 낮았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건수	학대조사실시율	학대조사횟수
서울		139	139	100.0	305
부산		166	165	99.4	339
대구		100	100	100.0	309
인천		96	96	100.0	327
광주		84	84	100.0	368
대전		145	142	97.9	224
울산		176	175	99.4	547
세종		59	58	98.3	200
경기	경기남부	372	370	99.5	738
	경기북부	254	254	100.0	456
	소계	626	624	99.7	1,194
강원		155	153	98.7	379
충북	충북	230	228	99.1	314
	충북북부	91	90	98.9	167
	소계	321	318	99.1	481
충남		153	152	99.3	394
전북		80	78	97.5	213
전남		194	182	93.8	367
경북		169	160	94.7	372
경남		259	247	95.4	558
제주		111	111	100.0	278
계		3,033	2,984	98.4	6,855

2. 사례판정

가. 전체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판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기타 사례는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 피해장애인의 조사 거부, 기관 간 이관 사례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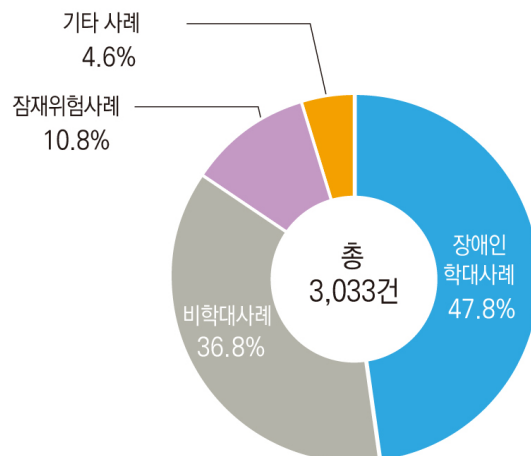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 비학대사례는 1,116건(36.8%), 잠재위험사례는 328건(10.8%), 기타 사례는 140건(4.6%)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전년도(1,418건)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체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기타 (조사중, 조사거부, 이관 등)		계	
1,449	47.8	1,116	36.8	328	10.8	140	4.6	3,033	100.0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결과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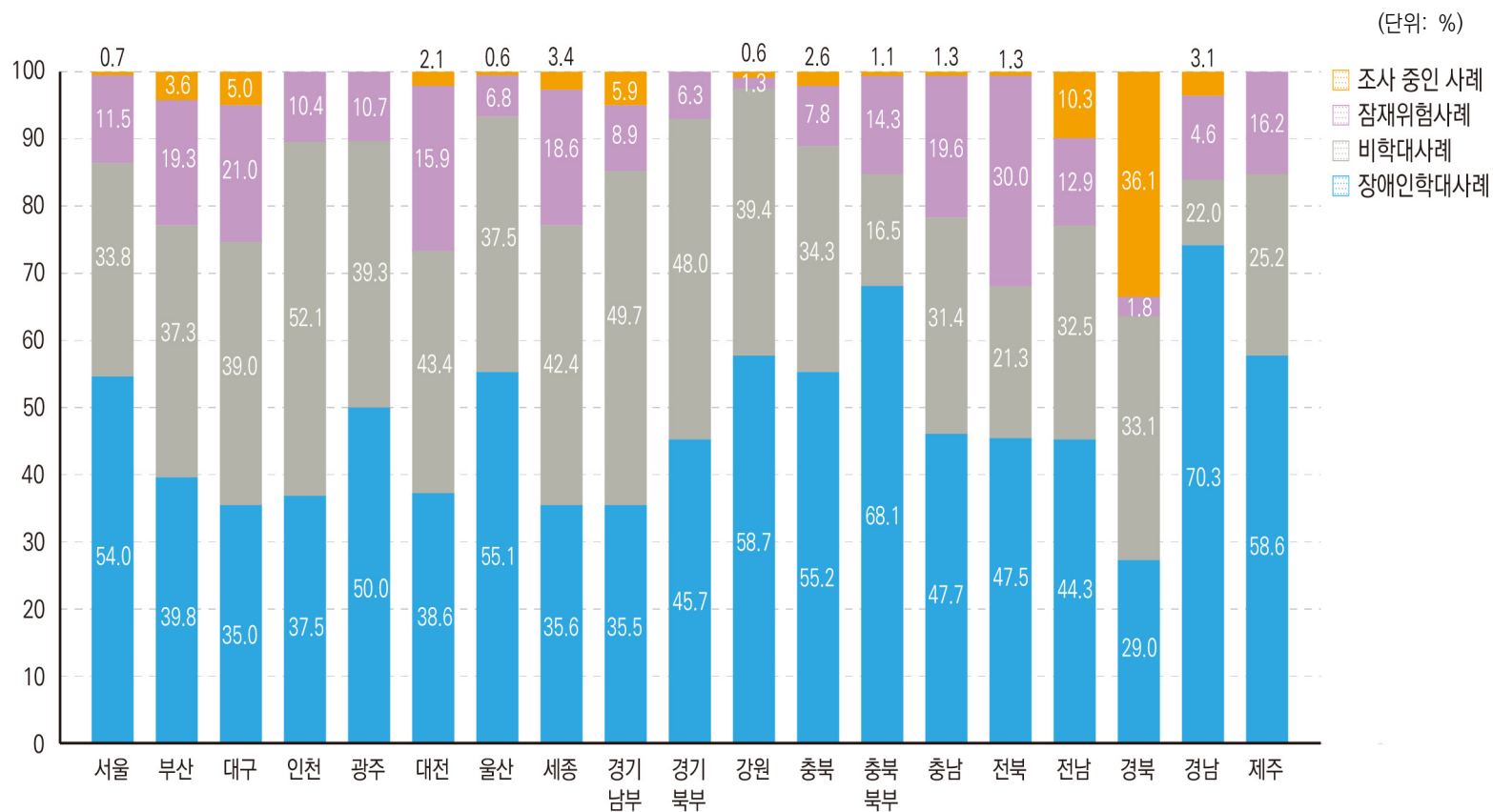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율은 경상남도 70.3%, 충청북도 58.9%, 강원특별자치도 58.7% 순으로 나타났다. 비학대사례 판정율은 인천광역시 52.1%, 경기도 49.0%, 대전광역시 43.4% 등의 순이었으며, 잠재 위험사례 판정율은 전북특별자치도 30.0%, 대구광역시 21.0%, 충청남도 19.6% 등의 순이었다.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기타(조사중, 조사거부, 이관 등)		계	
서울		75	54.0	47	33.8	16	11.5	1	0.7	139	100.0
부산		66	39.8	62	37.3	32	19.3	6	3.6	166	100.0
대구		35	35.0	39	39.0	21	21.0	5	5.0	100	100.0
인천		36	37.5	50	52.1	10	10.4	-	-	96	100.0
광주		42	50.0	33	39.3	9	10.7	-	-	84	100.0
대전		56	38.6	63	43.4	23	15.9	3	2.1	145	100.0
울산		97	55.1	66	37.5	12	6.8	1	0.6	176	100.0
세종		21	35.6	25	42.4	11	18.6	2	3.4	59	100.0
경기	경기남부	132	35.5	185	49.7	33	8.9	22	5.9	372	100.0
	경기북부	116	45.7	122	48.0	16	6.3	-	-	254	100.0
	소계	248	39.6	307	49.0	49	7.8	22	3.5	626	100.0
강원		91	58.7	61	39.4	2	1.3	1	0.6	155	100.0
충북	충북	127	55.2	79	34.3	18	7.8	6	2.6	230	100.0
	충북북부	62	68.1	15	16.5	13	14.3	1	1.1	91	100.0
	소계	189	58.9	94	29.3	31	9.7	7	2.2	321	100.0
충남		73	47.7	48	31.4	30	19.6	2	1.3	153	100.0
전북		38	47.5	17	21.3	24	30.0	1	1.3	80	100.0
전남		86	44.3	63	32.5	25	12.9	20	10.3	194	100.0
경북		49	29.0	56	33.1	3	1.8	61	36.1	169	100.0
경남		182	70.3	57	22.0	12	4.6	8	3.1	259	100.0
제주		65	58.6	28	25.2	18	16.2	-	-	111	100.0
계		1,449	47.8	1,116	36.8	328	10.8	140	4.6	3,033	100.0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3. 상담 및 지원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다.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2024년 신규로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이하 2024년 사례)와 2024년 이전에 접수되어 2024년 진행 중인 학대의심사례(이하 2024년 이전 사례)를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1) 2024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2024년 사례(3,033건)와 2024년 이전 사례(1,045건) 총 4,078건에 대해 33,45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8.2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30,340건) 대비 상담 및 지원 총횟수는 3,118건 증가(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8.2회로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 이전 사례 1,045건에 대하여 2024년에 10,411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별 평균 10.0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4년 사례 3,033건은 23,047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7.6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3-5] 2024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A)	상담 및 지원 횟수 (B)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C=B/A*100)
2024년 이전	1,045	10,411	10.0
2024년	3,033	23,047	7.6
계	4,078	33,458	8.2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4년 지원한 학대의심사례는 총 4,078건으로 상담 및 지원이 총 33,458회 이뤄졌고, 이 중 2024년에 신고된 학대의심사례 3,033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지원이 23,047회 이루어졌다. 2024년 상담 및 지원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 8,952회, 충청북도 2,654회, 경상남도 2,604회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제주특별자치도 15.7회, 전북특별자치도 12.1회, 서울특별시 12.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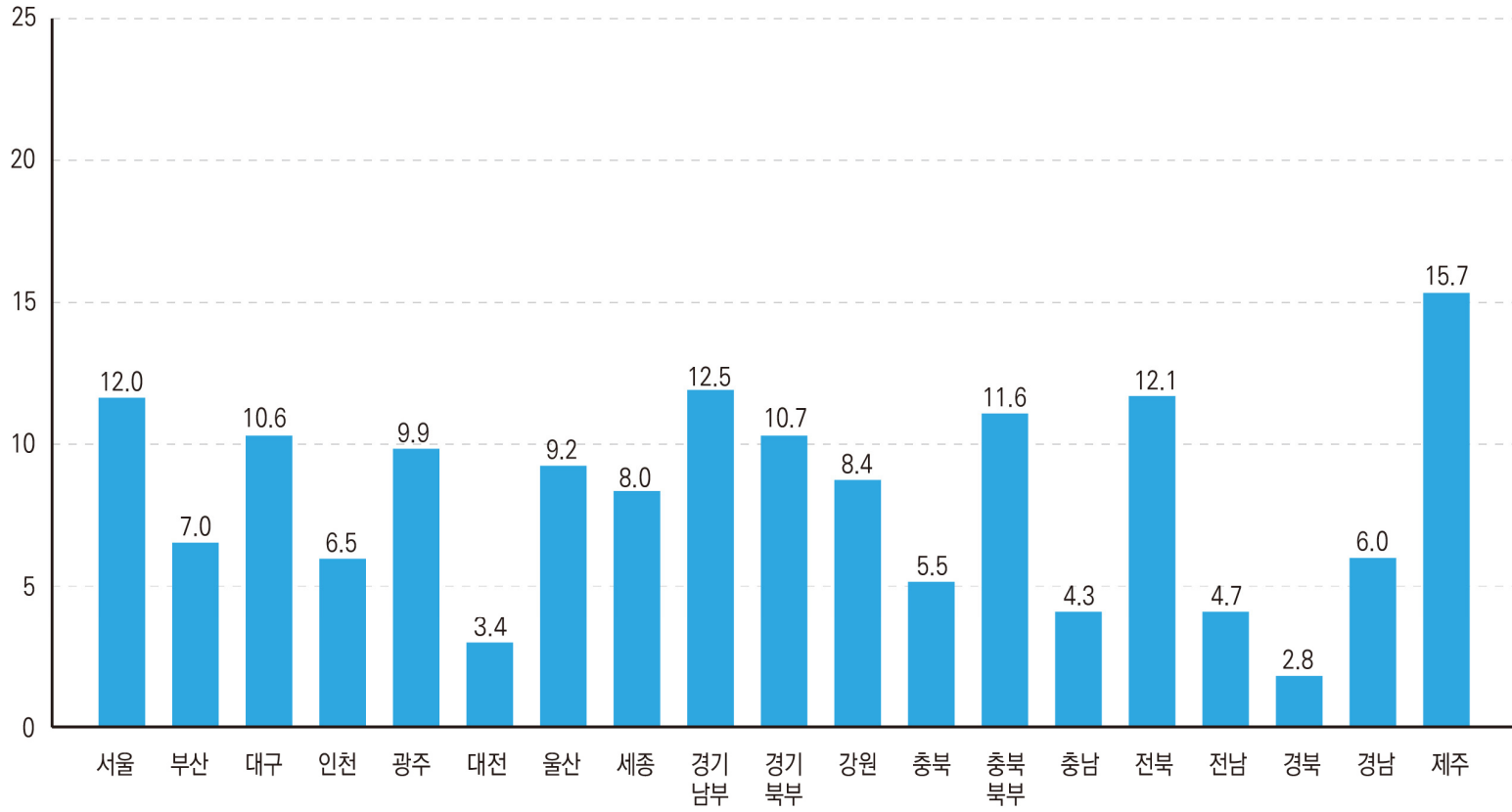
[표 3-6]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계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46	772	139	1,441	185	2,213	12.0
부산		88	572	166	1,197	254	1,769	7.0
대구		42	525	100	978	142	1,503	10.6
인천		27	123	96	676	123	799	6.5
광주		38	360	84	845	122	1,205	9.9
대전		40	173	145	457	185	630	3.4
울산		24	262	176	1,576	200	1,838	9.2
세종		39	360	59	425	98	785	8.0
경기	경기남부	86	1,717	372	4,021	458	5,738	12.5
	경기북부	47	871	254	2,343	301	3,214	10.7
	소계	133	2,588	626	6,364	759	8,952	11.8
강원		87	666	155	1,361	242	2,027	8.4
충북	충북	31	299	230	1,128	261	1,427	5.5
	충북북부	15	217	91	1,010	106	1,227	11.6
	소계	46	516	321	2,138	367	2,654	7.2
충남		42	283	153	563	195	846	4.3
전북		42	502	80	974	122	1,476	12.1
전남		79	502	194	792	273	1,294	4.7
경북		63	243	169	396	232	639	2.8
경남		178	1,102	259	1,502	437	2,604	6.0
제주		31	862	111	1,362	142	2,224	15.7
계		1,045	10,411	3,033	23,047	4,078	33,458	8.2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당 평균 상담 및 지원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94명은 총 4,078건의 사례에 대해 총 33,45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원 1명은 한 해 평균 43.4건의 사례를 담당하였고, 평균 355.9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전년도(상담원 1명 평균 39.7건, 326.2회)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평균 3.7건 증가하였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평균 29.7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 상담원 1명이 평균 84.7건의 사례를 담당하여 전국 평균보다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상북도 77.3건, 경상남도 72.8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원 1명이 한 해 동안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589.7회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기도 559.5회, 제주특별자치도 556.0회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3-7]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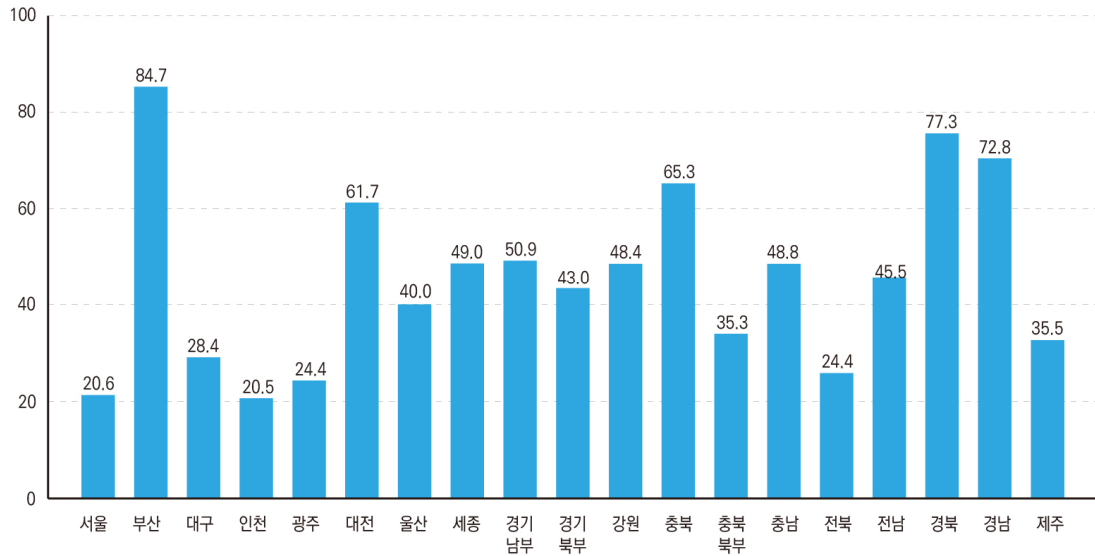
(단위: 명, 건, 회)

구분	상담원 수 (정원) ⁶⁾	학대의심 사례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횟수
서울	9	185	20.6	2,213	245.9
부산	3	254	84.7	1,769	589.7
대구	5	142	28.4	1,503	300.6
인천	6	123	20.5	799	133.2
광주	5	122	24.4	1,205	241.0
대전	3	185	61.7	630	210.0
울산	5	200	40.0	1,838	367.6
세종	2	98	49.0	785	392.5
경기	경기남부	9	458	50.9	5,738
	경기북부	7	301	43.0	3,214
	소계	16	759	47.4	8,952
강원	5	242	48.4	2,027	405.4
충북	충북	4	261	65.3	1,427
	충북북부	3	106	35.3	1,227
	소계	7	367	52.4	2,654
충남	4	195	48.8	846	211.5
전북	5	122	24.4	1,476	295.2
전남	6	273	45.5	1,294	215.7
경북	3	232	77.3	639	213.0
경남	6	437	72.8	2,604	434.0
제주	4	142	35.5	2,224	556.0
계	94	4,078	43.4	33,458	355.9

6) 2024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94명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원은 5명으로 그중 관장 및 운영 지원 직원 2명을 제외한 3명이 상담원으로서 사례지원 업무를 담당함.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 보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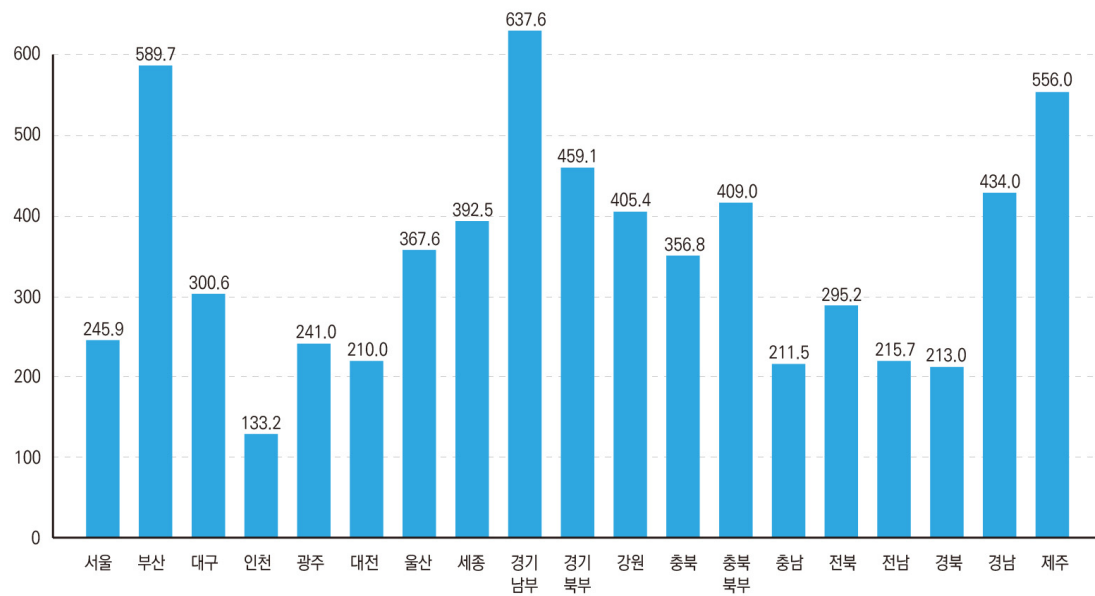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단위: 건)



[그림 3-5]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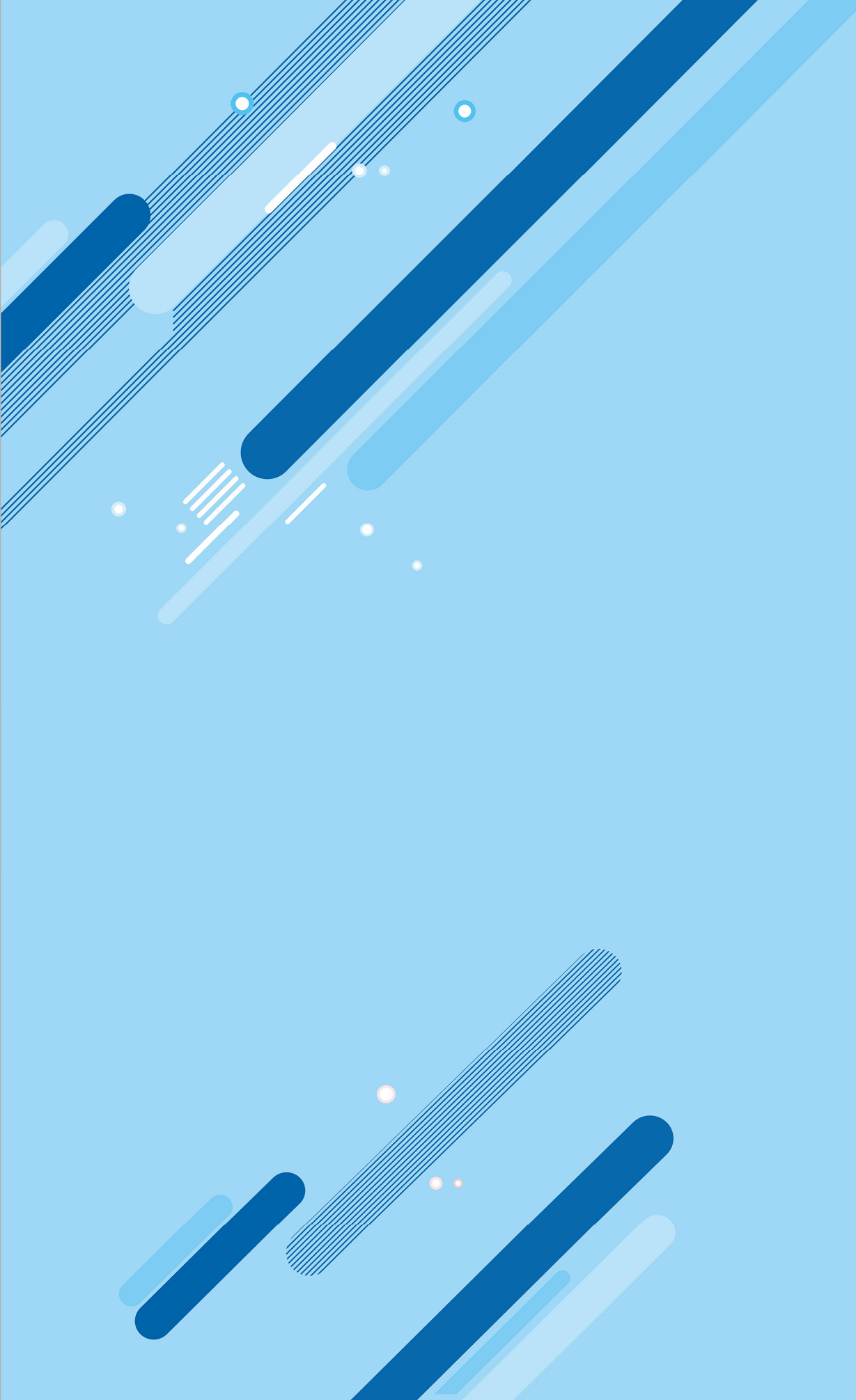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4. 사례종결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1,692건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었고,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한다. 2024년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55.8%이다. 이는 신고접수, 학대 의심사례, 전년도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의 증가 및 누적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표 3-8]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A)	당해 연도 종결사례(B)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C=B/A*100)
3,033	1,692	55.8%



4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양상
3. 장애인학대 유형
4.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7. 사후 모니터링

제4장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피해장애인

학대의심사례 3,033건 중 학대로 판정된 1,449건에 대한 피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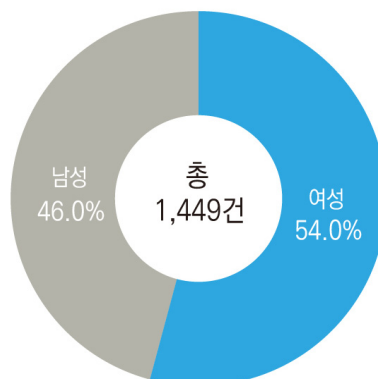
학대사례의 피해장애인 성별은 여성이 783건(54.0%), 남성이 666건(46.0%)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여성 피해장애인 학대사례(770건)는 1.7% 증가했고, 남성 피해장애인 학대사례(648건)는 2.8% 증가하였다.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계	
666	46.0	783	54.0	1,449	100.0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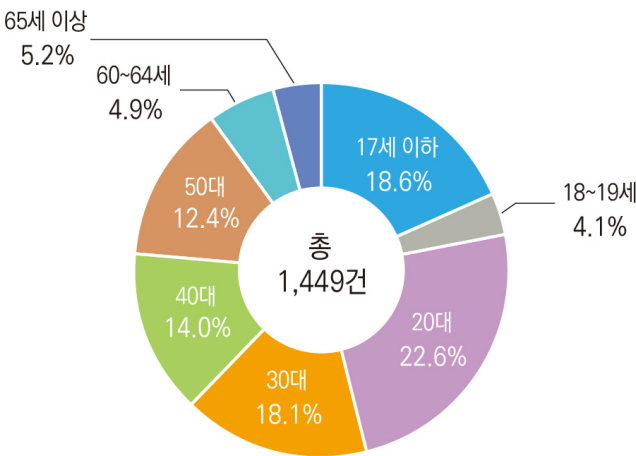
학대사례의 피해장애인 연령은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 학대사례가 330건(2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314건)는 5.1% 증가하였고, 20대(343건)는 4.4% 감소, 30대(228건)는 14.9% 증가하였다.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0대 이하	17세 이하	270	18.6
	18~19세	60	4.1
20대(20~29세)		328	22.6
30대(30~39세)		262	18.1
40대(40~49세)		203	14.0
50대(50~59세)		180	12.4
60대 이상	60~64세	71	4.9
	65세 이상	75	5.2
계		1,449	100.0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3) 장애유형 및 정도

학대사례 1,449건의 사례 중 등록 장애인은 1,362건(94.0%)이며, 미등록 장애인은 87건(6.0%)이다. 전년도 대비 등록 장애인의 건수(1,346건)는 1.2%, 미등록 장애인의 건수(72건)는 20.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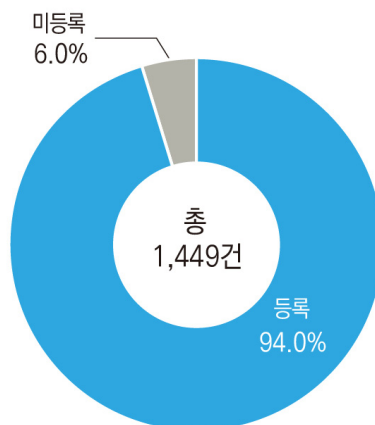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미등록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표 4-3]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건, %)

등록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계
1,362	87	1,449
94.0	6.0	100.0

[그림 4-3] 장애인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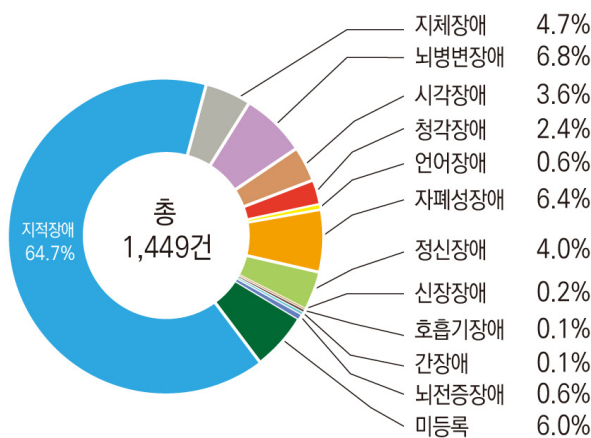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274건, 18.9%)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1,088건, 75.1%)의 수가 약 4.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적장애가 93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98건(6.8%), 자폐성장애 93건(6.4%), 미등록장애 87건(6.0%), 지체장애 68건(4.7%), 정신장애 58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8	4.7
뇌병변장애	98	6.8
시각장애	52	3.6
청각장애	35	2.4
언어장애	8	0.6
안면장애	-	-
지적장애	937	64.7
자폐성장애	93	6.4
정신장애	58	4.0
신장장애	3	0.2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1	0.1
간장애	1	0.1
뇌전증장애	8	0.6
미등록	87	6.0
계	1,449	100.0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과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며, 본 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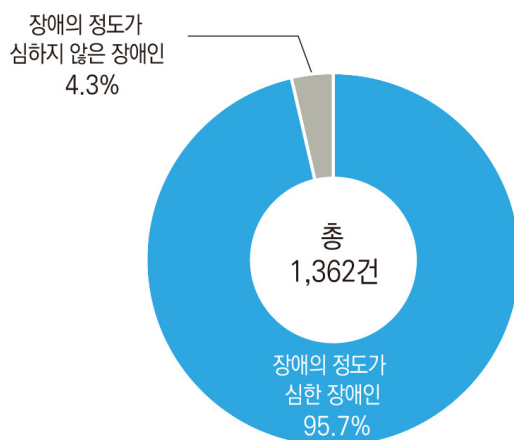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대사례 1,362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04건(95.7%)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8건(4.3%)으로 나타났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⁸⁾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04	95.7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8	4.3
계	1,362	100.0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8)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개편되었음.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음.

4) 거주형태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가와 시설로 나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가는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고접수 당시 재가 피해장애인은 1,209건(83.4%)이었고, 시설 피해장애인은 240건(16.6%)이었다.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1,209	83.4	240	16.6	1,449	100.0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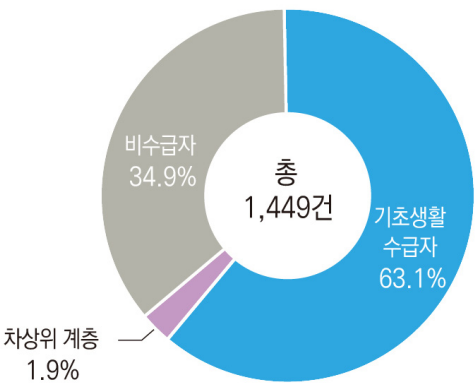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915건(6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506건(34.9%), 차상위 계층은 28건(1.9%)이었다.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자		계	
915	63.1	28	1.9	506	34.9	1,449	100.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나.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자는 사례에 따라 한 명 이상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사례별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한 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여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1,449명으로 동일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의 정보(이름, 소재지, 연락처 등)를 알 수 없는 경우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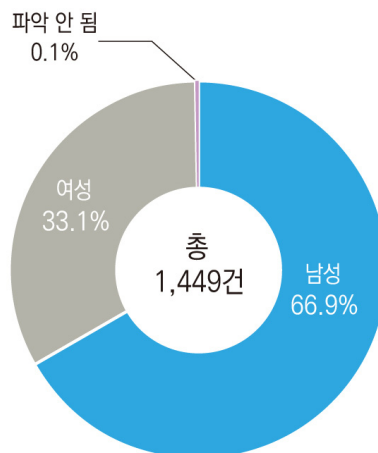
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는 남성 969건(66.9%), 여성 479건(33.1%), 파악 안 됨 1건(0.1%)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969	66.9	479	33.1	1	0.1	1,449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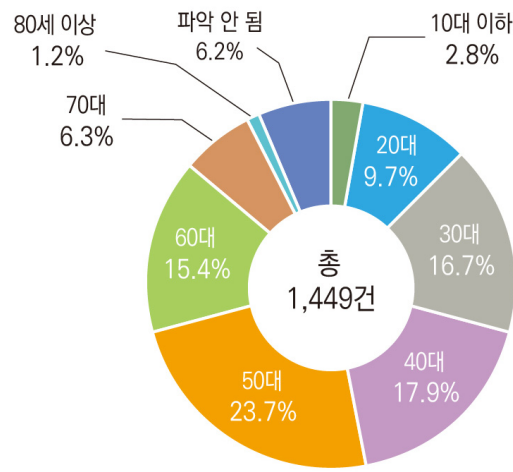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343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60건(17.9%), 30대 242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70대(60건) 51.7%, 30대(174건) 39.1%, 50대(257건) 33.5% 각각 증가하였다.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0대 이하(~19세)	41	2.8
20대(20~29세)	141	9.7
30대(30~39세)	242	16.7
40대(40~49세)	260	17.9
50대(50~59세)	343	23.7
60대(60~69세)	223	15.4
70대(70~79세)	91	6.3
80대 이상(80세~)	18	1.2
파악 안 됨	90	6.2
계	1,449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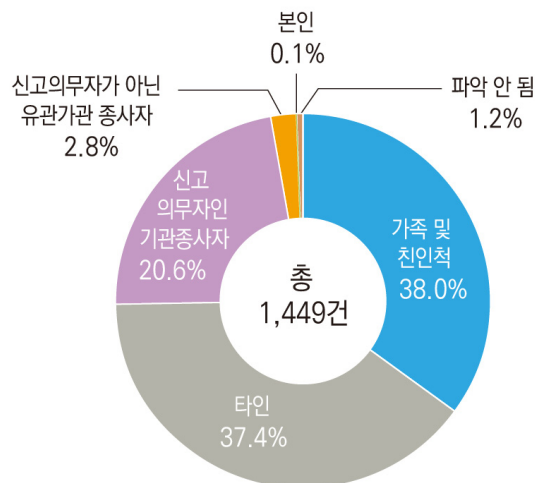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父), 모(母),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이 있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직종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을 말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551건(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 542건(37.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98건(20.6%),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40건(2.8%), 파악 안 됨 17건(1.2%), 본인 1건(0.1%) 순이었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가 328건(22.6%)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228건(15.7%), 부(父)에 의한 학대 150건(10.4%)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모(母)에 의한 학대 115건(7.9%), 배우자 113건(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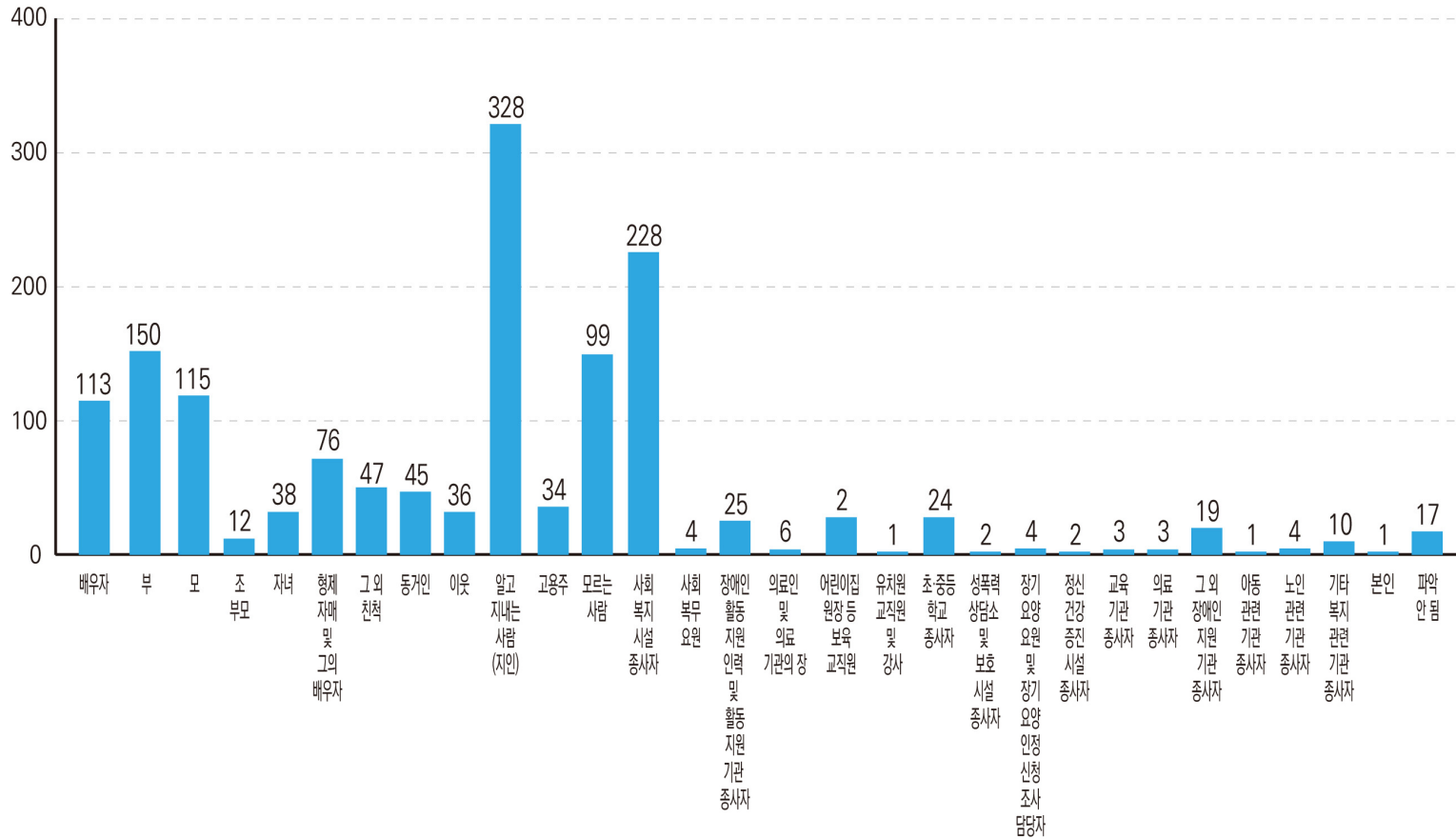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13	7.8
	부	150	10.4
	모	115	7.9
	조부모	12	0.8
	자녀	38	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76	5.2
	그 외 친척	47	3.2
	소계	551	38.0
타인	동거인	45	3.1
	이웃	36	2.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28	22.6
	고용주	34	2.3
	모르는 사람	99	6.8
	소계	542	37.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	15.7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4	0.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5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6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24	1.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4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2	0.1
	소계	298	20.6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	0.2
	의료기관 종사자	3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9	1.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1	0.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4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0	0.7
	경찰공무원	-	-
	일반공무원	-	-
	소계	40	2.8
	본인	1	0.1
파악 안 됨		17	1.2
계		1,449	100.0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단위: 건)



4)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1,004건(69.3%), 동거하는 경우는 414건(28.6%),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31건(2.1%)으로 나타났다.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 안 됨		계	
414	28.6	1,004	69.3	31	2.1	1,449	100.0

2. 장애인학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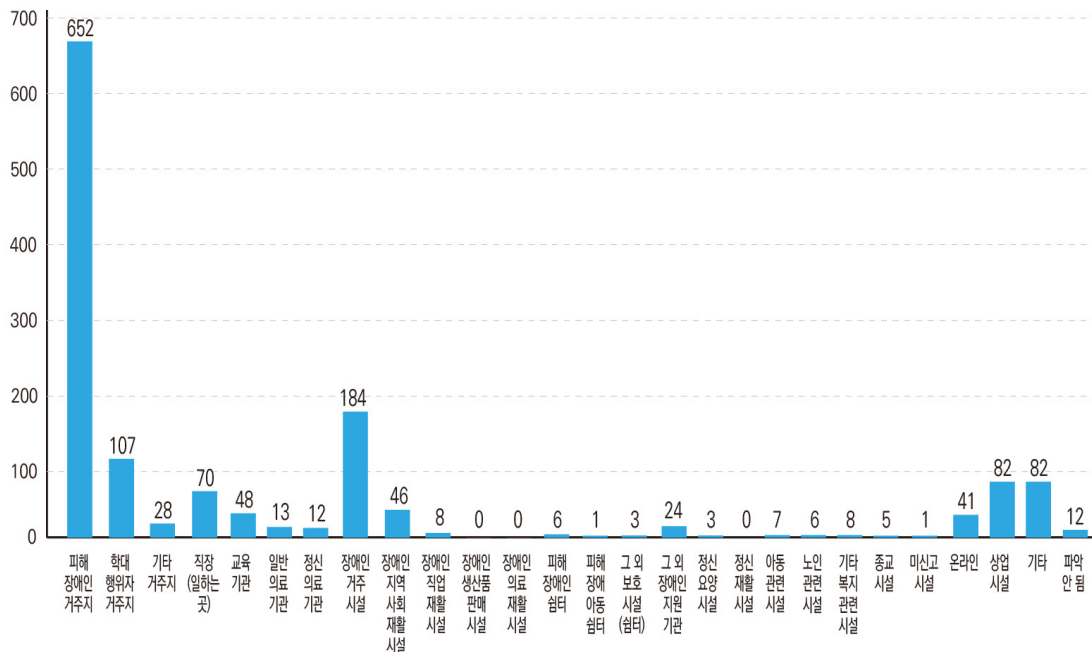
가.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내용,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그 외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로 652건(45.0%)이 발생했다. 그다음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184건(12.7%),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107건(7.4%), 상업시설·기타 82건(5.7%) 등의 순이었다.

[그림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표 4-1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652	45.0
학대행위자 거주지		107	7.4
기타 거주지		28	1.9
직장(일하는 곳)		70	4.8
교육기관		48	3.3
일반 의료기관		13	0.9
정신 의료기관		12	0.8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4	12.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6	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0.6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피해장애인쉼터	6	0.4
	피해장애아동쉼터	1	0.1
	소계	245	16.9
그 외 보호시설(쉼터)		3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4	1.7
정신요양시설		3	0.2
정신재활시설		-	-
아동관련시설		7	0.5
노인관련시설		6	0.4
기타 복지관련시설		8	0.6
종교시설		5	0.3
미신고시설		1	0.1
온라인		41	2.8
상업시설		82	5.7
기타		82	5.7
파악 안 됨		12	0.8
계		1,449	100.0

나. 학대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장애인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인 681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74건(12.0%), 3~6개월 미만 158건(10.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의 발생빈도는 1~2회 이하가 533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회 이상 370건(25.5%), 5회 미만 217건(15.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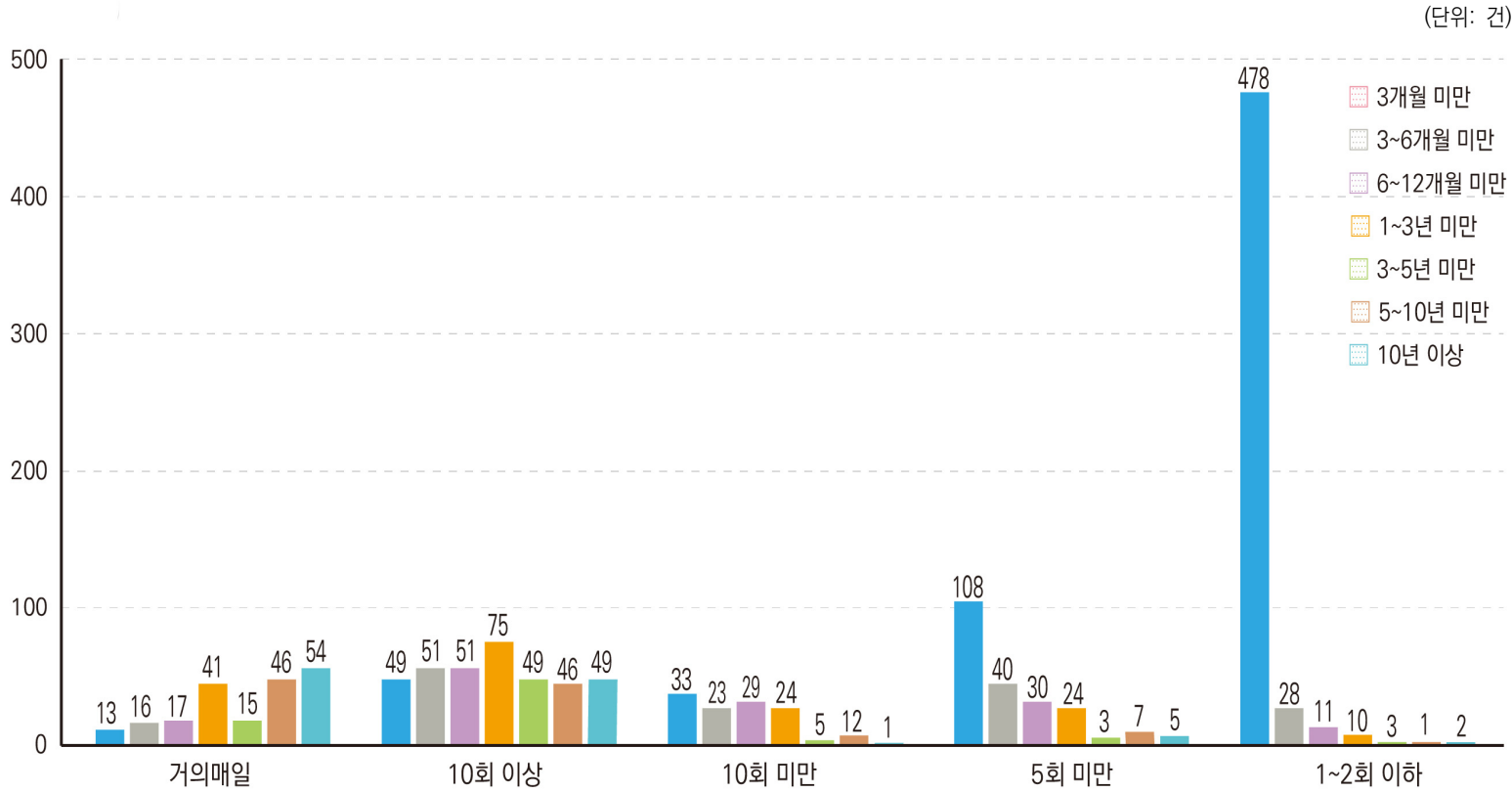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2회 이하로 짧은 경우 학대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례가 478건(89.7%)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의 지속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115건(56.9%)으로 나타났다.

[표 4-13]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이하		계	
지 속 기 간	3개월 미만	13	6.4	49	13.2	33	26.0	108	49.8	478	89.7	681	47.0
	3~6개월 미만	16	7.9	51	13.8	23	18.1	40	18.4	28	5.3	158	10.9
	6~12개월 미만	17	8.4	51	13.8	29	22.8	30	13.8	11	2.1	138	9.5
	1~3년 미만	41	20.3	75	20.3	24	18.9	24	11.1	10	1.9	174	12.0
	3~5년 미만	15	7.4	49	13.2	5	3.9	3	1.4	3	0.6	75	5.2
	5~10년 미만	46	22.8	46	12.4	12	9.4	7	3.2	1	0.2	112	7.7
	10년 이상	54	26.7	49	13.2	1	0.8	5	2.3	2	0.4	111	7.7
	계	202	100.0	370	100.0	127	100.0	217	100.0	533	100.0	1,449	10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은 장애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학대 유형 분류 시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중복 학대’로 보고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과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가. 장애인학대 유형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전체 학대사례 1,449건 중 중복 학대가 460건(3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336건(23.2%), 경제적 착취 253건(17.5%), 성적 학대 188건(13.0%), 정서적 학대 146건(10.1%), 방임 64건(4.4%), 유기 2건(0.1%) 순이었다.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336	23.2
정서적 학대	146	10.1
성적 학대	188	13.0
경제적 착취	253	17.5
유기	2	0.1
방임	64	4.4
중복 학대	460	31.7
계	1,449	100.0

2)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전체 학대사례 1,44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2,062건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신체적 학대가 692건(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547건(26.5%), 경제적 착취 384건(18.6%), 성적 학대 260건(12.6%), 방임 174건(8.4%), 유기 5건(0.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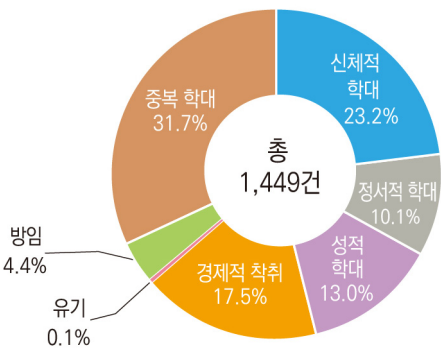
전년도와 비교하면 방임(119건)은 46.2%, 신체적 학대(572건)는 21.0%, 정서적 학대(460건)는 18.9% 증가하였고, 경제적 착취(443건)는 13.3%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유기 사례가 올해 5건 발생하였다.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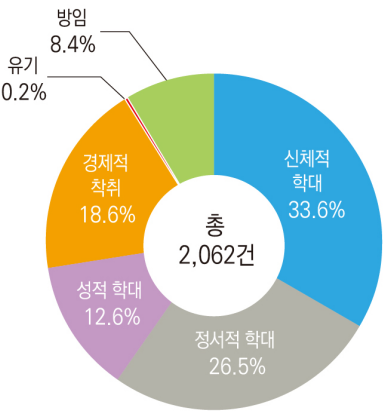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692	33.6
정서적 학대	547	26.5
성적 학대	260	12.6
경제적 착취	384	18.6
유기	5	0.2
방임	174	8.4
계	2,062	100.0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그림 4-14] 장애인학대 유형II
(중복 학대 미분류)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2,062건에 대해 장애인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각각의 장애인학대 유형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착취와 방임에서는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여성피해자 비율보다 높은 반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남성피해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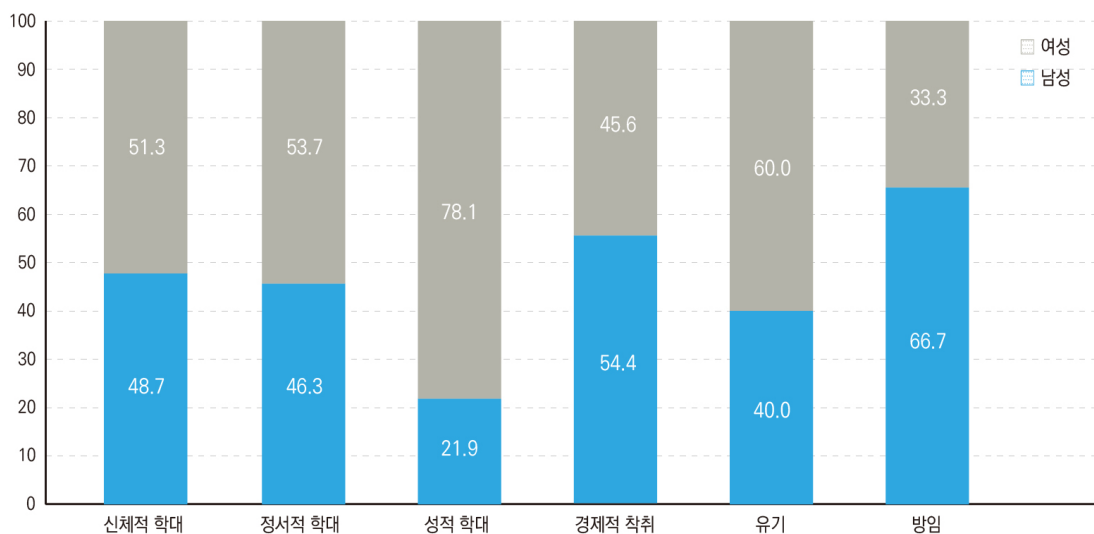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337	48.7	253	46.3	57	21.9	209	54.4	2	40.0	116	66.7	974	47.2
여성	355	51.3	294	53.7	203	78.1	175	45.6	3	60.0	58	33.3	1,088	52.8
계	692	100.0	547	100.0	260	100.0	384	100.0	5	100.0	174	100.0	2,062	100.0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모두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가 가장 많았고, 20대, 30대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40대, 50대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가 가장 많았고, 20~30대, 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50대 각각 1건으로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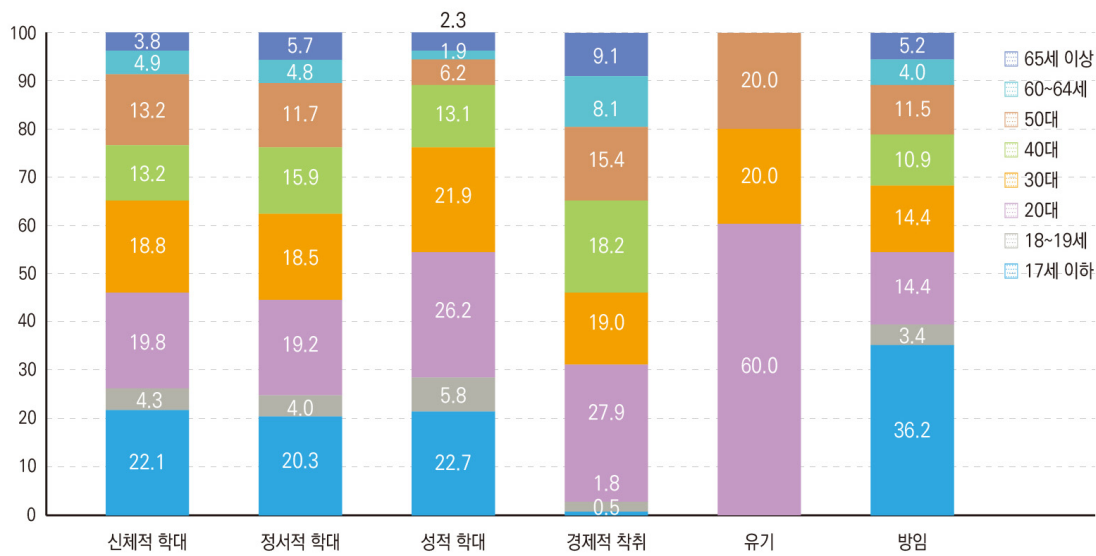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0대 이하	17세 이하	153	22.1	111	20.3	59	22.7	2	0.5	-	-	63	36.2	388	18.8
	18~19세	30	4.3	22	4.0	15	5.8	7	1.8	-	-	6	3.4	80	3.9
20대(20~29세)		137	19.8	105	19.2	68	26.2	107	27.9	3	60.0	25	14.4	445	21.6
30대(30~39세)		130	18.8	101	18.5	57	21.9	73	19.0	1	20.0	25	14.4	387	18.8
40대(40~49세)		91	13.2	87	15.9	34	13.1	70	18.2	-	-	19	10.9	301	14.6
50대(50~59세)		91	13.2	64	11.7	16	6.2	59	15.4	1	20.0	20	11.5	251	12.2
60대 이상	60~64세	34	4.9	26	4.8	5	1.9	31	8.1	-	-	7	4.0	103	5.0
	65세 이상	26	3.8	31	5.7	6	2.3	35	9.1	-	-	9	5.2	107	5.2
계		692	100.0	547	100.0	260	100.0	384	100.0	5	100.0	174	100.0	2,062	100.0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각 장애유형은 신체적 학대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피해 비율이 높았다. 시각장애인은 정서적 학대, 청각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피해 비율이 높았다.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4-18]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지체장애	36	41.4	23	26.4	9	10.3	16	18.4	-	-	3	3.4	87	100.0
뇌병변장애	57	38.0	44	29.3	16	10.7	17	11.3	-	-	16	10.7	150	100.0
시각장애	19	22.4	35	41.2	3	3.5	19	22.4	-	-	9	10.6	85	100.0
청각장애	13	27.7	13	27.7	4	8.5	16	34.0	-	-	1	2.1	47	100.0
언어장애	4	30.8	4	30.8	-	-	3	23.1	-	-	2	15.4	13	100.0
안면장애	-	-	-	-	-	-	-	-	-	-	-	-	-	-
지적장애	429	32.6	320	24.3	196	14.9	273	20.8	5	0.4	92	7.0	1,315	100.0
자폐성장애	66	42.0	49	31.2	9	5.7	1	0.6	-	-	32	20.4	157	100.0
정신장애	27	35.5	21	27.6	5	6.6	16	21.1	-	-	7	9.2	76	100.0
신장장애	2	50.0	2	50.0	-	-	-	-	-	-	-	-	4	100.0
심장장애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1	100.0	-	-	-	-	1	100.0
간장애	1	100.0	-	-	-	-	-	-	-	-	-	-	1	100.0
뇌전증장애	6	46.2	6	46.2	-	-	1	7.7	-	-	-	-	13	100.0
미등록	32	28.3	30	26.5	18	15.9	21	18.6	-	-	12	10.6	113	100.0
계	692	33.6	547	26.5	260	12.6	384	18.6	5	0.2	174	8.4	2,062	100.0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모든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피해장애인이 시설보다 재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재가 거주 장애인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과 비교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피해 비율이 8:2~7:3으로 뚜렷하게 높았다. 방임은 재가 피해 비율 대비 시설 피해 비율이 6:4 정도로 확인됐다.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재가	572	82.7	432	79.0	193	74.2	321	83.6	5	100.0	112	64.4	1,635	79.3
시설	120	17.3	115	21.0	67	25.8	63	16.4	-	-	62	35.6	427	20.7
계	692	100.0	547	100.0	260	100.0	384	100.0	5	100.0	174	100.0	2,062	100.0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이 356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62건(23.4%), 타인 144건(20.8%)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214건(39.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59건(29.1%), 타인 144건(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이 174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40건(15.4%)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 222건(57.8%), 가족 및 친인척 81건(21.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68건(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건(60.0%), 타인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각각 1건(20.0%)으로 동일했다. 방임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8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70건(40.2%) 등의 순이었다.

[표 4-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97	14.0	49	9.0	3	1.2	6	1.6	-	-	3	1.7	158	7.7
	부	101	14.6	64	11.7	4	1.5	9	2.3	1	20.0	18	10.3	197	9.6
	모	68	9.8	38	6.9	4	1.5	7	1.8	1	20.0	38	21.8	156	7.6
	조부모	9	1.3	5	0.9	-	-	1	0.3	-	-	1	0.6	16	0.8
	자녀	31	4.5	19	3.5	1	0.4	3	0.8	1	20.0	-	-	55	2.7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5	5.1	28	5.1	6	2.3	31	8.1	-	-	9	5.2	109	5.3
	그 외 친척	15	2.2	11	2.0	8	3.1	24	6.3	-	-	1	0.6	59	2.9
	소계	356	51.4	214	39.1	26	10.0	81	21.1	3	60.0	70	40.2	750	36.4
타인	동거인	25	3.6	13	2.4	5	1.9	15	3.9	1	20.0	1	0.6	60	2.9
	이웃	8	1.2	11	2.0	13	5.0	8	2.1	-	-	1	0.6	41	2.0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87	12.6	92	16.8	115	44.2	130	33.9	-	-	-	-	424	20.6
	고용주	10	1.4	12	2.2	2	0.8	26	6.8	-	-	2	1.1	52	2.5
	모르는 사람	14	2.0	16	2.9	39	15.0	43	11.2	-	-	-	-	112	5.4
	소계	144	20.8	144	26.3	174	66.9	222	57.8	1	20.0	4	2.3	689	33.4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	17.3	118	21.6	33	12.7	60	15.6	1	20.0	68	39.1	400	19.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4	0.6	4	0.7	-	-	-	-	-	-	-	-	8	0.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4	2.0	15	2.7	1	0.4	5	1.3	-	-	3	1.7	38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3	-	-	1	0.4	-	-	-	-	5	2.9	8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0.3	2	0.4	-	-	-	-	-	-	-	-	4	0.2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	-	-	-	-	-	-	-	-	-	1	0.0
	초·중등학교 종사자	14	2.0	16	2.9	2	0.8	-	-	-	-	5	2.9	37	1.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0.3	2	0.4	2	0.8	-	-	-	-	2	1.1	8	0.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1	1	0.2	1	0.4	3	0.8	-	-	-	-	6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2	0.3	1	0.2	-	-	-	-	-	-	-	-	3	0.1
	소계	162	23.4	159	29.1	40	15.4	68	17.7	1	20.0	83	47.7	513	24.9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3	-	-	-	-	-	-	-	-	1	0.6	3	0.1
	의료기관 종사자	1	0.1	1	0.2	-	-	2	0.5	-	-	-	-	4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8	1.2	6	1.1	6	2.3	3	0.8	-	-	3	1.7	26	1.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1	0.3	-	-	-	-	1	0.0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1	0.2	1	0.4	3	0.8	-	-	-	-	5	0.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6	0.9	7	1.3	-	-	1	0.3	-	-	-	-	14	0.7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일반공무원	-	-	-	-	-	-	-	-	-	-	-	-	-	-
	소계	17	2.5	15	2.7	7	2.7	10	2.6	-	-	4	2.3	53	2.6
본인		-	-	-	-	-	-	-	-	-	-	1	0.6	1	0.0
파악 안 됨		13	1.9	15	2.7	13	5.0	3	0.8	-	-	12	6.9	56	2.7
계		692	100.0	547	100.0	260	100.0	384	100.0	5	100.0	174	100.0	2,062	100.0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 357건(41.0%), 정서적 학대 239건(27.4%), 경제적 착취 151건(1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99건(28.8%), 신체적 학대 98건(28.5%), 방임 59건(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48건(31.4%), 성적 학대 37건(24.2%), 정서적 학대 34건(22.2%) 등의 순이었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 37건(38.5%), 정서적 학대 28건(29.2%), 방임 21건(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업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42건(4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 27건(28.4%), 신체적 학대 12건(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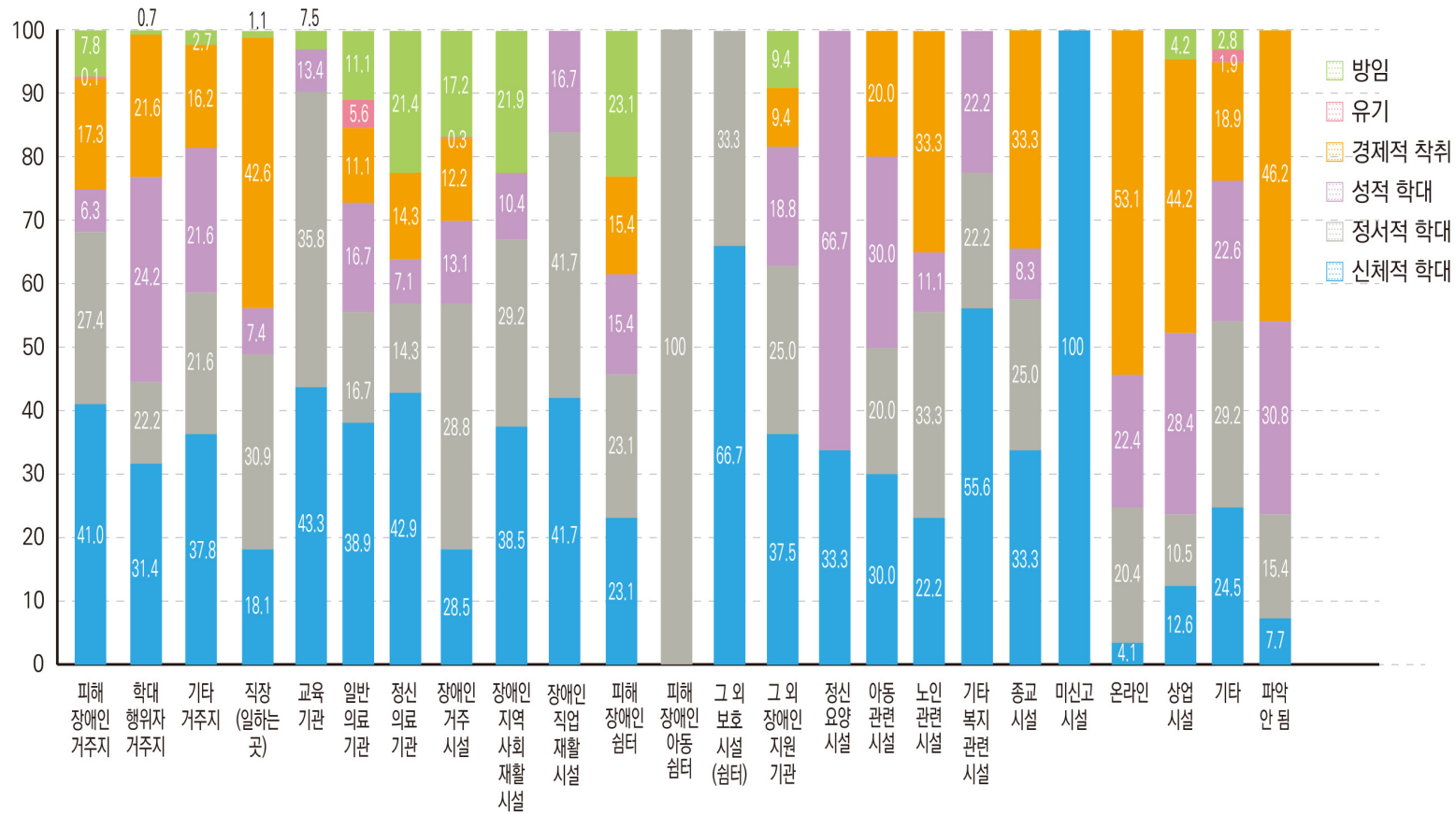
[표 4-21]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피해장애인 거주지		357	41.0	239	27.4	55	6.3	151	17.3	1	0.1	68	7.8	871	100.0
학대행위자 거주지		48	31.4	34	22.2	37	24.2	33	21.6	-	-	1	0.7	153	100.0
기타 거주지		14	37.8	8	21.6	8	21.6	6	16.2	-	-	1	2.7	37	100.0
직장(일하는 곳)		17	18.1	29	30.9	7	7.4	40	42.6	-	-	1	1.1	94	100.0
교육기관		29	43.3	24	35.8	9	13.4	-	-	-	-	5	7.5	67	100.0
일반 의료기관		7	38.9	3	16.7	3	16.7	2	11.1	1	5.6	2	11.1	18	100.0
정신 의료기관		6	42.9	2	14.3	1	7.1	2	14.3	-	-	3	21.4	14	100.0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98	28.5	99	28.8	45	13.1	42	12.2	1	0.3	59	17.2	344	10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7	38.5	28	29.2	10	10.4	-	-	-	-	21	21.9	96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41.7	5	41.7	2	16.7	-	-	-	-	-	-	12	100.0
	피해장애인쉼터	3	23.1	3	23.1	2	15.4	2	15.4	-	-	3	23.1	13	100.0
	피해장애아동쉼터	-	-	1	100.0	-	-	-	-	-	-	-	-	1	100.0
	소계	143	30.7	136	29.2	59	12.7	44	9.4	1	0.2	83	17.8	466	100.0
그 외 보호시설(쉼터)		2	66.7	1	33.3	-	-	-	-	-	-	-	-	3	100.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2	37.5	8	25.0	6	18.8	3	9.4	-	-	3	9.4	32	100.0
정신요양시설		1	33.3	-	-	2	66.7	-	-	-	-	-	-	3	100.0
정신재활시설		-	-	-	-	-	-	-	-	-	-	-	-	-	-
아동관련시설		3	30.0	2	20.0	3	30.0	2	20.0	-	-	-	-	10	100.0
노인관련시설		2	22.2	3	33.3	1	11.1	3	33.3	-	-	-	-	9	100.0
기타 복지관련시설		5	55.6	2	22.2	2	22.2	-	-	-	-	-	-	9	100.0
종교시설		4	33.3	3	25.0	1	8.3	4	33.3	-	-	-	-	12	100.0
미신고시설		1	100.0	-	-	-	-	-	-	-	-	-	-	1	100.0
온라인		2	4.1	10	20.4	11	22.4	26	53.1	-	-	-	-	49	100.0
상업시설		12	12.6	10	10.5	27	28.4	42	44.2	-	-	4	4.2	95	100.0
기타		26	24.5	31	29.2	24	22.6	20	18.9	2	1.9	3	2.8	106	100.0
파악 안 됨		1	7.7	2	15.4	4	30.8	6	46.2	-	-	-	-	13	100.0
계		692	33.6	547	26.5	260	12.6	384	18.6	5	0.2	174	8.4	2,062	100.0

[그림 4-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표 4-22]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 장애인 거주지		학대 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 (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03	15.8	2	1.9	1	3.6	-	-	-	-	1	7.7	-	-	-	-	-	-	-	-
	부	128	19.6	10	9.3	4	14.3	1	1.4	-	-	2	15.4	-	-	-	-	-	-	-	-
	모	101	15.5	7	6.5	-	-	1	1.4	1	2.1	1	7.7	-	-	-	-	-	-	-	-
	조부모	10	1.5	1	0.9	-	-	-	-	-	-	-	-	-	-	-	-	-	-	-	-
	자녀	35	5.4	1	0.9	1	3.6	-	-	-	-	-	-	-	-	-	-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3	9.7	4	3.7	1	3.6	1	1.4	-	-	-	1	8.3	1	0.5	-	-	-	-	-
	그 외 친척	35	5.4	8	7.5	2	7.1	-	-	-	-	-	-	-	-	-	-	-	-	-	-
	소계	475	72.9	33	30.8	9	32.1	3	4.3	1	2.1	4	30.8	1	8.3	1	0.5	-	-	-	-
타인	동거인	25	3.8	13	12.1	-	-	1	1.4	-	-	-	-	-	-	5	2.7	-	-	-	-
	이웃	16	2.5	3	2.8	2	7.1	-	-	-	-	-	-	-	-	1	0.5	-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83	12.7	50	46.7	13	46.4	22	31.4	19	39.6	4	30.8	3	25.0	3	1.6	9	19.6	3	37.5
	고용주	3	0.5	4	3.7	-	-	24	34.3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20	3.1	3	2.8	3	10.7	2	2.9	3	6.3	1	7.7	2	16.7	-	-	2	4.3	-	-
	소계	147	22.5	73	68.2	18	64.3	49	70.0	22	45.8	5	38.5	5	41.7	9	4.9	11	23.9	3	37.5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	0.9	1	0.9	-	-	13	18.6	-	-	-	-	-	-	161	87.5	27	58.7	5	62.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	-	-	-	-	-	-	-	-	-	-	-	-	-	-	3	6.5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7	2.6	-	-	-	-	-	-	-	-	-	-	-	-	-	-	4	8.7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2	15.4	4	33.3	-	-	-	-	-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	-	-	-	1	2.1	-	-	-	-	-	-	-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	-	-	-	-	-	1	2.1	-	-	-	-	-	-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	-	-	-	23	47.9	-	-	-	-	-	-	-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정기요양요원 및 장애요양 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2	-	-	-	-	-	-	-	-	-	-	-	-	-	-	-	-	-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	-	-	-	-	-	-	1	8.3	-	-	-	-	-	-	-
	소계	24	3.7	1	0.9	-	-	13	18.6	25	52.1	2	15.4	5	41.7	161	87.5	34	73.9	5	62.5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2	15.4	1	8.3	-	-	-	-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	-	-	-	-	4	5.7	-	-	-	-	-	-	-	-	1	2.2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	0.2	-	-	-	-	-	-	-	-	-	-	-	1	0.5	-	-	-	-	-
	기타 복자관련기관 종사자	1	0.2	-	-	-	-	1	1.4	-	-	-	-	-	-	-	-	-	-	-	-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소계	2	0.3	-	-	-	-	5	7.1	-	-	2	15.4	1	8.3	1	0.5	1	2.2	-	-
본인		1	0.2	-	-	-	-	-	-	-	-	-	-	-	-	-	-	-	-	-	-
파악 안 됨		3	0.5	-	-	1	3.6	-	-	-	-	-	-	-	-	12	6.5	-	-	-	-
계		652	100.0	107	100.0	28	100.0	70	100.0	48	100.0	13	100.0	12	100.0	184	100.0	46	100.0	8	100.0

구분		장애인 생산물판매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피해 장애인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아동관련 시설		노인관련 시설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모	-	-	-	-	-	-	-	-	1	33.3	-	-	-	-	-	-	-	-	-	-
	조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녀	-	-	-	-	-	-	-	-	-	-	-	-	-	-	-	-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1	16.7
	그 외 친척	-	-	-	-	-	-	-	-	-	-	-	-	-	-	-	-	-	-	-	-
타인	소계	-	-	-	-	-	-	-	-	1	33.3	-	-	-	-	-	-	-	-	1	16.7
	동거인	-	-	-	-	-	-	-	-	-	-	-	-	-	-	-	-	-	-	-	-
	이웃	-	-	-	-	-	-	-	-	-	-	-	-	-	-	-	-	-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	-	-	-	-	-	-	-	1	33.3	2	8.3	2	66.7	-	-	2	28.6	1	16.7
	고용주	-	-	-	-	-	-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소계	-	-	-	-	-	-	-	-	1	33.3	2	8.3	2	66.7	-	-	2	28.6	1	16.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4	66.7	1	100.0	1	33.3	2	8.3	-	-	-	-	3	42.9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	-	-	1	14.3	-	-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2	33.3	-	-	-	-	-	-	-	-	-	-	-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	-	-	-	-	-	-	-	-	-	-	-	-	-	-	-	3	50.0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	-	-	-	-	-	-	-	1	33.3	-	-	-	-	-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소계	-	-	-	-	6	100.0	1	100.0	1	33.3	2	8.3	1	33.3	-	-	4	57.1	3	50.0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	-	-	-	-	-	-	-	-	14	58.3	-	-	-	-	-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1	14.3	-	-	-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1	16.7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6	25.0	-	-	-	-	-	-	-	-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20	83.3	-	-	-	-	1	14.3	1	16.7
본인		-	-	-	-	-	-	-	-	-	-	-	-	-	-	-	-	-	-	-	-
파악 안 됨		-	-	-	-	-	-	-	-	-	-	-	-	-	-	-	-	-	-	-	-
계		-	-	-	-	6	100.0	1	100.0	3	100.0	24	100.0	3	100.0	-	-	7	100.0	6	100.0

구분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 시설		미신고 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파악 안 됨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	-	-	-	-	-	-	2	2.4	4	4.9	-	-	113	7.8
	부	-	-	-	-	-	-	-	-	2	2.4	3	3.7	-	-	150	10.4
	모	-	-	-	-	-	-	-	-	-	-	2	2.4	1	8.3	115	7.9
	조부모	-	-	-	-	-	-	-	-	1	1.2	-	-	-	-	12	0.8
	자녀	-	-	-	-	-	-	-	-	-	-	1	1.2	-	-	38	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	-	-	-	2	2.4	1	1.2	1	8.3	76	5.2
	그 외 친척	-	-	-	-	-	-	-	-	-	-	1	1.2	1	8.3	47	3.2
	소계	-	-	-	-	-	-	-	-	7	8.5	12	14.6	3	25.0	551	38.0
타인	동거인	1	12.5	-	-	-	-	-	-	-	-	-	-	-	-	45	3.1
	이웃	1	12.5	-	-	-	-	-	-	5	6.1	8	9.8	-	-	36	2.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	12.5	5	100.0	1	100.0	29	70.7	38	46.3	32	39.0	5	41.7	328	22.6
	고용주	-	-	-	-	-	-	-	-	3	3.7	-	-	-	-	34	2.3
	모르는 사람	-	-	-	-	-	-	11	26.8	25	30.5	23	28.0	4	33.3	99	6.8
	소계	3	37.5	5	100.0	1	100.0	40	97.6	71	86.6	63	76.8	9	75.0	542	37.4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	37.5	-	-	-	-	-	-	-	-	1	1.2	-	-	228	15.7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	-	-	-	-	-	-	-	-	-	1	1.2	-	-	4	0.3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	-	-	-	-	-	1	1.2	3	3.7	-	-	25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6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	2	0.1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	-	-	-	-	-	-	-	-	-	-	-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	-	-	-	1	1.2	-	-	-	-	24	1.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	-	-	-	-	-	-	-	-	-	-	-	4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2	0.1
	소계	3	37.5	-	-	-	-	-	-	2	2.4	5	6.1	-	-	298	20.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25.0	-	-	-	-	-	-	1	1.2	-	-	-	-	3	0.2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3	0.2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19	1.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1	0.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1	1.2	-	-	-	-	4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1	2.4	-	-	1	1.2	-	-	10	0.7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일반공무원	-	-	-	-	-	-	-	-	-	-	-	-	-	-	-	-
	소계	2	25.0	-	-	-	-	1	2.4	2	2.4	1	1.2	-	-	40	2.8
본인		-	-	-	-	-	-	-	-	-	-	-	-	-	-	1	0.1
파악 안 됨		-	-	-	-	-	-	-	-	-	-	1	1.2	-	-	17	1.2
계		8	100.0	5	100.0	1	100.0	41	100.0	82	100.0	82	100.0	12	100.0	1,449	100.0

[표 4-22]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1,449건의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이 475건(72.9%)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부(父) 128건(19.6%), 배우자 103건(15.8%), 모(母) 101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16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의 경우 타인이 73건(68.2%)으로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0건(46.7%), 동거인 13건(12.1%), 고용주 4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의 경우도 타인이 71건(86.6%)으로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8건(46.3%), 모르는 사람 25건(30.5%)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가 25건(52.1%)으로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초·중등학교 종사자가 23건(47.9%)으로 가장 높았다.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학대사례 2,062건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지속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3개월 미만으로 확인된다. 특히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3개월 미만 건수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발생한 피해가 신고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방임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에 발견되지 않을 시 5~10년 미만의 장기간에 걸친 피해를 입은 뒤 신고접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3]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360	52.0	215	39.3	168	64.6	79	20.6	5	100.0	30	17.2	857	41.6
3~6개월 미만	88	12.7	76	13.9	39	15.0	43	11.2	-	-	34	19.5	280	13.6
6~12개월 미만	58	8.4	64	11.7	14	5.4	51	13.3	-	-	18	10.3	205	9.9
1~3년 미만	64	9.2	60	11.0	20	7.7	85	22.1	-	-	21	12.1	250	12.1
3~5년 미만	32	4.6	35	6.4	4	1.5	32	8.3	-	-	15	8.6	118	5.7
5~10년 미만	36	5.2	54	9.9	5	1.9	57	14.8	-	-	37	21.3	189	9.2
10년 이상	54	7.8	43	7.9	10	3.8	37	9.6	-	-	19	10.9	163	7.9
계	692	100.0	547	100.0	260	100.0	384	100.0	5	100.0	174	100.0	2,062	100.0

4. 응급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라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의료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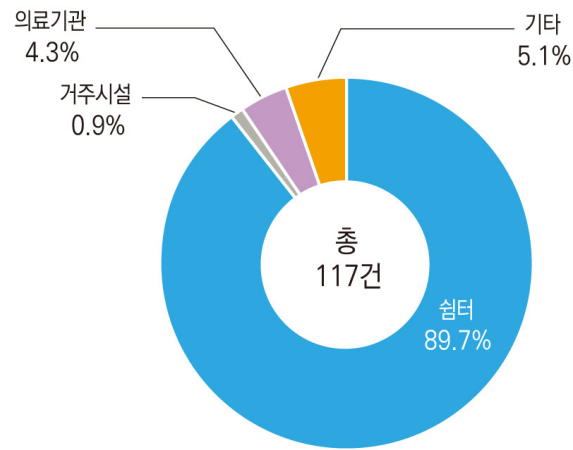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외 거주시설, 의료기관 및 기타의 장소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경우 원형 등의 문제로 보호가 어려운 때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에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요청한다. 또한 자립홈,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등 자립을 위한 시설이나 가족 및 친인척의 집과 같은 장소에 보호를 요청한다. 그 외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면 사회복지시설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117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대사례의 8.1%에 해당한다. 응급조치를 실시한 117건을 살펴보면, 쉼터 이용이 105건(89.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장소 동행 6건(5.1%), 의료기관 연계 5건(4.3%), 거주시설 입소 1건(0.9%) 등의 순이었다.

[표 4-24]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105	1	5	6	117
89.7	0.9	4.3	5.1	100.0

[그림 4-18]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다.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16,514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피해자 및 가족, 관련자 등에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10,823회(65.5%)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2,369회(14.3%), 복지지원 1,349회(8.2%)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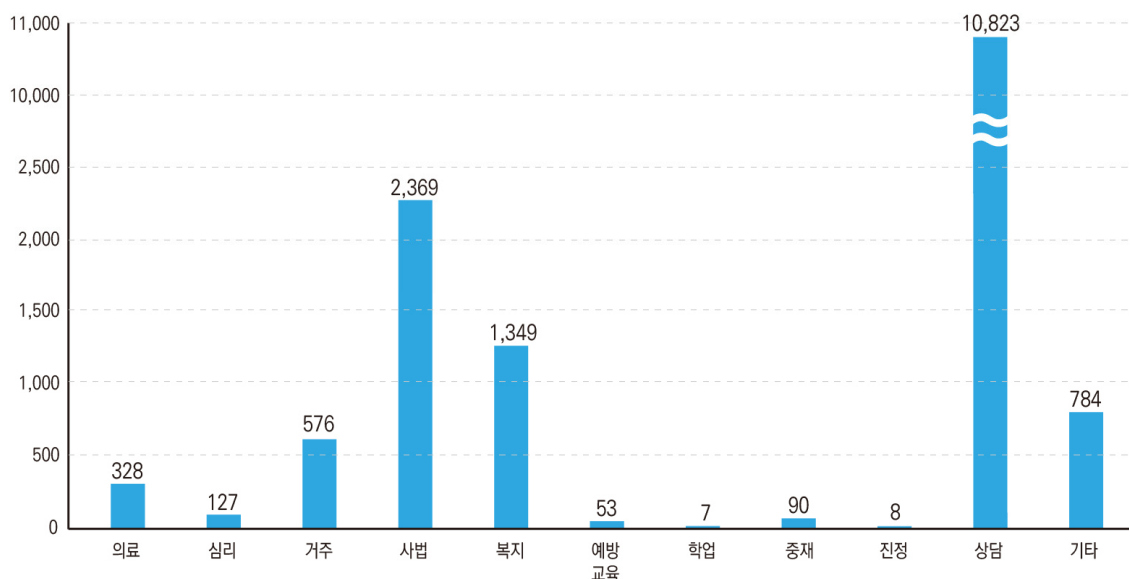
[표 4-25]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⁹⁾	계
328	127	576	2,369	1,349	53	7	90	8	10,823	784	16,514
2.0	0.8	3.5	14.3	8.2	0.3	0.0	0.5	0.0	65.5	4.7	100.0

[그림 4-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9)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상담, 중재, 진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지원 업무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정보검색,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이 해당함.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1)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의 치료, 피해의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지원 328회 중 검진 및 치료 동행, 서류 작성 및 제출, 유관기관과의 협의, 의료지원 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을 지원하는 기타지원이 196회(59.8%) 실시되었으며, 검진·진단 94회(28.7%), 통원치료 23회(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5	94	23	10	196	328
1.5	28.7	7.0	3.0	59.8	100.0

2) 심리지원

심리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지원이다. 심리지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연계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리지원 127회 중 동행, 서류 작성 및 제출, 전문가와 협의, 심리지원 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을 지원하는 기타지원 66회(52.0%),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56회(44.1%)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심리평가 및 진단지원 5회(3.9%) 실시하였다.

[표 4-27]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5	56	66	127
3.9	44.1	52.0	100.0

3) 거주지원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지원으로 쉼터 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이 있다. 거주지원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지원 576회 중 동행, 서류 작성 및 제출, 거주지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거주지원 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의 기타지원이 416회(72.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쉼터 등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응급보호 107회(18.6%), 단기거주지원(재가) 24회(4.2%), 장기거주지원(재가) 17회(3.0%), 단기거주지원(시설) 8회(1.4%), 장기거주지원(시설) 4회(0.7%)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표 4-28]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107	24	8	17	4	416	576
18.6	4.2	1.4	3.0	0.7	72.2	100.0

4) 사법지원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고발, 고소대리, 수사 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등이 있다. 사법지원은 주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내부에 구성된 법률지원단이나 협력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연계 및 자문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사법지원은 2,369회 실시하였으며, 사법지원 동행, 서류 작성 및 제출, 사법지원 관련자와의 협의, 사법지원 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의 기타지원이 1,644회(69.4%), 절차지원 477회(20.1%), 법률상담 93회(3.9%), 고발 75회(3.2%), 수사의뢰 33회(1.4%), 고소대리 32회(1.4%)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4-29]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75	32	33	93	477	3	6	6	1,644	2,369
3.2	1.4	1.4	3.9	20.1	0.1	0.3	0.3	69.4	100.0

5) 복지지원

복지지원은 장애인 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지원 1,349회 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거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보검색, 각종 서류 작성 및 신청, 유관기관과의 협의, 동행, 진행경과 모니터링하는 기타지원이 932회(69.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공공복지자원 연계 199회(14.8%), 민간복지자원 연계 192회(14.2%), 장애인 등록 26회(1.9%)를 실시하였다.

[표 4-30]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26	199	192	932	1,349
1.9	14.8	14.2	69.1	100.0

6) 예방교육지원

예방교육지원은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예방교육지원 53회 중 피해자 대상 교육은 30회(56.6%), 행위자 대상 교육 20회(37.7%), 관련자 대상 교육 3회(5.7%)를 실시하였다.

[표 4-31]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30	-	20	3	53
56.6	-	37.7	5.7	100.0

7) 학업지원

학업지원은 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으로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학업지원은 7회(100.0%) 실시하였다.

[표 4-32]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7	-	7
100.0	-	100.0

8) 중재지원

중재란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중재지원 90회 중 중재 횟수는 48회(53.3%)이며, 중재를 위한 동행, 중재지원 관련자와의 협의, 중재지원 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을 지원하는 기타지원은 42회(46.7%)로 나타났다.

[표 4-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48	42	90
53.3	46.7	100.0

9) 진정지원

진정은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이뤄진다.

진정지원은 8회 실시했으며,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5회(62.5%), 동행, 진정과정 협의, 진행경과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의 기타지원은 3회(37.5%)로 나타났다.

[표 4-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5	-	-	3	8
62.5	-	-	37.5	100.0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4년 학대사례(1,449건)와 2024년 이전 학대사례(836건) 총 2,285건에 대해 총 26,142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사례별로 평균 11.4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23,631회, 사례별 평균 11.8회)와 비교하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0.6% 증가하였고,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3.4% 감소하였다. 2024년 학대의심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8.2회)와 비교하면,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3.2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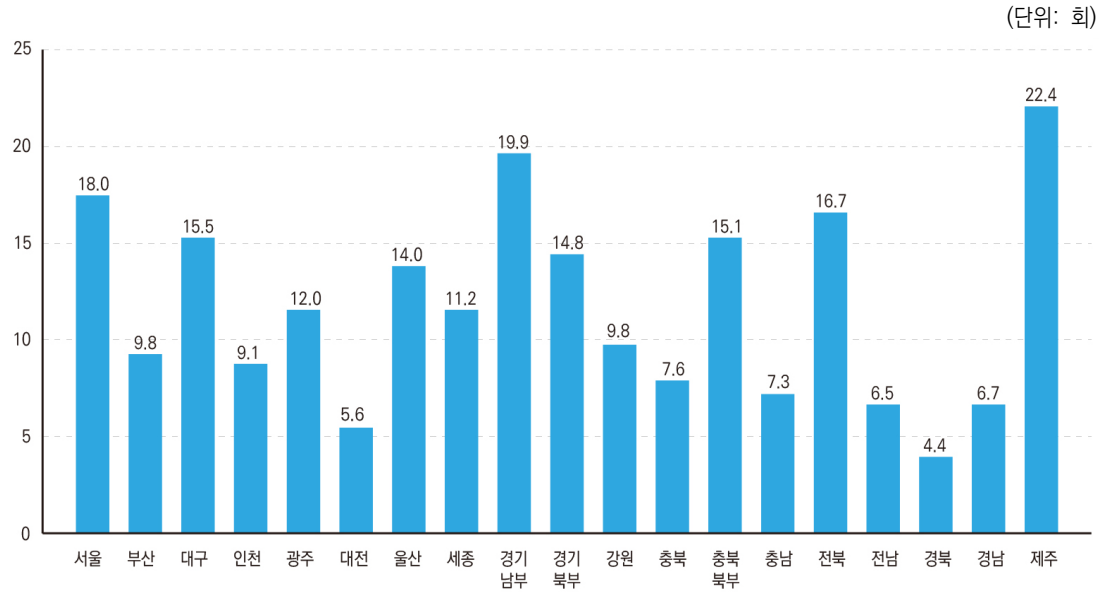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례별 평균 22.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8.0회, 경기도 17.6회, 전북특별자치도 16.7회 등의 순이었다.

[표 4-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계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37	754	75	1,259	112	2,013	18.0
부산		67	471	66	826	133	1,297	9.8
대구		30	487	35	521	65	1,008	15.5
인천		25	121	36	436	61	557	9.1
광주		32	260	42	631	74	891	12.0
대전		37	175	56	343	93	518	5.6
울산		23	261	97	1,415	120	1,676	14.0
세종		32	305	21	289	53	594	11.2
경기	경기 남부	56	1,596	132	2,148	188	3,744	19.9
	경기 북부	41	820	116	1,497	157	2,317	14.8
	소계	97	2,416	248	3,645	345	6,061	17.6
강원		78	603	91	1,055	169	1,658	9.8
충북	충북	25	283	127	874	152	1,157	7.6
	충북 북부	13	214	62	921	75	1,135	15.1
	소계	38	497	189	1,795	227	2,292	10.1
충남		29	252	73	492	102	744	7.3
전북		32	454	38	715	70	1,169	16.7
전남		42	334	86	494	128	828	6.5
경북		40	196	49	198	89	394	4.4
경남		168	1,028	182	1,305	350	2,333	6.7
제주		29	918	65	1,191	94	2,109	22.4
계		836	9,532	1,449	16,610	2,285	26,142	11.4

[그림 4-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학대사례 1,449건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된 사례는 572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39.5%로 나타났고,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한다. 당해 연도 사례 종결율은 2023년 49.2%에서 2024년 39.5%로 약 10%가량 감소했으며, 2024년 학대의심사례의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55.8%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학대사례의 경우 피해자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등의 피해회복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사례종결율이 낮아진 사유는 신고접수, 학대의심사례, 전년도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의 증가 및 누적 대비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종사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표 4-36]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사례(A)	당해 연도 종결사례(B)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C=B/A*100)
1,449	572	39.5

7.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사망, 수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타 지역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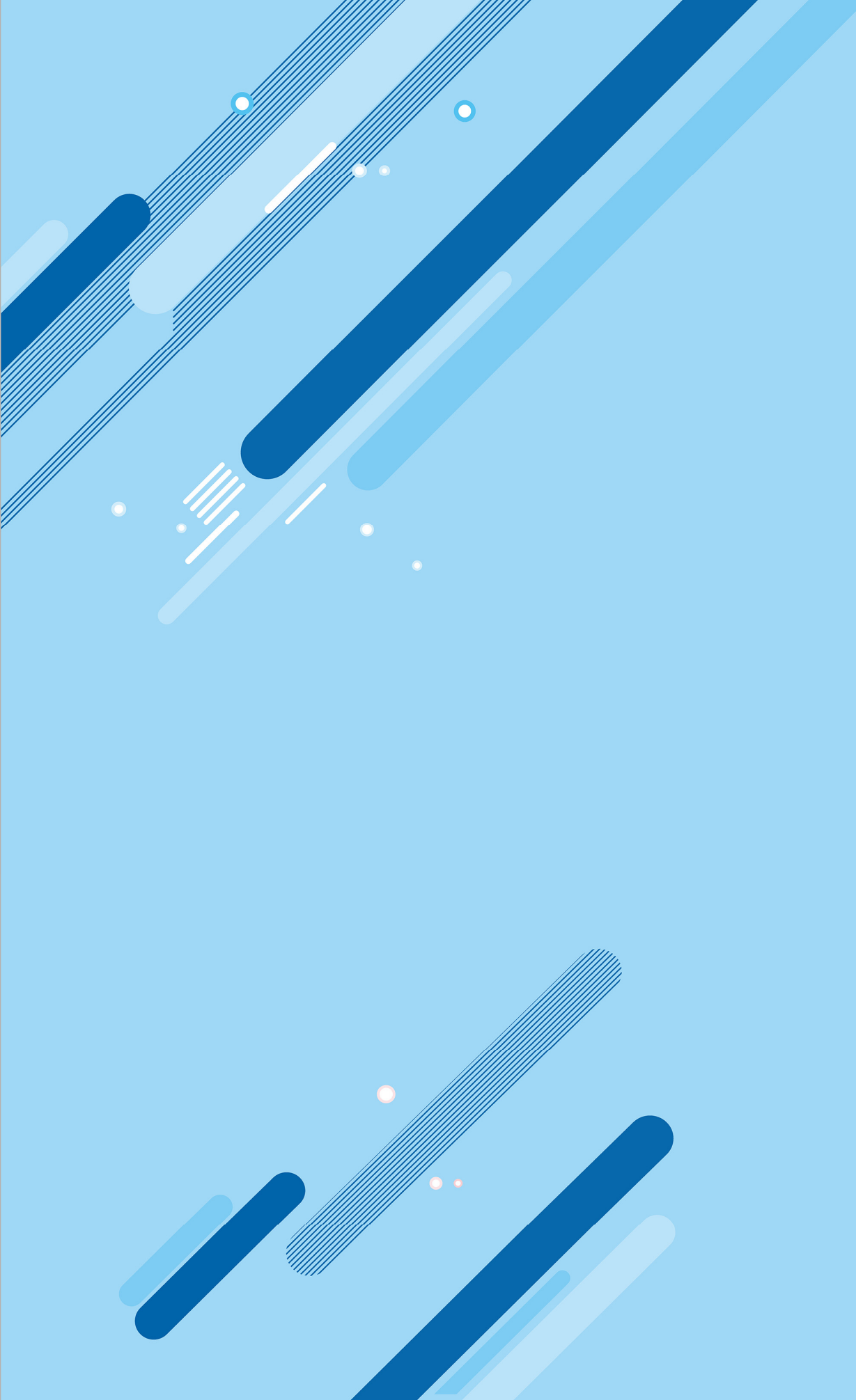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2024년 종결된 학대사례 572건 중 345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은 60.3%로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 횟수는 1,219회로 사례별 평균 3.5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사후모니터링

(단위: 건, %, 회)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345	60.3	1,219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5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 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5. 재학대 사례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아동 학대,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 및 이용하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재학대를 분석하였다.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31,356명¹⁰⁾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280,672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0.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24년 전체 학대사례의 1,056건¹¹⁾(72.9%)으로 전년도 1,067건보다 약 1.0% 감소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4.12. 말 기준

1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유형 또는 부장애유형이 모두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주장유형은 지적장애 937건, 자폐성장애 93건이며, 부장애유형은 지적장애 26건이었음.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별 학대사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78건(16.9%)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135건(12.8%), 충청북도 125건(11.8%), 전라남도 75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63건(9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건,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50	5.2	4	4.3	54	5.1
부산		50	5.2	2	2.2	52	4.9
대구		23	2.4	2	2.2	25	2.4
인천		26	2.7	1	1.1	27	2.6
광주		27	2.8	1	1.1	28	2.7
대전		37	3.8	4	4.3	41	3.9
울산		70	7.3	3	3.2	73	6.9
세종		12	1.2	1	1.1	13	1.2
경기	경기남부	86	8.9	14	15.1	100	9.5
	경기북부	70	7.3	8	8.6	78	7.4
	소계	156	16.2	22	23.7	178	16.9
강원		69	7.2	2	2.2	71	6.7
충북	충북	81	8.4	3	3.2	84	8.0
	충북북부	39	4.0	2	2.2	41	3.9
	소계	120	12.5	5	5.4	125	11.8
충남		44	4.6	5	5.4	49	4.6
전북		18	1.9	3	3.2	21	2.0
전남		67	7.0	8	8.6	75	7.1
경북		33	3.4	1	1.1	34	3.2
경남		109	11.3	26	28.0	135	12.8
제주		52	5.4	3	3.2	55	5.2
계		963	100.0	93	100.0	1,056	100.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339건(32.1%),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717건(67.9%)이었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가 161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230건(21.8%)으로 가장 많이 신고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132건(12.5%)으로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피해장애인 본인신고율 20.2%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학대피해자 10명 중 발달장애인이 7명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본인이 학대 피해를 인식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	3.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1	15.2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6	3.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0.4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	0.2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3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58	5.5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7	1.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	0.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	1.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	0.1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1	0.1
비신고의무자	소계	339	32.1
	본인	132	12.5
	배우자	10	0.9
	부모	76	7.2
	자녀	7	0.7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7	1.6
	그 외 친척	27	2.6
	경찰공무원	63	6.0
	일반공무원	31	2.9
	공공기관 종사자	4	0.4
	교육기관 종사자	6	0.6
	의료기관 종사자	2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30	21.8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0.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4	0.4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28	2.7
	타인	68	6.4
	파악 안 됨	10	0.9
	소계	717	67.9
계		1,056	100.0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 성별 및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54건(52.5%), 남성이 502건(47.5%)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89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가 259건(24.5%), 30대가 223건(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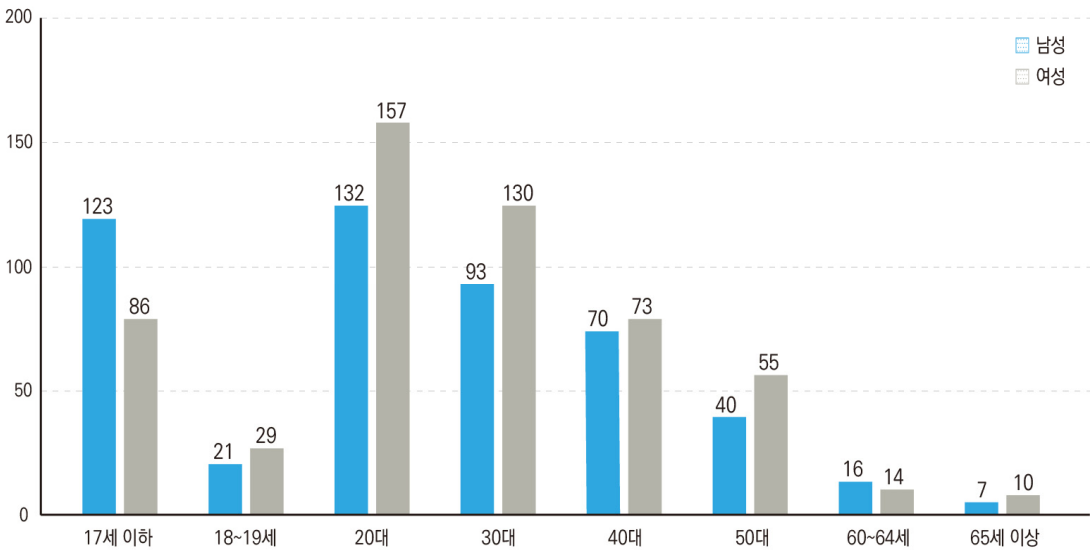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10대 이하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60~64세		65세 이상			
남성	123	11.6	21	2.0	132	12.5	93	8.8	70	6.6	40	3.8	16	1.5	7	0.7	502	47.5
여성	86	8.1	29	2.7	157	14.9	130	12.3	73	6.9	55	5.2	14	1.3	10	0.9	554	52.5
계	209	19.8	50	4.7	289	27.4	223	21.1	143	13.5	95	9.0	30	2.8	17	1.6	1,056	100.0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2)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 867건(82.1%), 시설 189건(17.9%)으로 나타났다.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867	82.1	189	17.9	1,056	100.0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70건(63.4%), 비수급자 364건(34.5%), 차상위 계층 22건(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자	계
670	22	364	1,056
63.4	2.1	34.5	100.0

4) 재학대 사례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84.7%(160건)로 나타났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재학대 사례(112건)와 비교하면 42.9% 증가했다.

[표 5-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 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	학대사례 중 재학대		재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1,449	189	13.0	160	84.7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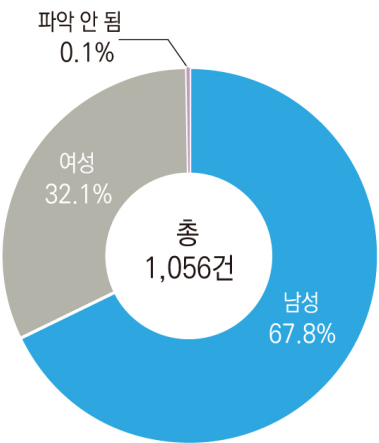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의 행위자는 남성이 716건(67.8%)으로 여성 339건(32.1%)보다 약 2.1배 높게 나타났다.

[표 5-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716	67.8	339	32.1	1	0.1	1,056	100.0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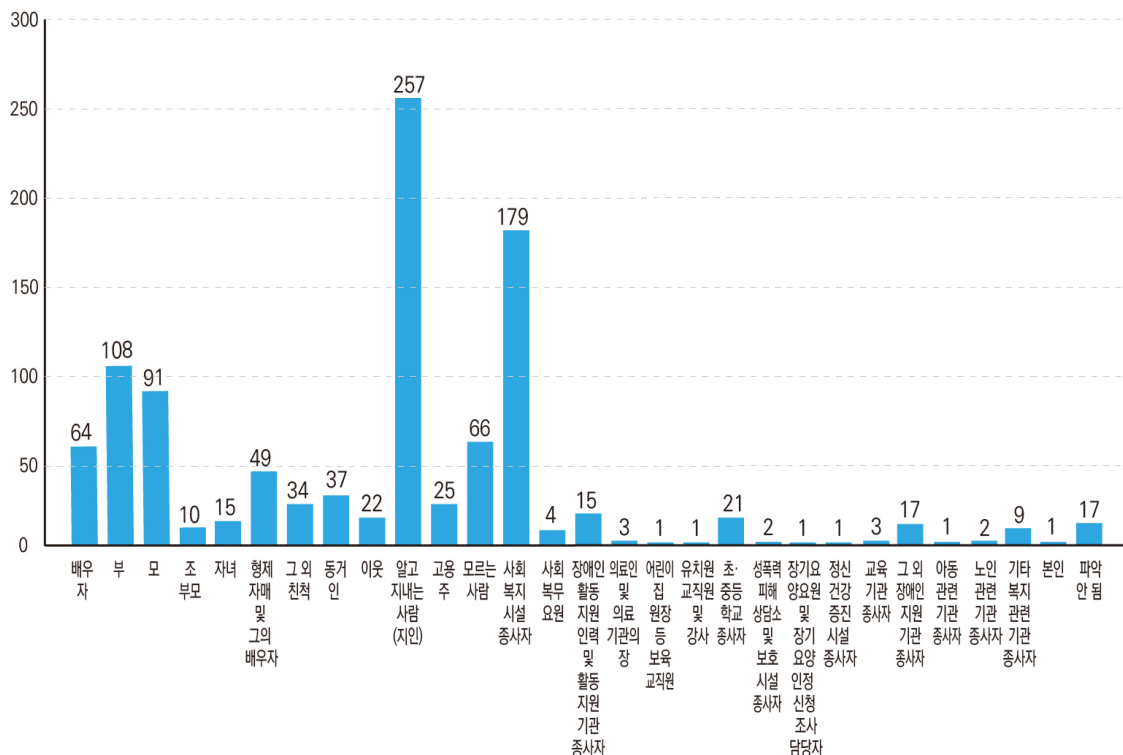
2) 피해 발달장애인과 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타인 407건(38.5%), 가족 및 친인척 371건(35.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28건(21.6%),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32건(3.0%), 파악 안 됨 17건(1.6%), 본인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356건)는 4.2% 증가했고, 타인에 의한 학대(421건)는 3.3% 감소했다.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57건(2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9건(17.0%), 부(父) 108건(10.2%), 모(母) 91건(8.6%), 모르는 사람 66건(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220건)는 16.8% 증가했으며, 모(母)에 의한 학대(72건)는 26.4% 증가했다.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표 5-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64	6.1
	부	108	10.2
	모	91	8.6
	조부모	10	0.9
	자녀	15	1.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9	4.6
	그 외 친척	34	3.2
	소계	371	35.1
타인	동거인	37	3.5
	이웃	22	2.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57	24.3
	고용주	25	2.4
	모르는 사람	66	6.3
	소계	407	38.5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9	17.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4	0.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5	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0.3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21	2.0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0.2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1	0.1
	소계	228	21.6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7	1.6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1	0.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2	0.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9	0.9
	소계	32	3.0
본인		1	0.1
파악 안 됨		17	1.6
계		1,0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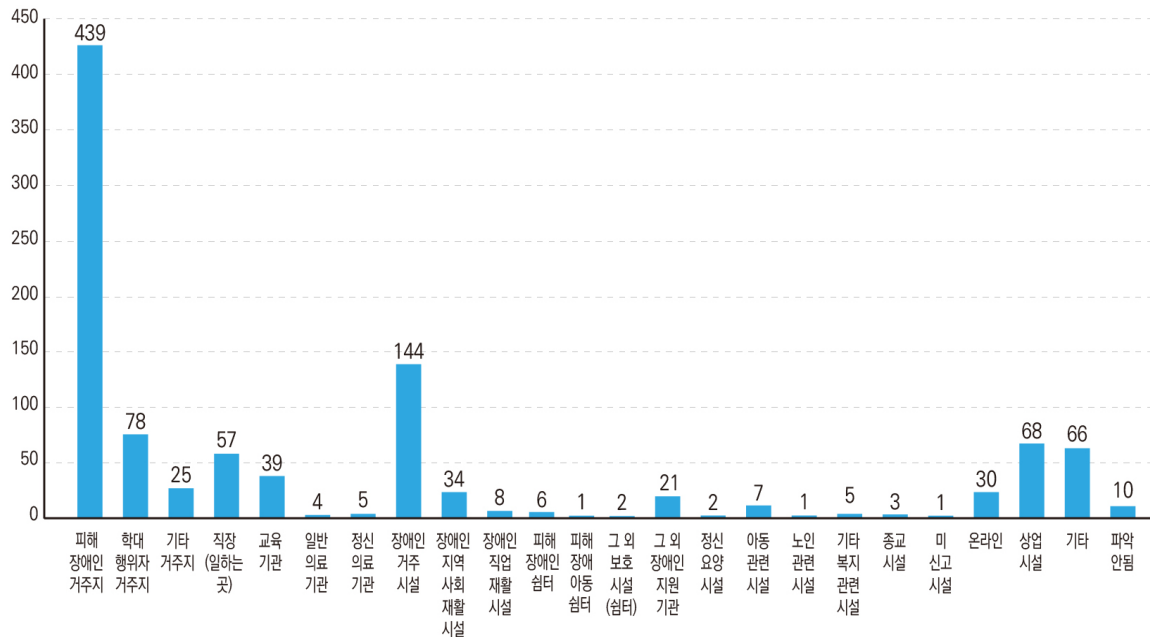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는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439건(41.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44건(13.6%), 학대행위자 거주지 78건(7.4%) 등의 순이었다.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전체 학대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였고, 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439	41.6
학대행위자 거주지		78	7.4
기타 거주지		25	2.4
직장(일하는 곳)		57	5.4
교육기관		39	3.7
일반 의료기관		4	0.4
정신 의료기관		5	0.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44	13.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4	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0.8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피해장애인쉼터	6	0.6
	피해장애아동쉼터	1	0.1
	소계	193	18.3
그 외 보호시설(쉼터)		2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1	2.0
정신요양시설		2	0.2
아동관련시설		7	0.7
노인관련시설		1	0.1
기타 복지관련시설		5	0.5
종교시설		3	0.3
미신고시설		1	0.1
온라인		30	2.8
상업시설		68	6.4
기타		66	6.3
파악 안 됨		10	0.9
계		1,056	100.0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 130건(12.3%), 10년 이상의 경우도 60건(5.7%)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는 1~2회 이하가 390건(36.9%), 10회 이상 275건(26.0%), 5회 미만 164건(1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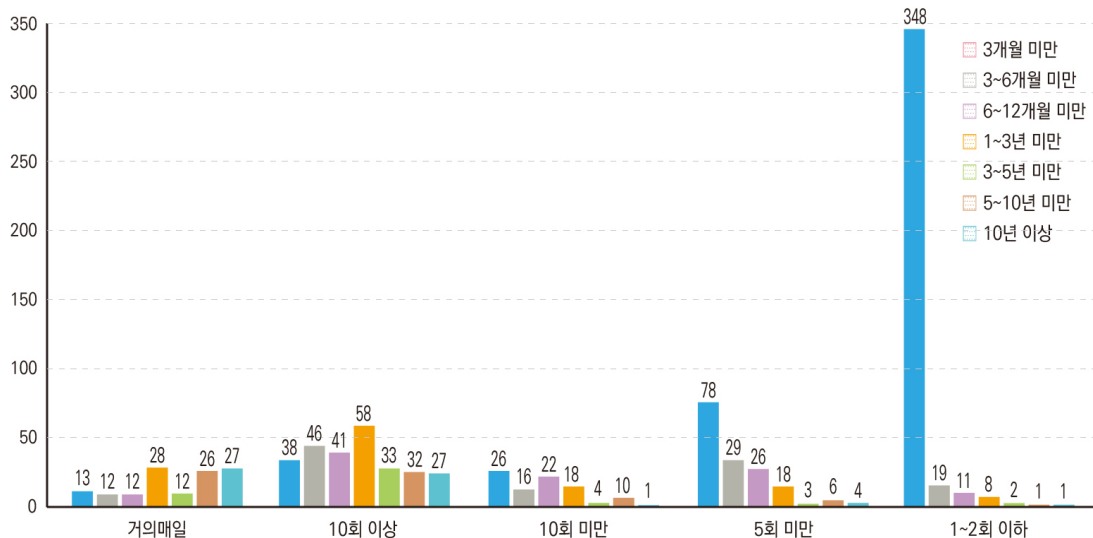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이하		계	
지 속 기 간	3개월 미만	13	10.0	38	13.8	26	26.8	78	47.6	348	89.2	503	47.6
	3~6개월 미만	12	9.2	46	16.7	16	16.5	29	17.7	19	4.9	122	11.6
	6~12개월 미만	12	9.2	41	14.9	22	22.7	26	15.9	11	2.8	112	10.6
	1~3년 미만	28	21.5	58	21.1	18	18.6	18	11.0	8	2.1	130	12.3
	3~5년 미만	12	9.2	33	12.0	4	4.1	3	1.8	2	0.5	54	5.1
	5~10년 미만	26	20.0	32	11.6	10	10.3	6	3.7	1	0.3	75	7.1
	10년 이상	27	20.8	27	9.8	1	1.0	4	2.4	1	0.3	60	5.7
	계	130	100.0	275	100.0	97	100.0	164	100.0	390	100.0	1,056	100.0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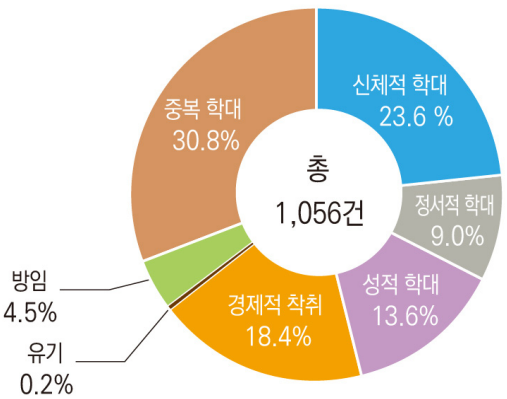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은 중복 학대가 325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9건(23.6%), 경제적 착취 194건(18.4%), 성적 학대 144건(13.6%), 정서적 학대 95건(9.0%), 방임 47건(4.5%), 유기 2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이 경제적 착취 277건(26.0%), 중복 학대 271건(25.4%), 신체적 학대 207건(19.4%), 성적 학대 167건(15.7%), 정서적 학대 93건(8.7%), 방임 52건(4.9%), 유기 0건(0.0%)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증가와 경제적 착취의 감소가 눈에 띈다.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49	23.6
정서적 학대	95	9.0
성적 학대	144	13.6
경제적 착취	194	18.4
유기	2	0.2
방임	47	4.5
중복 학대	325	30.8
계	1,056	100.0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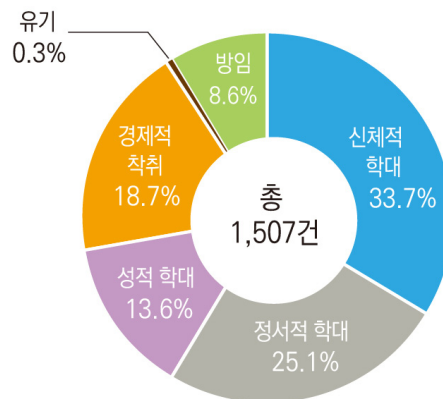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05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1,50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508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378건(25.1%), 경제적 착취 282건(18.7%), 성적 학대 205건(13.6%), 방임 129건(8.6%), 유기 5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08	33.7
정서적 학대	378	25.1
성적 학대	205	13.6
경제적 착취	282	18.7
유기	5	0.3
방임	129	8.6
계	1,507	100.0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507건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남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피해가 더 많았고, 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 유기 피해가 더 많았다.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257	50.6	192	50.8	47	22.9	150	53.2	2	40.0	89	69.0	737	48.9
여성	251	49.4	186	49.2	158	77.1	132	46.8	3	60.0	40	31.0	770	51.1
계	508	100.0	378	100.0	205	100.0	282	100.0	5	100.0	129	100.0	1,507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로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 20대 순으로 높았고 정서적 학대 역시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 20대 순이었으며, 성적 학대는 20대,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 순으로 높았다. 경제적 착취는 20대, 30대 순으로 높았으며, 유기는 20대, 30대·50대, 방임은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0대 이하	17세 이하	124	24.4	86	22.8	44	21.5	2	0.7	-	-	48	37.2	304	20.2
	18~19세	25	4.9	18	4.8	14	6.8	4	1.4	-	-	5	3.9	66	4.4
20대(20~29세)		122	24.0	91	24.1	59	28.8	96	34.0	3	60.0	21	16.3	392	26.0
30대(30~39세)		110	21.7	84	22.2	50	24.4	63	22.3	1	20.0	22	17.1	330	21.9
40대(40~49세)		64	12.6	59	15.6	27	13.2	49	17.4	-	-	15	11.6	214	14.2
50대(50~59세)		45	8.9	30	7.9	7	3.4	42	14.9	1	20.0	10	7.8	135	9.0
60대 이상	60~64세	13	2.6	6	1.6	3	1.5	15	5.3	-	-	4	3.1	41	2.7
	65세 이상	5	1.0	4	1.1	1	0.5	11	3.9	-	-	4	3.1	25	1.7
계		508	100.0	378	100.0	205	100.0	282	100.0	5	100.0	129	100.0	1,507	100.0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을 학대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착취,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가 3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방임의 경우 3~6개월 미만, 5~10년 미만 순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264	52.0	149	39.4	126	61.5	65	23.0	5	100.0	23	17.8	632	41.9
3~6개월 미만	70	13.8	59	15.6	34	16.6	36	12.8	-	-	32	24.8	231	15.3
6~12개월 미만	48	9.4	50	13.2	13	6.3	41	14.5	-	-	13	10.1	165	10.9
1~3년 미만	43	8.5	39	10.3	19	9.3	67	23.8	-	-	14	10.9	182	12.1
3~5년 미만	23	4.5	25	6.6	3	1.5	19	6.7	-	-	12	9.3	82	5.4
5~10년 미만	30	5.9	28	7.4	5	2.4	35	12.4	-	-	26	20.2	124	8.2
10년 이상	30	5.9	28	7.4	5	2.4	19	6.7	-	-	9	7.0	91	6.0
계	508	100.0	378	100.0	205	100.0	282	100.0	5	100.0	129	100.0	1,507	100.0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서 학대행위자는 타인,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父), 모(母), 배우자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239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3건(20.3%), 부(父) 75건(14.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6건(13.0%), 배우자 57건(11.2%)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도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134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5건(22.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8건(18.0%), 부(父) 45건(11.9%), 모(母) 32건(8.5%)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타인(133건, 64.9%)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96건(46.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건(13.7%), 모르는 사람 24건(11.7%), 파악 안 됨 13건(6.3%)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타인(169건, 59.9%)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01건(3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2건(14.9%), 모르는 사람 31건(11.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1건(7.4%) 등의 순이었다. 유기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3건, 60.0%)이 가장 많았다. 방임은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60건, 46.5%)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8건(37.2%), 모(母) 32건(24.8%), 부(父) 13건(10.1%) 등의 순이었다.

[표 5-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7	11.2	24	6.3	3	1.5	6	2.1	-	-	1	0.8	91	6.0
	부	75	14.8	45	11.9	3	1.5	8	2.8	1	20.0	13	10.1	145	9.6
	모	55	10.8	32	8.5	2	1.0	6	2.1	1	20.0	32	24.8	128	8.5
	조부모	8	1.6	4	1.1	-	-	-	-	-	-	1	0.8	13	0.9
	자녀	14	2.8	7	1.9	-	-	1	0.4	1	20.0	-	-	23	1.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0	3.9	15	4.0	5	2.4	21	7.4	-	-	5	3.9	66	4.4
	그 외 친척	10	2.0	7	1.9	8	3.9	17	6.0	-	-	1	0.8	43	2.9
	소계	239	47.0	134	35.4	21	10.2	59	20.9	3	60.0	53	41.1	509	33.8
타인	동거인	20	3.9	9	2.4	5	2.4	13	4.6	1	20.0	-	-	48	3.2
	이웃	6	1.2	6	1.6	6	2.9	5	1.8	-	-	-	-	23	1.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6	13.0	68	18.0	96	46.8	101	35.8	-	-	-	-	331	22.0
	고용주	6	1.2	7	1.9	2	1.0	19	6.7	-	-	-	-	34	2.3
	모르는 사람	7	1.4	13	3.4	24	11.7	31	11.0	-	-	-	-	75	5.0
	소계	105	20.7	103	27.2	133	64.9	169	59.9	1	20.0	-	-	511	33.9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3	20.3	85	22.5	28	13.7	42	14.9	1	20.0	48	37.2	307	20.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	0.8	4	1.1	-	-	-	-	-	-	-	-	8	0.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9	1.8	7	1.9	-	-	4	1.4	-	-	3	2.3	23	1.5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2	-	-	-	-	-	-	-	-	2	1.6	3	0.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2	1	0.3	-	-	-	-	-	-	-	-	2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2	-	-	-	-	-	-	-	-	-	-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13	2.6	15	4.0	1	0.5	-	-	-	-	5	3.9	34	2.3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0.4	2	0.5	2	1.0	-	-	-	-	2	1.6	8	0.5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	-	-	-	1	0.4	-	-	-	-	1	0.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1	0.2	-	-	-	-	-	-	-	-	-	-	1	0.1
	소계	135	26.6	114	30.2	31	15.1	47	16.7	1	20.0	60	46.5	388	25.7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4	-	-	-	-	-	-	-	-	1	0.8	3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8	1.6	5	1.3	6	2.9	2	0.7	-	-	2	1.6	23	1.5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1	0.4	-	-	-	-	1	0.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	-	1	0.5	1	0.4	-	-	-	-	2	0.1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6	1.2	7	1.9	-	-	-	-	-	-	-	-	13	0.9
	소계	16	3.1	12	3.2	7	3.4	4	1.4	-	-	3	2.3	42	2.8
본인		-	-	-	-	-	-	-	-	-	-	1	0.8	1	0.1
파악 안 됨		13	2.6	15	4.0	13	6.3	3	1.1	-	-	12	9.3	56	3.7
계		508	100.0	378	100.0	205	100.0	282	100.0	5	100.0	129	100.0	1,507	100.0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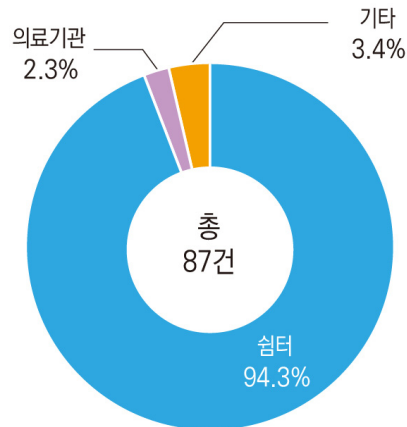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서 총 87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82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시설 0건(0.0%), 의료기관 2건(2.3%), 기타장소는 3건(3.4%)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응급조치 실시 건수(115건)와 비교하여 24.4% 감소했다.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82	-	2	3	87
94.3	-	2.3	3.4	100.0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1,922회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중 상담지원이 7,889회(66.2%)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1,755회(14.7%), 복지지원 890회(7.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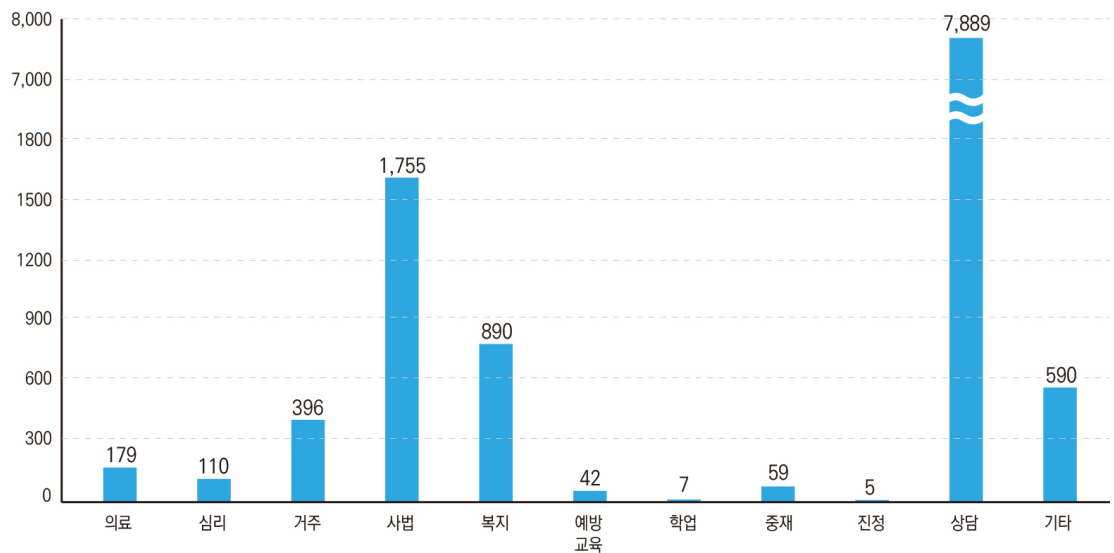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179	110	396	1,755	890	42	7	59	5	7,889	590	11,922
1.5	0.9	3.3	14.7	7.5	0.4	0.1	0.5	0.0	66.2	4.9	100.0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1,755회로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362회(20.6%)로 많았고, 법률상담 65회(3.7%), 고발 55회(3.1%) 등이 많았다.

[표 5-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 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선임	노동청진정	기타	계
55	25	29	65	362	3	6	5	1,205	1,755
3.1	1.4	1.7	3.7	20.6	0.2	0.3	0.3	68.7	100.0

2. 장애아동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구 2,631,356¹²⁾명 중 장애아동은 3.4%(90,070명)이다. 장애아동 학대사례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되면 상호 통보하여 재 신고 및 동일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협조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51건이며,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70건(59.9%), 비학대사례는 113건(25.1%), 잠재위험사례는 36건(8.0%), 기타(조사중, 이관 등) 사례는 32건(7.1%)이었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를 차지하며, 전년도 장애아동 학대신고(452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263건)와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6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41건(15.2%), 울산광역시 23건(8.5%) 등의 순이었다.

[표 5-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경기	서울	3	1.1
	부산	8	3.0
	대구	7	2.6
	인천	3	1.1
	광주	2	0.7
	대전	11	4.1
	울산	23	8.5
	세종	4	1.5
	경기남부	46	17.0
충북	경기북부	14	5.2
	소계	60	22.2
	강원	5	1.9
	충북	28	10.4
	충북북부	13	4.8
	소계	41	15.2
	충남	14	5.2
	전북	3	1.1
	전남	8	3.0
충남	경북	8	3.0
	경남	60	22.2
	제주	10	3.7
	계	270	100.0

12)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4.12.말 기준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1) 성별 및 연령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피해자 성별은 남아 149건(55.2%), 여아 121건(44.8%)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가 89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7세가 58건(21.5%), 초등학생 고학년에 해당하는 10~12세가 55건(20.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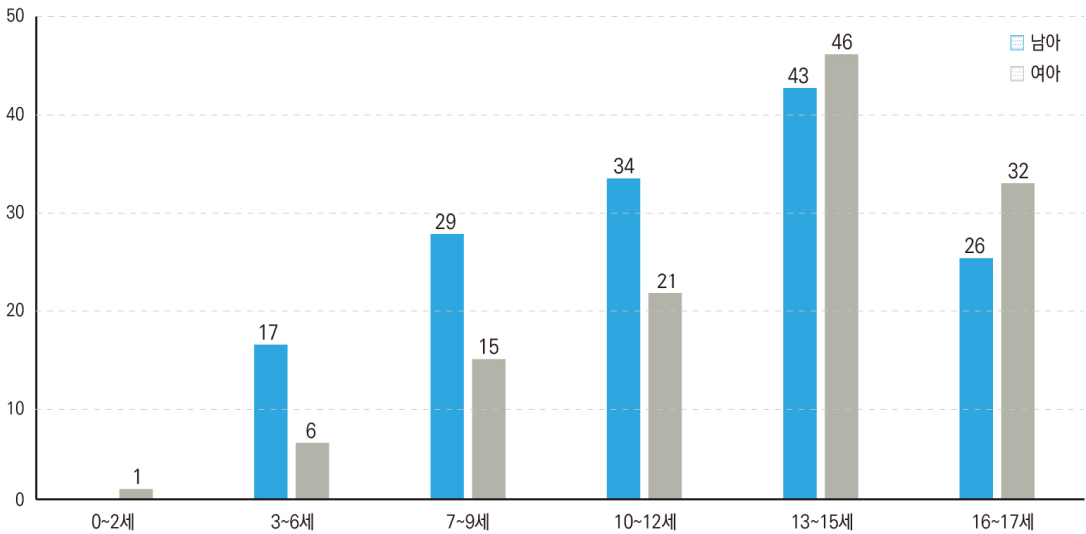
[표 5-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0~2세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아	-	-	17	6.3	29	10.7	34	12.6	43	15.9	26	9.6	149	55.2
여아	1	0.4	6	2.2	15	5.6	21	7.8	46	17.0	32	11.9	121	44.8
계	1	0.4	23	8.5	44	16.3	55	20.4	89	33.0	58	21.5	270	100.0

[그림 5-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2) 장애유형 및 정도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144건(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59건(21.9%), 미등록장애 37건(13.7%), 뇌병변장애 17건(6.3%)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의 비율(21.9%)이 전체 학대사례의 자폐성장애 비율(6.4%)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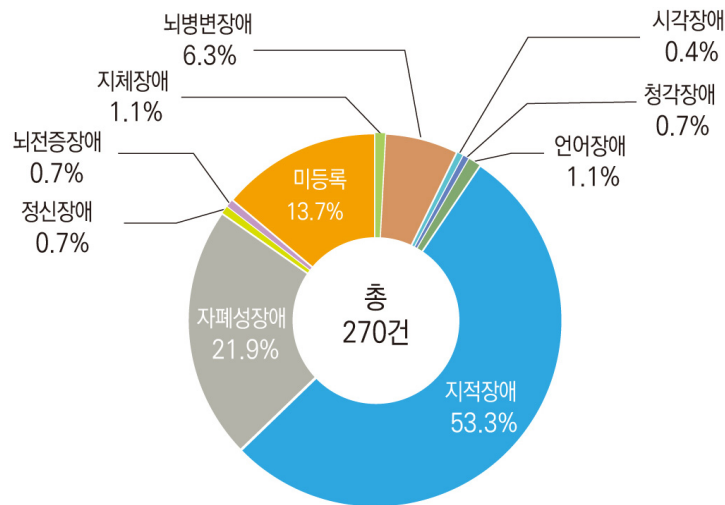
[표 5-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¹³⁾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	1.1
뇌병변장애	17	6.3
시각장애	1	0.4
청각장애	2	0.7
언어장애	3	1.1
안면장애	-	-
지적장애	144	53.3
자폐성장애	59	21.9
정신장애	2	0.7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뇌전증장애	2	0.7
미등록	37	13.7
계	270	100.0

13)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으로 분석함

[그림 5-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피해 장애아동 중 장애 등록이 된 233건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29건(98.3%)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건(1.7%)이었다.

[표 5-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29	98.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1.7
계	233	100.0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피해 장애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7건(50.7%)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비수급자가 127건(47.0%), 차상위 계층은 6건(2.2%)이었다.

[표 5-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자		계	
137	50.7	6	2.2	127	47.0	270	100.0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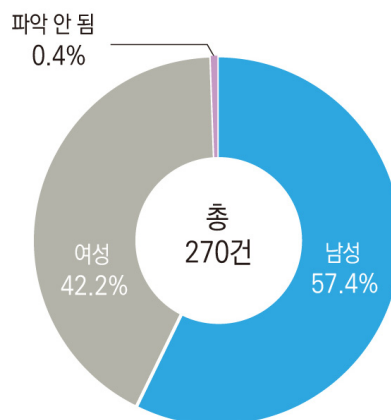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155건(57.4%), 여성 114건(42.2%), 파악 안 됨 1건(0.4%)으로 전체 학대사례(남성 66.9%, 여성 33.1%)와 비교하면 여성행위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155	57.4	114	42.2	1	0.4	270	100.0

[그림 5-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2) 연령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73건(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1건(26.3%), 50대 44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0대 이하 행위자는 32건(11.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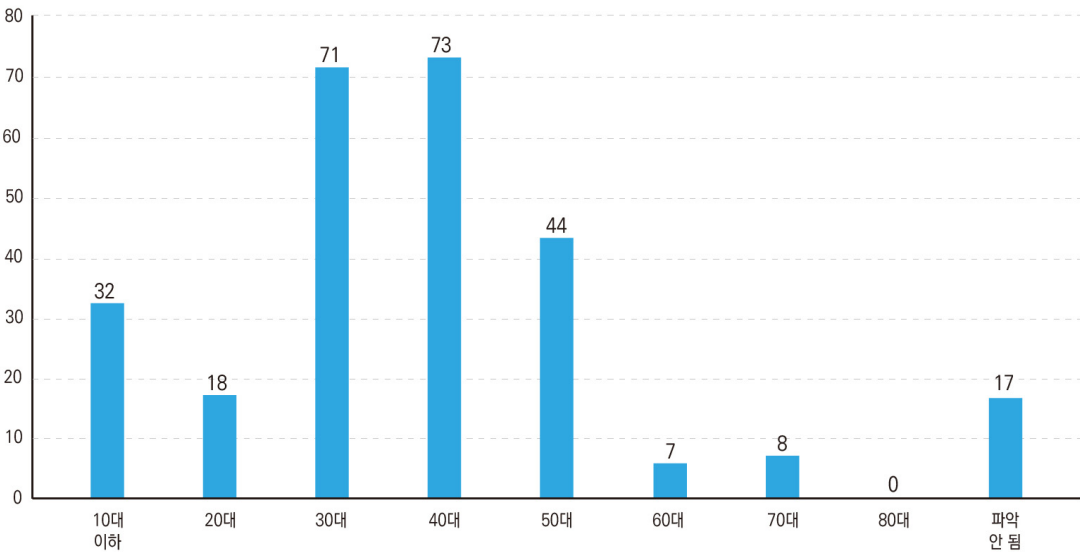
[표 5-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0대 이하(~19세)	32	11.9
20대(20~29세)	18	6.7
30대(30~39세)	71	26.3
40대(40~49세)	73	27.0
50대(50~59세)	44	16.3
60대(60~69세)	7	2.6
70대(70~79세)	8	3.0
80대 이상(80세~)	-	-
파악 안 됨	17	6.3
계	270	100.0

[그림 5-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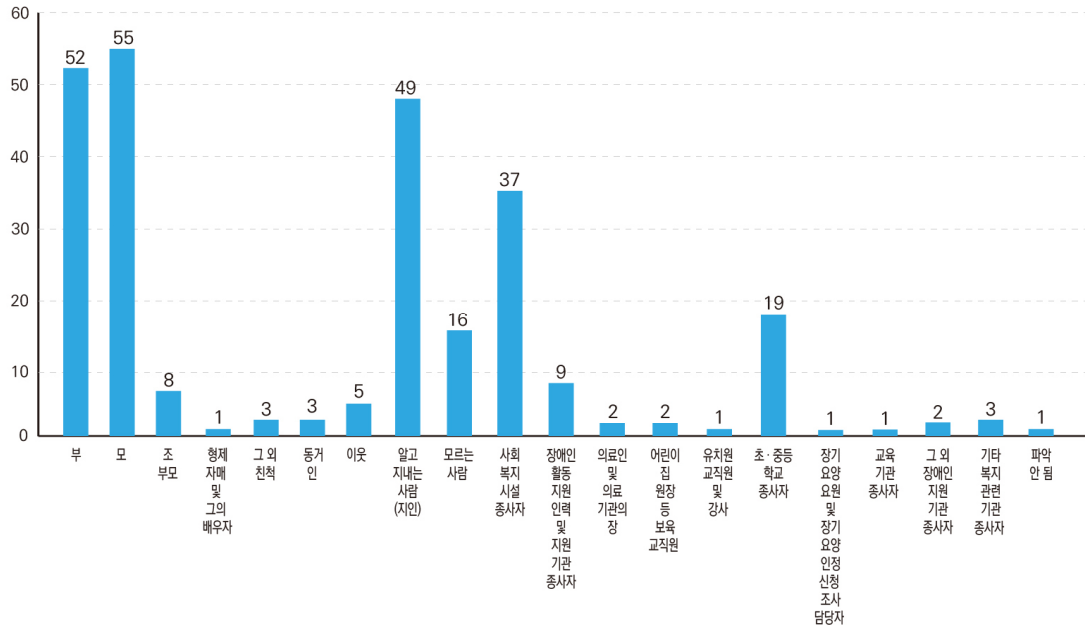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가 107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9건(1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건(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 및 친인척 119건(44.1%), 타인 73건(27.0%),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71건(26.3%),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6건(2.2%) 순이었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도 전체 학대사례와 같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 5-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표 5-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부	52	19.3
	모	55	20.4
	조부모	8	3.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0.4
	그 외 친척	3	1.1
	소계	119	44.1
타인	동거인	3	1.1
	이웃	5	1.9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9	18.1
	모르는 사람	16	5.9
	소계	73	27.0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	13.7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9	3.3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7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0.7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4
	초·중등학교 종사자	19	7.0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4
	소계	71	26.3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	0.7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3	1.1
	소계	6	2.2
파악 안 됨		1	0.4
계		270	100.0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1) 학대 발생장소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127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기관 39건(14.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5건(9.3%), 상업시설 15건(5.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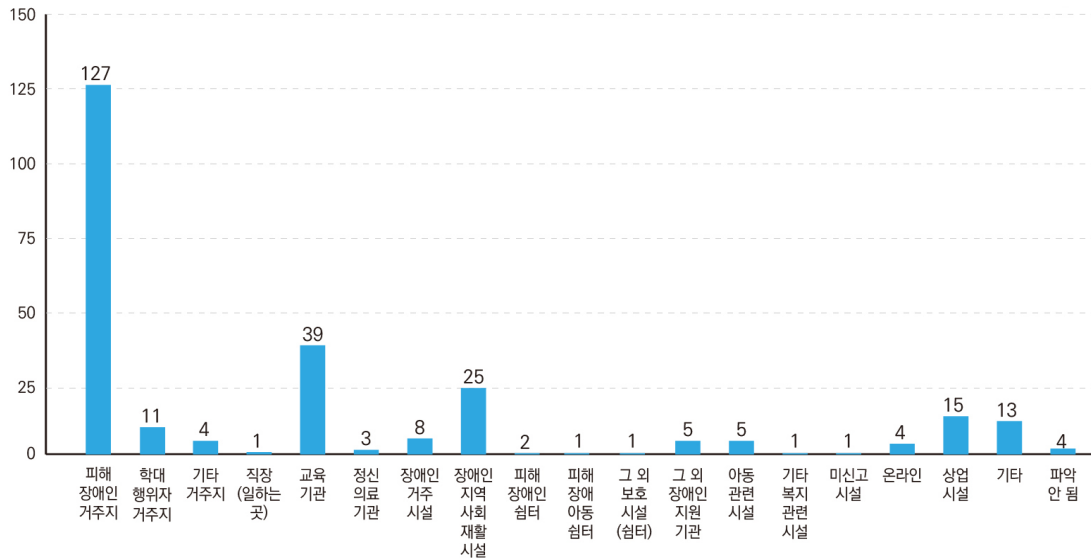
[표 5-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27	47.0
학대행위자 거주지		11	4.1
기타 거주지		4	1.5
직장(일하는 곳)		1	0.4
교육기관		39	14.4
정신 의료기관		3	1.1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8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5	9.3
	피해장애인쉼터	2	0.7
	피해장애아동쉼터	1	0.4
	소계	36	13.3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5	1.9
아동관련시설		5	1.9
기타 복지관련시설		1	0.4
미신고시설		1	0.4
온라인		4	1.5
상업시설		15	5.6
기타		13	4.8
파악 안 됨		4	1.5
계		270	100

[그림 5-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아동 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우선,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158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210건(77.8%)으로 전체 학대사례(1년 미만 977건, 67.4%)보다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빈도 역시 1~2회 이하가 미만이 135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아동 학대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함께 관여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다. 이에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에 비해 학대의 지속기간이나 발생빈도가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이하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	-	7	2.6	5	1.9	21	7.8	125	46.3	158	58.5
	3~6개월 미만	6	2.2	7	2.6	2	0.7	8	3.0	5	1.9	28	10.4
	6~12개월 미만	1	0.4	14	5.2	6	2.2	-	-	3	1.1	24	8.9
	1~3년 미만	4	1.5	9	3.3	2	0.7	4	1.5	1	0.4	20	7.4
	3~5년 미만	3	1.1	9	3.3	1	0.4	-	-	1	0.4	14	5.2
	5~10년 미만	5	1.9	10	3.7	1	0.4	-	-	-	-	16	5.9
	10년 이상	7	2.6	2	0.7	1	0.4	-	-	-	-	10	3.7
계		26	9.6	58	21.5	18	6.7	33	12.2	135	50.0	270	100.0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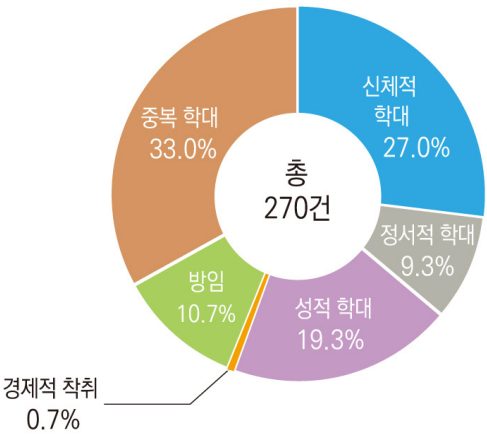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중복 학대 89건(33.0%), 신체적 학대 73건(27.0%), 성적 학대 52건(19.3%), 방임 29건(10.7%), 정서적 학대 25건(9.3%), 경제적 착취 2건(0.7%)으로 나타났다. 유기는 0건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중복 학대는 증가하였고, 정서적 학대는 감소하였다.

[표 5-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73	27.0
정서적 학대	25	9.3
성적 학대	52	19.3
경제적 착취	2	0.7
유기	-	-
방임	29	10.7
중복 학대	89	33.0
계	270	100.0

[그림 5-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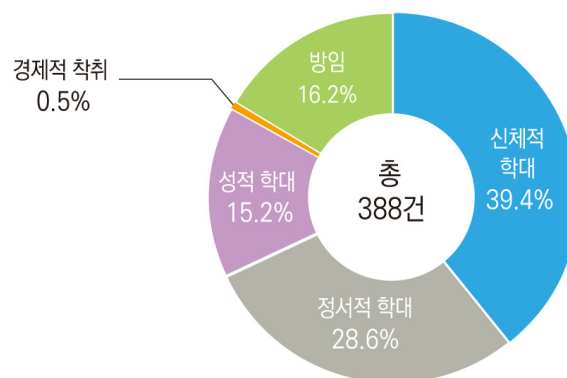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사례 총 2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388건으로 집계되었다. 각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153건(39.4%), 정서적 학대 111건(28.6%), 방임 63건(16.2%), 성적 학대 59건(15.2%), 경제적 착취 2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53	39.4
정서적 학대	111	28.6
성적 학대	59	15.2
경제적 착취	2	0.5
유기	-	-
방임	63	16.2
계	388	100.0

[그림 5-17]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 총 388건을 기준으로 장애아동 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 장애아동의 성별은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서는 남아의 피해 비율이 높았고, 성적 학대에서만 여아의 피해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착취에서 남아, 여아의 피해 비율은 동일했다.

[표 5-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아	104	68.0	69	62.2	11	18.6	1	50.0	-	-	37	58.7	222	57.2
여아	49	32.0	42	37.8	48	81.4	1	50.0	-	-	26	41.3	166	42.8
계	153	100.0	111	100.0	59	100.0	2	100.0	-	-	63	100.0	388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신체적 학대는 13~15세 장애아동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는 7~9세 장애아동,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는 13~15세와 16~17세 장애아동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은 3~6세 및 10~12세 장애아동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0~2세	1	0.7	1	0.9	-	-	-	-	-	-	1	1.6	3	0.8
3~6세	14	9.2	13	11.7	-	-	-	-	-	-	14	22.2	41	10.6
7~9세	30	19.6	28	25.2	5	8.5	-	-	-	-	13	20.6	76	19.6
10~12세	31	20.3	24	21.6	4	6.8	-	-	-	-	14	22.2	73	18.8
13~15세	52	34.0	27	24.3	25	42.4	1	50.0	-	-	10	15.9	115	29.6
16~17세	25	16.3	18	16.2	25	42.4	1	50.0	-	-	11	17.5	80	20.6
계	153	100.0	111	100.0	59	100.0	2	100.0	-	-	63	100.0	388	100.0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파악 안 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父), 모(母),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 70건(45.8%)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부(父) 34건(22.2%), 모(母) 28건(18.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건(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48건(43.2%)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건(26.1%), 부(父) 25건(22.5%), 모(母) 13건(11.7%)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타인 45건(76.3%)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1건(52.5%), 모르는 사람 11건(18.6%) 등의 순이었고, 경제적 착취는 모두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로부터 발생했다. 방임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 34건(54.0%)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모(母) 24건(3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건(34.9%), 부(父) 8건(12.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5-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부	34	22.2	25	22.5	2	3.4	-	-	-	-	8	12.7	69	17.8
	모	28	18.3	13	11.7	3	5.1	-	-	-	-	24	38.1	68	17.5
	조부모	6	3.9	3	2.7	-	-	-	-	-	-	1	1.6	10	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0.7	1	0.9	-	-	-	-	-	-	1	1.6	3	0.8
	그 외 친척	1	0.7	-	-	2	3.4	-	-	-	-	-	-	3	0.8
	소계	70	45.8	42	37.8	7	11.9	-	-	-	-	34	54.0	153	39.4
타인	동거인	2	1.3	1	0.9	-	-	-	-	-	-	1	1.6	4	1.0
	이웃	-	-	3	2.7	3	5.1	-	-	-	-	-	-	6	1.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7	11.1	10	9.0	31	52.5	-	-	-	-	-	-	58	14.9
	모르는 사람	4	2.6	3	2.7	11	18.6	-	-	-	-	-	-	18	4.6
	소계	23	15.0	17	15.3	45	76.3	-	-	-	-	1	1.6	86	22.2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	20.3	29	26.1	5	8.5	-	-	-	-	22	34.9	87	22.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6	3.9	5	4.5	-	-	1	50.0	-	-	1	1.6	13	3.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7	-	-	-	-	-	-	-	-	1	1.6	2	0.5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1.3	2	1.8	-	-	-	-	-	-	-	-	4	1.0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7	-	-	-	-	-	-	-	-	-	-	1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13	8.5	12	10.8	2	3.4	-	-	-	-	3	4.8	30	7.7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	-	-	-	1	50.0	-	-	-	-	1	0.3
	소계	54	35.3	48	43.2	7	11.9	2	100.0	-	-	27	42.9	138	35.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	-	1	1.6	1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	1.3	-	-	-	-	-	-	-	-	-	-	2	0.5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3	2.0	3	2.7	-	-	-	-	-	-	-	-	6	1.5
	소계	5	3.3	3	2.7	-	-	-	-	-	-	1	1.6	9	2.3
파악 안 됨		1	0.7	1	0.9	-	-	-	-	-	-	-	-	2	0.5
계		153	100.0	111	100.0	59	100.0	2	100.0	-	-	63	100.0	388	100.0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장애아동 학대사례 270건 중 응급조치는 16건(5.9%) 실시하였다. 이 중 쉼터 입소 사례는 14건(87.5%), 의료기관·기타장소 연계는 각각 1건(6.3%)이었다.

[표 5-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14	-	1	1	16
87.5	-	6.3	6.3	100.0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총 2,590회 이뤄졌다. 상담지원이 1,669회(64.4%)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399회(15.4%), 복지지원 276회(10.7%)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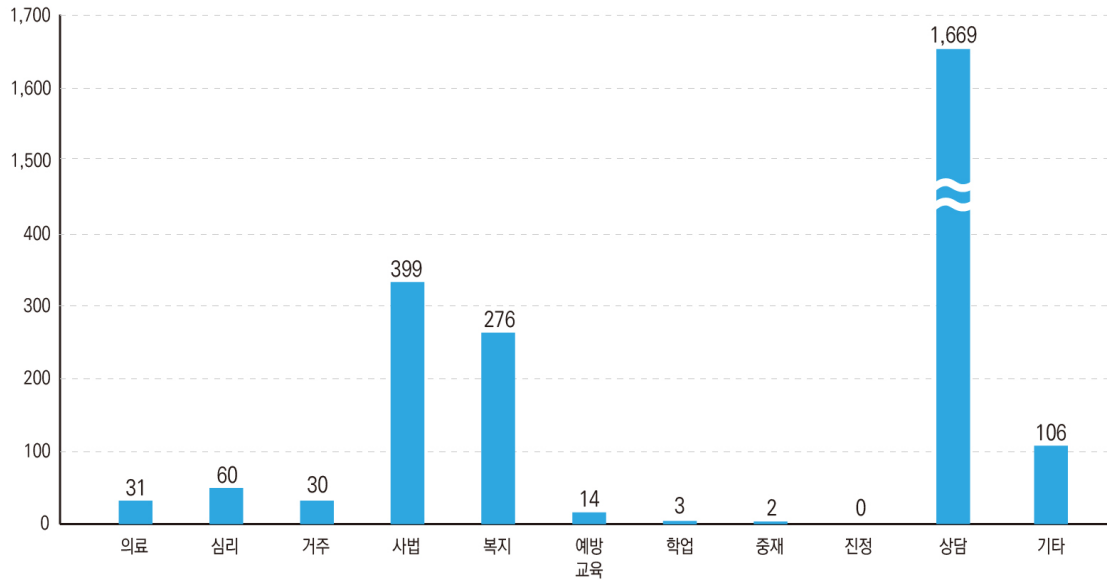
[표 5-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 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31	60	30	399	276	14	3	2	-	1,669	106	2,590
1.2	2.3	1.2	15.4	10.7	0.5	0.1	0.1	-	64.4	4.1	100.0

[그림 5-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399회 실시했으며, 이 중 사법지원을 위한 동행, 사법지원 관련 자와의 협의 및 모니터링, 정보검색 등의 기타지원이 254회(63.7%) 실시되었고, 절차지원 116회(29.1%), 법률상담 13회(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7	5	4	13	116	-	-	-	254	399
1.8	1.3	1.0	3.3	29.1	-	-	-	63.7	100.0

3. 노동력 착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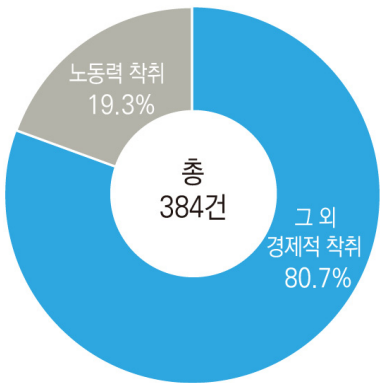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4년 노동력 착취 사례는 74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사례(1,449건)의 5.1%에 해당한다. 경제적 착취 사례 384건 중 19.3%가 노동력 착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전체 학대사례 1,418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 112건)와 비교하면 33.9% 감소하였다.

[표 5-38] 노동력 착취 발생

(단위: 건, %)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사례 중 노동력 착취 (D=A/C*100)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 (E)
노동력 착취 포함 (A)	노동력 착취 미포함 (B)	계 (C=A+B)		
74	310	384	19.3	5.1

[그림 5-19] 노동력 착취 발생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 성별 및 연령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45건(60.8%), 여성이 29건(39.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0건(2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16건(21.6%), 30대 14건(18.9%), 60대 이상 13건(17.6%), 50대 9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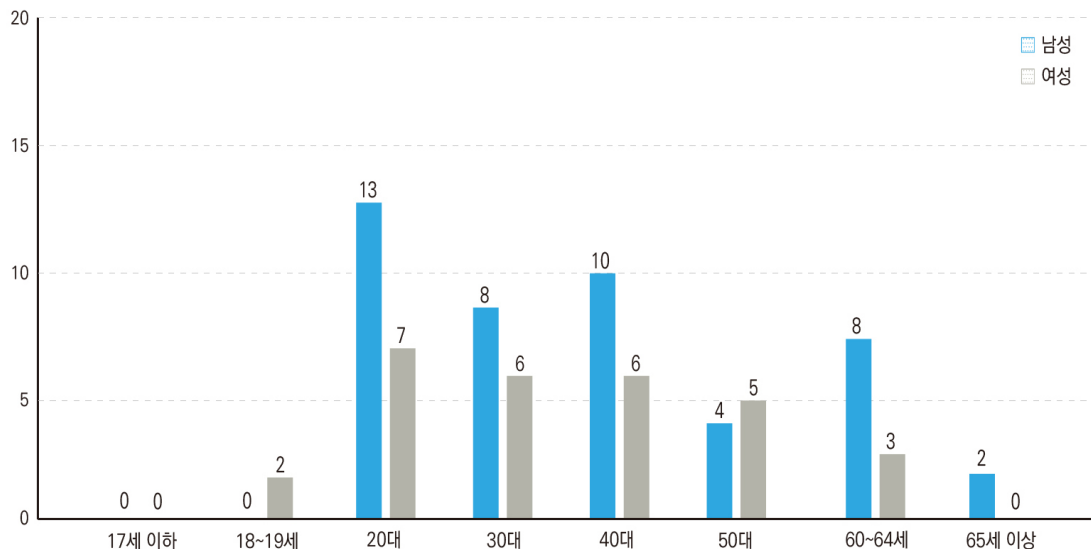
[표 5-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10대 이하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60~64세		65세 이상			
남성	-	-	-	-	13	17.6	8	10.8	10	13.5	4	5.4	8	10.8	2	2.7	45	60.8
여성	-	-	2	2.7	7	9.5	6	8.1	6	8.1	5	6.8	3	4.1	-	-	29	39.2
계	-	-	2	2.7	20	27.0	14	18.9	16	21.6	9	12.2	11	14.9	2	2.7	74	100.0

[그림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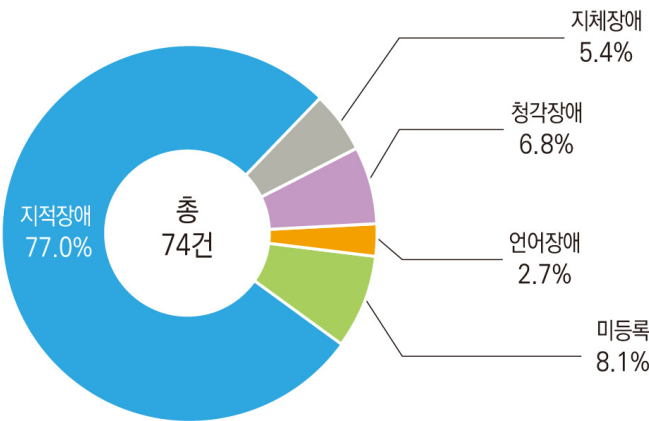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7건(77.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등록 6건(8.1%), 청각장애 5건(6.8%), 지체장애 4건(5.4%), 언어장애 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이 대다수라는 점이 유사하다.

[표 5-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4	5.4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5	6.8
언어장애	2	2.7
안면장애	-	-
지적장애	57	77.0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뇌전증장애	-	-
미등록	6	8.1
계	74	100.0

[그림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3) 거주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 60건(81.1%), 시설 14건(18.9%)으로 나타났다. 재가 거주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전년도(74건)에 비해 18.9% 감소하였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전년도(38건)에 비해 63.2% 감소했다.

[표 5-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60	81.1	14	18.9	74	100.0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1건(55.4%), 비수급자 31건(41.9%), 차상위 계층 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학대사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63.1%)보다 7.7%p 낮은 수치이다.

[표 5-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자		계	
41	55.4	2	2.7	31	41.9	74	100.0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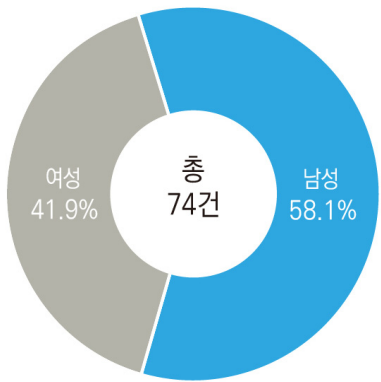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43건(58.1%), 여성이 31건(41.9%)으로 나타났다.

[표 5-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계	
43	58.1	31	41.9	74	100.0

[그림 5-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2) 연령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50대가 24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3건(31.1%), 40대 8건(10.8%), 70대 6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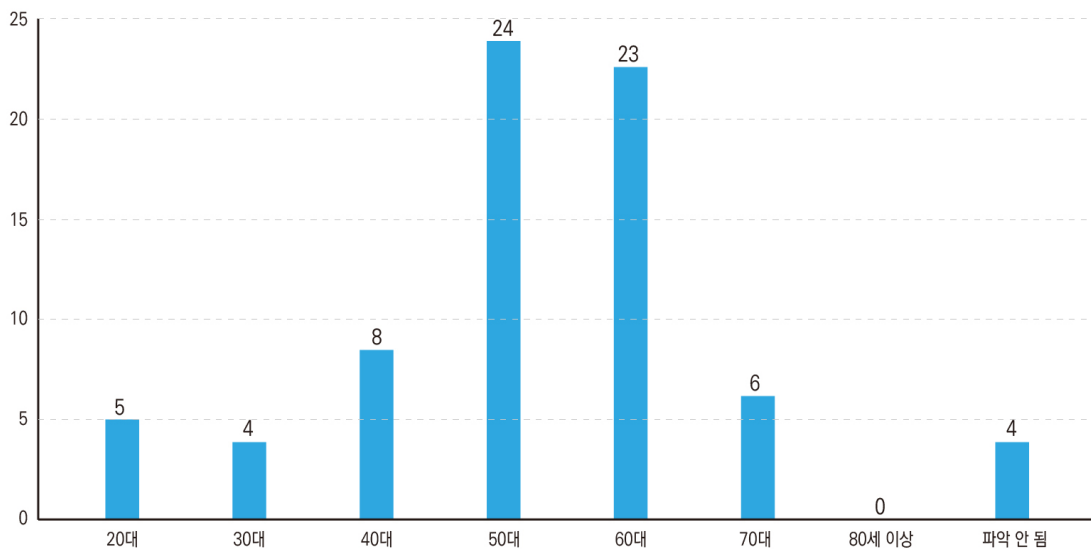
[표 5-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20대(20~29세)	5	6.8
30대(30~39세)	4	5.4
40대(40~49세)	8	10.8
50대(50~59세)	24	32.4
60대(60~69세)	23	31.1
70대(70~79세)	6	8.1
80세 이상	-	-
파악 안 됨	4	5.4
계	74	100.0

[그림 5-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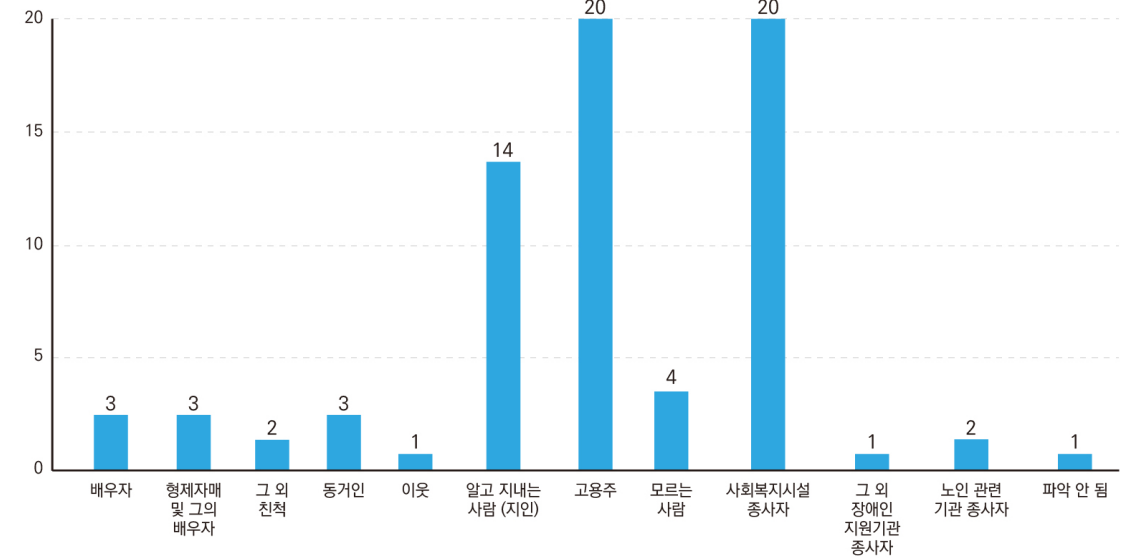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타인이 42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유관기관 종사자 20건(27.0%), 가족 및 친인척 8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주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0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4건(18.9%) 등의 순이었다. 2023년도 수치보다 줄어들었으나 2024년도에 고용주에 의한 노동력 착취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3	4.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4.1
	그 외 친척	2	2.8
	소계	8	10.8
타인	동거인	3	4.1
	이웃	1	1.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4	18.9
	고용주	20	27.0
	모르는 사람	4	5.4
	소계	42	56.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	27.0
	소계	20	27.0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종사자	1	1.4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2	2.7
	소계	3	4.1
파악 안 됨		1	1.4
계		74	100.0

[그림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는 직장(일하는 곳) 29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피해장애인 거주지 18건(24.3%), 학대행위자 거주지 9건(12.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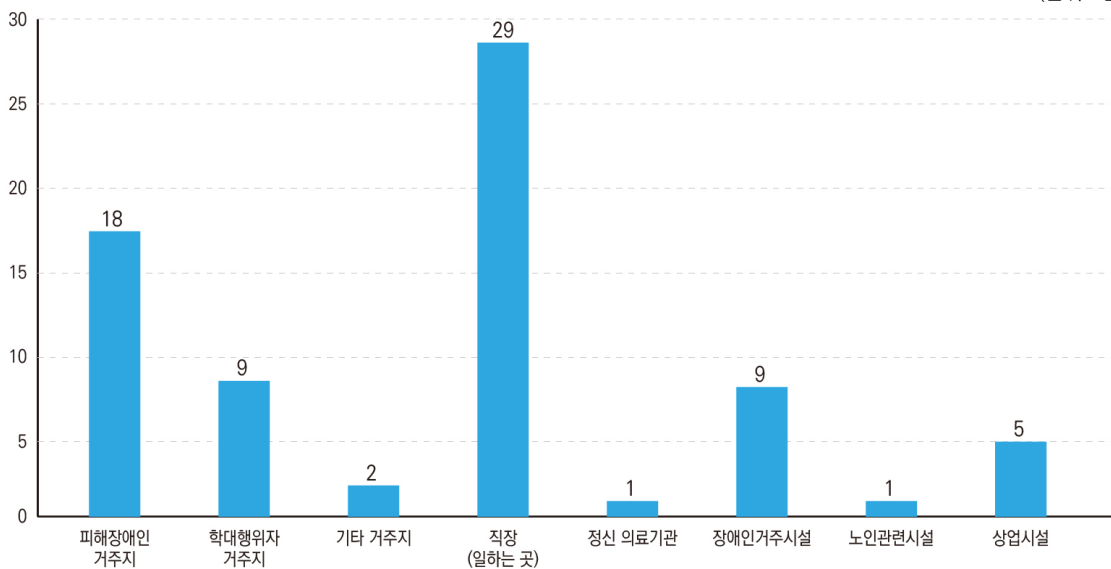
[표 5-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8	24.3
학대행위자 거주지		9	12.2
기타 거주지		2	2.7
직장(일하는 곳)		29	39.2
정신 의료기관		1	1.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9	12.2
	소계	9	12.2
노인관련시설		1	1.4
상업시설		5	6.8
계		74	100.0

[그림 5-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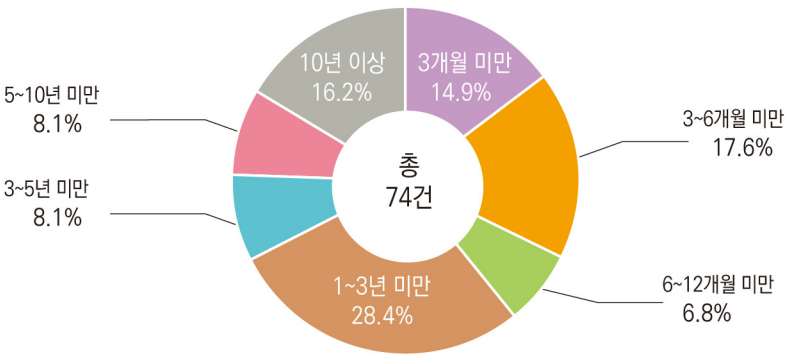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노동력 착취의 지속기간은 1~3년 미만인 사례가 21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6개월 미만 13건(17.6%), 10년 이상 12건(16.2%) 등의 순이었다. 3년 이상 노동력 착취가 지속되는 사례는 24건(32.4%)으로 전체 학대사례(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97건, 20.5%)보다 11.9%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력 착취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단위: 건, %)

지속기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11	14.9
3~6개월 미만	13	17.6
6~12개월 미만	5	6.8
1~3년 미만	21	28.4
3~5년 미만	6	8.1
5~10년 미만	6	8.1
10년 이상	12	16.2
계	74	100.0

[그림 5-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노동력 착취사례 총 74건에 대해 쉼터 이용 9건, 기타 1건 총 10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5-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9	-	-	1	10
90.0	-	-	10.0	100.0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30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 중 상담지원이 1,050회(68.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법지원 182회(11.9%), 복지지원 109회(7.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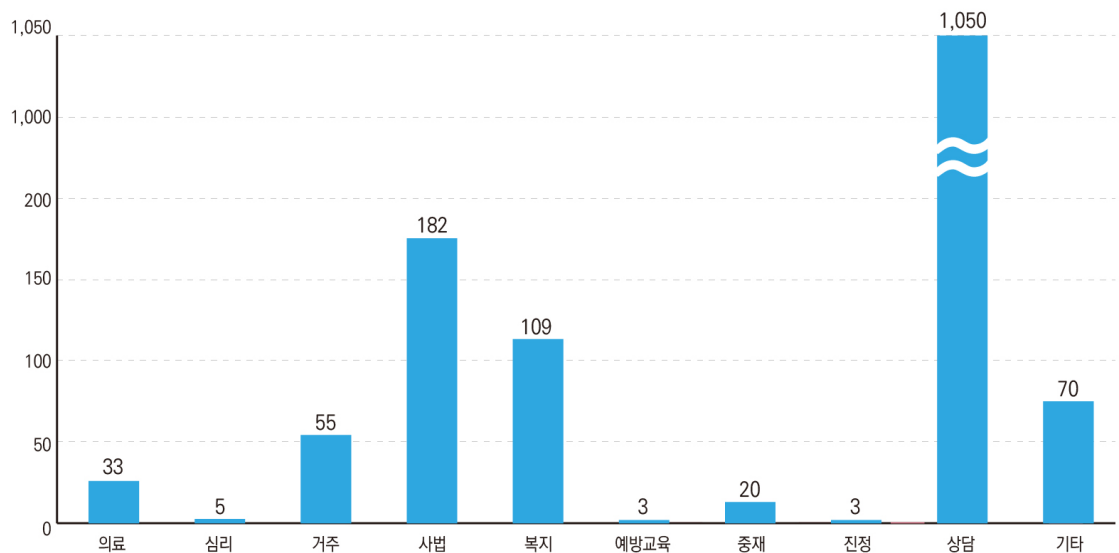
[표 5-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33	5	55	182	109	3	20	3	1,050	70	1,530
2.2	0.3	3.6	11.9	7.1	0.2	1.3	0.2	68.6	4.6	100.0

[그림 5-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노동력 착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182회로, 이 중 기타지원이 119회(6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절차지원 34회(18.7%), 법률상담 7회(3.8%) 등의 순이었다.

[표 5-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7	3	4	7	34	2	6	119	182
3.8	1.6	2.2	3.8	18.7	1.1	3.3	65.4	100.0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에서 접수된 학대신고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말한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24개소로 26,987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등)은 1,609개소이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1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815개소이다.¹⁴⁾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345건)는 전체 학대사례(1,449건)의 23.8%를 차지하며, 전년도(385건) 대비 10.4% 감소하였다.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184건(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48건(13.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6건(13.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4건(7.0%) 등의 순이었다.

[표 5-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시설유형		건수	비율
교육기관		48	13.9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4	53.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6	1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2.3
	피해장애인쉼터	6	1.7
	피해장애아동쉼터	1	0.3
	소계	245	71.0
그 외 보호시설(쉼터)		3	0.9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4	7.0
정신요양시설		3	0.9
정신재활시설		-	-
아동관련시설		7	2.0
노인관련시설		6	1.7
기타 복지관련시설		8	2.3
미신고시설		1	0.3
계		345	100.0

14)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2024.12월말 기준)」 참조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표 5-5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아동관련 시설		노인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서울		-	-	17	4.9	2	0.6	-	-	-	-	1	0.3	-	-	1	0.3	-	-	-	-	-	-	-	-	2	0.6	-	-	23	6.7
부산		2	0.6	-	-	2	0.6	2	0.6	-	-	-	-	-	-	-	-	-	-	-	-	-	-	-	1	0.3	-	-	7	2.0	
대구		-	-	1	0.3	1	0.3	-	-	-	-	-	-	-	-	-	-	-	-	-	-	-	-	-	-	-	-	-	2	0.6	
인천		2	0.6	5	1.4	-	-	1	0.3	2	0.6	-	-	-	-	1	0.3	-	-	-	-	-	-	-	-	-	-	-	11	3.2	
광주		-	-	-	-	-	-	1	0.3	-	-	-	-	-	-	-	-	-	-	-	-	-	-	-	-	-	-	-	1	0.3	
대전		2	0.6	8	2.3	-	-	1	0.3	-	-	-	-	-	-	-	-	-	-	-	-	-	-	-	-	-	-	-	11	3.2	
울산		1	0.3	22	6.4	3	0.9	-	-	-	-	-	-	-	-	-	-	-	-	-	-	-	-	-	-	-	-	-	26	7.5	
세종		1	0.3	3	0.9	-	-	-	-	-	-	-	-	-	-	-	-	-	-	-	-	-	-	-	-	-	-	-	4	1.2	
경기	경기남부	12	3.5	8	2.3	3	0.9	-	-	-	-	-	-	-	4	1.2	-	-	-	-	1	0.3	3	0.9	1	0.3	1	0.3	33	9.6	
	경기북부	2	0.6	31	9.0	5	1.4	-	-	-	-	-	-	-	1	0.3	-	-	-	-	-	-	1	0.3	-	-	-	-	40	11.6	
	소계	14	4.1	39	11.3	8	2.3	-	-	-	-	-	-	-	5	1.4	-	-	-	-	1	0.3	4	1.2	1	0.3	1	0.3	73	21.2	
강원		2	0.6	22	6.4	1	0.3	-	-	-	-	-	-	-	7	2.0	-	-	-	-	-	-	-	-	-	-	-	-	32	9.3	
충북	충북	5	1.4	-	-	1	0.3	1	0.3	-	-	-	-	1	0.3	-	-	-	-	-	1	0.3	-	-	-	-	-	-	9	2.6	
	충북북부	2	0.6	4	1.2	-	-	-	-	-	-	-	-	1	0.3	5	1.4	-	-	-	-	2	0.6	-	-	-	-	-	14	4.1	
	소계	7	2.0	4	1.2	1	0.3	1	0.3	-	-	-	-	2	0.6	5	1.4	-	-	-	-	3	0.9	-	-	-	-	-	23	6.7	
충남		2	0.6	1	0.3	2	0.6	2	0.6	2	0.6	-	-	1	0.3	1	0.3	1	0.3	-	-	1	0.3	1	0.3	2	0.6	-	-	16	4.6
전북		-	-	1	0.3	-	-	-	-	-	-	-	-	-	-	3	0.9	2	0.6	-	-	-	-	-	-	-	-	-	6	1.7	
전남		2	0.6	25	7.2	2	0.6	-	-	-	-	-	-	-	-	-	-	-	-	-	-	2	0.6	1	0.3	-	-	-	32	9.3	
경북		3	0.9	6	1.7	-	-	-	-	-	-	-	-	-	-	-	-	-	-	-	-	-	-	-	-	-	-	9	2.6		
경남		10	2.9	29	8.4	22	6.4	-	-	2	0.6	-	-	-	-	1	0.3	-	-	-	-	-	-	-	2	0.6	-	-	66	19.1	
제주		-	-	1	0.3	2	0.6	-	-	-	-	-	-	-	-	-	-	-	-	-	-	-	-	-	-	-	-	3	0.9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1) 성별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227건(65.8%), 여성 118건(34.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남성	36	10.4	123	35.7	27	7.8	8	2.3	-	-	17	4.9	3	0.9	-	-	3	0.9	-	-	1	0.3	3	0.9	5	1.4	1	0.3	227	65.8	
여성	12	3.5	61	17.7	19	5.5	-	-	3	0.9	7	2.0	3	0.9	1	0.3	-	-	-	-	6	1.7	3	0.9	3	0.9	-	-	118	34.2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3	0.9	24	7.0	6	1.7	1	0.3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2) 연령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가 105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가 77건(22.3%), 20대 53건(15.4%) 등의 순이었다. 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0대 58건(16.8%), 40대 43건(12.5%), 20대 28건(8.1%) 등의 순이었고,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10대 이하(17세 이하, 18~19세)가 48건(13.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 5-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10대 이하	17세 이하	39	11.3	8	2.3	25	7.2	-	-	2	0.6	1	0.3	1	0.3	5	1.4	-	-	-	-	5	1.4	-	-	1	0.3	1	0.3	88	25.5
	18~19세	9	2.6	2	0.6	1	0.3	-	-	-	-	-	-	1	0.3	2	0.6	-	-	-	-	1	0.3	-	-	1	0.3	-	-	17	4.9
20대 (20~29세)		-	-	28	8.1	6	1.7	3	0.9	3	0.9	-	-	1	0.3	9	2.6	1	0.3	-	-	-	-	-	-	2	0.6	-	-	53	15.4
30대 (30~39세)		-	-	58	16.8	8	2.3	4	1.2	1	0.3	-	-	-	-	5	1.4	-	-	-	-	-	-	-	-	1	0.3	-	-	77	22.3
40대 (40~49세)		-	-	43	12.5	4	1.2	1	0.3	-	-	-	-	-	-	2	0.6	1	0.3	-	-	-	-	-	-	1	0.3	-	-	52	15.1
50대 (50~59세)		-	-	24	7.0	2	0.6	-	-	-	-	-	-	-	-	-	1	0.3	-	-	1	0.3	-	-	1	0.3	-	-	29	8.4	
60대 이상	60~64세	-	-	6	1.7	-	-	-	-	-	-	-	-	-	-	-	-	-	-	-	-	-	-	4	1.2	1	0.3	-	-	11	3.2
	65세 이상	-	-	15	4.3	-	-	-	-	-	-	-	-	-	-	1	0.3	-	-	-	-	-	-	2	0.6	-	-	-	-	18	5.2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3) 장애유형 및 정도

집단이용시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213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52건(15.1%), 뇌병변장애 34건(9.9%), 시각장애 20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269건(78.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높았다.

[표 5-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지체장애	1	0.3	3	0.9	-	-	-	-	-	-	-	-	-	-	1	0.3	-	-	-	-	-	-	3	0.9	1	0.3	-	-	9	2.6
뇌병변장애	3	0.9	20	5.8	9	2.6	-	-	-	-	-	-	-	-	-	-	-	-	-	-	-	-	2	0.6	-	-	-	-	34	9.9
시각장애	-	-	19	5.5	1	0.3	-	-	-	-	-	-	-	-	-	-	-	-	-	-	-	-	-	-	-	-	-	20	5.8	
청각장애	-	-	1	0.3	-	-	-	-	-	-	-	-	-	-	-	-	-	-	-	-	-	-	-	-	-	-	-	1	0.3	
언어장애	1	0.3	1	0.3	-	-	-	-	-	-	-	-	-	-	-	-	-	-	-	-	-	-	-	-	-	-	-	2	0.6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장애	23	6.7	126	-	18	5.2	7	2.0	4	1.2	1	0.3	2	0.6	20	5.8	2	0.6	-	-	5	1.4	1	0.3	4	1.2	-	-	213	61.7
자폐성장애	14	4.1	14	4.1	16	4.6	1	0.3	2	0.6	-	-	-	-	1	0.3	-	-	-	-	2	0.6	-	-	1	0.3	1	0.3	52	15.1
정신장애	1	0.3	-	-	-	-	-	-	-	-	-	-	-	-	1	0.3	1	0.3	-	-	-	-	-	-	1	0.3	-	-	4	1.2
신장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장애	-	-	-	-	1	0.3	-	-	-	-	-	-	-	-	-	-	-	-	-	-	-	-	-	-	-	-	-	1	0.3	
뇌전증장애	1	0.3	-	-	-	-	-	-	-	-	-	-	-	-	-	-	-	-	-	-	-	-	-	-	-	-	-	1	0.3	
미등록	4	1.2	-	-	1	0.3	-	-	-	-	-	-	1	0.3	1	0.3	-	-	-	-	-	-	-	-	1	0.3	-	-	8	2.3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표 5-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4	13.1	182	54.0	43	12.8	8	2.4	6	1.8	1	0.3	2	0.6	23	6.8	3	0.9	-	-	7	2.1	4	1.2	7	2.1	1	0.3	331	98.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2	0.6	2	0.6	-	-	-	-	-	-	-	-	-	-	-	-	-	-	-	-	2	0.6	-	-	-	-	6	1.8
계	44	13.1	184	54.6	45	13.4	8	2.4	6	1.8	1	0.3	2	0.6	23	6.8	3	0.9	-	-	7	2.1	6	1.8	7	2.1	1	0.3	337	100.0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신고는 비신고의무자 249건(72.2%), 신고의무자 96건(27.8%)으로 비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자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40건(4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5건(18.8%), 부모 33건(9.6%) 등의 순이었다.

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신고자로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107건(31.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건(11.6%), 일반공무원 11건(3.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경우 부모의 신고가 14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학대 신고의 경우 경찰공무원 13건(3.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2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건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46건(71.3%), 타인 57건(16.5%),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6건(7.5%), 파악 안 됨 12건(3.5%), 가족 및 친인척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7건(60.0%),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4건(12.8%), 초·중등학교 종사자 23건(6.7%),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5건(4.3%) 순이었다.

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61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의 경우 초·중등학교 종사자가 23건(6.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건(5.5%) 등의 순이었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7건(7.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9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의 경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14건(4.1%)으로 많았다.

[표 5-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7	2.0	1	0.3	-	-	-	-	-	-	-	-	-	-	-	-	-	-	-	-	-	1	0.3	-	-	9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	0.3	40	11.6	12	3.5	4	1.2	2	0.6	-	-	1	0.3	-	-	2	0.6	-	-	-	-	1	0.3	2	0.6	-	-	65	18.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지원기관 종사자	-	-	4	1.2	-	-	-	-	-	-	-	-	-	-	-	-	-	-	-	-	-	-	-	-	-	-	-	4	1.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1	0.3	-	-	-	-	-	-	-	-	-	-	-	1	0.3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3	0.9	-	-	-	-	-	-	-	-	-	-	-	-	-	-	-	-	-	-	-	-	-	-	-	-	-	3	0.9		
	초·중등학교 종사자	7	2.0	2	0.6	-	-	-	-	1	0.3	-	-	-	-	-	-	-	-	-	-	-	1	0.3	-	-	1	0.3	-	-	12	3.5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3	-	-	1	0.3	-	-	-	-	-	-	-	-	-	-	-	-	-	-	-	-	-	-	-	-	-	2	0.6		
	소계	12	3.5	53	15.4	14	4.1	4	1.2	3	0.9	-	-	1	0.3	1	0.3	2	0.6	-	-	1	0.3	1	0.3	4	1.2	-	-	96	27.8	
비 신고 의무자	본인	2	0.6	2	0.6	-	-	-	-	-	-	-	-	-	-	1	0.3	-	-	-	-	1	0.3	1	0.3	-	-	-	-	7	2.0	
	가족 및 친척	부모	14	4.1	2	0.6	8	2.3	1	0.3	-	-	-	-	-	5	1.4	-	-	-	-	-	-	1	0.3	2	0.6	-	-	33	9.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4	1.2	-	-	-	-	-	-	-	-	-	-	-	-	-	-	-	-	-	-	-	-	-	-	-	4	1.2	
		그 외 친척	2	0.6	-	-	-	-	-	-	-	-	-	-	-	-	-	-	-	-	-	-	-	-	-	1	0.3	-	-	3	0.9	
		소계	16	4.6	6	1.7	8	2.3	1	0.3	-	-	-	-	-	5	1.4	-	-	-	-	-	-	1	0.3	3	0.9	-	-	40	11.6	
	유관 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1	0.3	1	0.3	13	3.8	-	-	-	-	-	-	-	-	-	-	-	-	-	-	1	0.3	-	-	-	-	-	16	4.6	
		일반공무원	2	0.6	11	3.2	-	-	1	0.3	-	-	-	-	-	2	0.6	1	0.3	-	-	-	-	-	-	1	0.3	-	-	18	5.2	
		공공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1	0.3	-	-	-	-	1	0.3	
		교육기관 종사자	2	0.6	-	-	-	-	-	-	-	-	-	-	-	-	-	-	-	-	-	-	-	-	-	-	-	-	-	2	0.6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5	1.4	107	31.0	8	2.3	1	0.3	3	0.9	-	-	-	-	12	3.5	-	-	-	-	3	0.9	1	0.3	-	-	-	-	140	40.6
		노인관련 기관 종사자	-	-	1	0.3	-	-	-	-	-	-	-	-	-	-	-	-	-	-	-	-	-	-	-	-	-	-	-	1	0.3	
		기타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1	0.3	1	0.3	2	0.6	-	-	-	-	-	1	0.3	3	0.9	-	-	-	-	-	-	-	-	-	-	-	8	2.3		
		소계	11	3.2	121	35.1	23	6.7	2	0.6	3	0.9	-	-	1	0.3	17	4.9	1	0.3	-	-	4	1.2	2	0.6	1	0.3	-	-	186	53.9
	타인	1	0.3	1	0.3	1	0.3	1	0.3	-	-	-	-	1	0.3	-	-	-	-	-	-	1	0.3	0	0.0	-	-	1	0.3	7	2.0	
	파악 안 됨	6	1.7	1	0.3	-	-	-	-	-	-	1	0.3	-	-	-	-	-	-	-	-	-	-	1	0.3	-	-	-	-	9	2.6	
	소계	36	10.4	131	38.0	32	9.3	4	1.2	3	0.9	1	0.3	2	0.6	23	6.7	1	0.3	-	-	6	1.7	5	1.4	4	1.2	1	0.3	249	72.2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표 5-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가족 및 친인척	모	1	0.3	-	-	-	-	-	-	-	-	-	-	1	0.3	-	-	-	-	-	-	-	-	-	-	-	-	-	-	2	0.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0.3	-	-	-	-	-	-	-	-	-	-	-	-	-	-	-	-	-	1	0.3	-	-	-	-	-	2	0.6
	소계	1	0.3	1	0.3	-	-	-	-	-	-	-	-	1	0.3	-	-	-	-	-	-	-	1	0.3	-	-	-	-	-	4	1.2
타인	동거인	-	-	5	1.4	-	-	-	-	-	-	-	-	-	-	-	-	-	-	-	-	-	-	-	1	0.3	-	-	-	6	1.7
	이웃	-	-	1	0.3	-	-	-	-	-	-	-	-	-	-	-	-	-	-	-	-	-	-	-	1	0.3	-	-	-	2	0.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	5.5	3	0.9	9	2.6	3	0.9	-	-	-	-	1	0.3	2	0.6	2	0.6	-	-	2	0.6	1	0.3	1	0.3	1	0.3	44	12.8
	모르는 사람	3	0.9	-	-	2	0.6	-	-	-	-	-	-	-	-	-	-	-	-	-	-	-	-	-	-	-	-	-	-	5	1.4
	소계	22	6.4	9	2.6	11	3.2	3	0.9	-	-	-	-	1	0.3	2	0.6	2	0.6	-	-	2	0.6	1	0.3	3	0.9	1	0.3	57	16.5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161	46.7	27	7.8	5	1.4	4	1.2	1	0.3	1	0.3	2	0.6	-	-	-	-	3	0.9	-	-	3	0.9	-	-	207	60.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	-	-	-	3	0.9	-	-	-	-	-	-	-	-	-	-	-	-	-	-	-	-	-	-	-	-	-	-	3	0.9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	-	-	4	1.2	-	-	-	-	-	-	-	-	-	-	-	-	-	-	-	-	-	-	-	-	-	-	4	1.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3	-	-	-	-	-	-	-	-	-	-	-	-	-	-	-	-	-	-	1	0.3	-	-	-	-	-	-	2	0.6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23	6.7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6.7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	-	-	-	-	-	-	2	0.6	-	-	-	-	-	-	-	-	-	-	-	-	-	-	-	-	-	-	2	0.6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3	0.9	-	-	-	-	3	0.9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	-	1	0.3	-	-	-	-	-	-	-	-	-	-	1	0.3
	소계	25	7.2	161	46.7	34	9.9	5	1.4	6	1.7	1	0.3	1	0.3	2	0.6	1	0.3	-	-	4	1.2	3	0.9	3	0.9	-	-	246	71.3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2	0.6	-	-	2	0.6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1	0.3	-	-	-	-	-	-	-	-	14	4.1	-	-	-	-	-	-	-	-	-	-	-	-	15	4.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1	0.3	-	-	-	-	-	-	1	0.3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1	0.3	-	-	-	-	-	-	-	-	-	-	-	-	-	-	-	-	-	-	1	0.3	-	-	-	-	2	0.6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6	1.7	-	-	-	-	-	-	-	-	-	-	-	-	6	1.7
	소계	-	-	1	0.3	1	0.3	-	-	-	-	-	-	-	-	20	5.8	-	-	-	-	1	0.3	1	0.3	2	0.6	-	-	26	7.5
파악 안 됨		-	-	12	3.5	-	-	-	-	-	-	-	-	-	-	-	-	-	-	-	-	-	-	-	-	-	-	-	-	12	3.5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156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6개월 미만 54건(15.7%), 5~10년 미만 49건(14.2%), 6~12개월 미만 39건(11.3%)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3년 이상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0년 미만의 사례가 많았다. 교육기관의 경우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많았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역시 1년 이내의 단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3개월 미만	32	9.3	73	21.2	19	5.5	7	2.0	2	0.6	-	-	2	0.6	7	2.0	3	0.9	-	-	3	0.9	2	0.6	5	1.4	1	0.3	156	45.2
3~6개월 미만	5	1.4	35	10.1	4	1.2	-	-	-	-	1	0.3	1	0.3	6	1.7	-	-	-	-	-	-	1	0.3	1	0.3	-	-	54	15.7
6~12개월 미만	8	2.3	17	4.9	4	1.2	-	-	2	0.6	-	-	-	-	7	2.0	-	-	-	-	1	0.3	-	-	-	-	-	-	39	11.3
1~3년 미만	3	0.9	5	1.4	7	2.0	1	0.3	1	0.3	-	-	-	-	4	1.2	-	-	-	-	-	-	-	-	-	-	-	-	21	6.1
3~5년 미만	-	-	1	0.3	4	1.2	-	-	-	-	-	-	-	-	-	-	-	-	-	-	3	0.9	1	0.3	-	-	-	-	9	2.6
5~10년 미만	-	-	38	11.0	7	2.0	-	-	1	0.3	-	-	-	-	-	-	-	-	-	-	-	-	2	0.6	1	0.3	-	-	49	14.2
10년 이상	-	-	15	4.3	1	0.3	-	-	-	-	-	-	-	-	-	-	-	-	-	-	-	-	-	-	1	0.3	-	-	17	4.9
계	48	13.9	184	53.3	46	13.3	8	2.3	6	1.7	1	0.3	3	0.9	24	7.0	3	0.9	-	-	7	2.0	6	1.7	8	2.3	1	0.3	345	100.0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가 161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98건,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77건(22.3%), 성적 학대 44건(12.8%), 정서적 학대 37건(10.7%), 경제적 착취 19건(5.5%) 그리고 방임은 7건(2.0%)이었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이 중복 학대(31.7%), 신체적 학대(23.2%), 경제적 착취(17.5%), 성적 학대(13.0%), 정서적 학대(10.1%), 방임(4.4%), 유기(0.1%)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복 학대가 94건(51.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7건(20.1%), 정서적 학대 23건(12.5%), 성적 학대 15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중복 학대 18건(37.5%), 신체적 학대 15건(3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도 중복 학대가 29건(6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은 신체적 학대·중복 학대가 각각 7건(29.2%)으로 나타났다.

[표 5-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인원	성비												
신체적 학대	15	31.3	37	20.1	9	19.6	1	12.5	-	-	-	-	2	66.7	7	29.2	1	33.3	-	-	-	-	-	-	-	-	-	4	50.0	1	100.0	77	22.3																											
정서적 학대	6	12.5	23	12.5	-	-	1	12.5	-	-	1	100.0	1	33.3	3	12.5	-	-	-	-	-	-	1	16.7	1	12.5	-	-	-	-	37	10.7																												
성적 학대	9	18.8	15	8.2	7	15.2	2	25.0	-	-	-	-	-	-	5	20.8	2	66.7	-	-	2	28.6	-	-	2	25.0	-	-	44	12.8																														
경제적 착취	-	-	11	6.0	-	-	-	-	2	33.3	-	-	-	-	1	4.2	-	-	-	-	2	28.6	3	50.0	-	-	-	-	19	5.5																														
유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임	-	-	4	2.2	1	2.2	-	-	1	16.7	-	-	-	-	1	4.2	-	-	-	-	-	-	-	-	-	-	-	-	-	7	2.0																													
중복 학대	18	37.5	94	51.1	29	63.0	4	50.0	3	50.0	-	-	-	-	7	29.2	-	-	-	-	3	42.9	2	33.3	1	12.5	-	-	161	46.7																														
계	48	100.0	184	100.0	46	100.0	8	100.0	6	100.0	1	100.0	3	100.0	24	100.0	3	100.0	-	-	7	100.0	6	100.0	8	100.0	1	100.0	345	100.0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34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6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198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176건(29.3%), 방임 91건(15.2%), 성적 학대 82건(13.7%), 경제적 착취 52건(8.7%), 유기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3.6%),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 방임(8.4%), 유기(0.2%)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24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중에서는 방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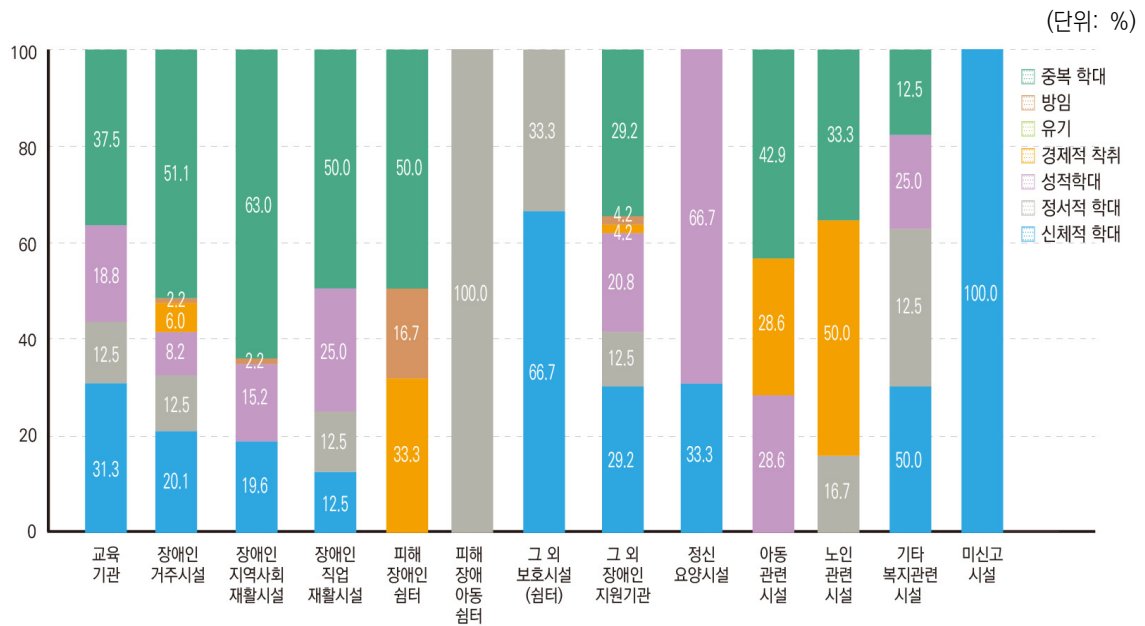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정서적 학대 99건(28.8%), 신체적 학대 98건(28.5%), 방임 59건(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 37건(38.5%), 정서적 학대 28건(29.2%), 방임 21건(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에서도 신체적 학대 29건(43.3%), 정서적 학대 24건(35.8%)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신체적 학대 12건(37.5%), 정서적 학대 8건(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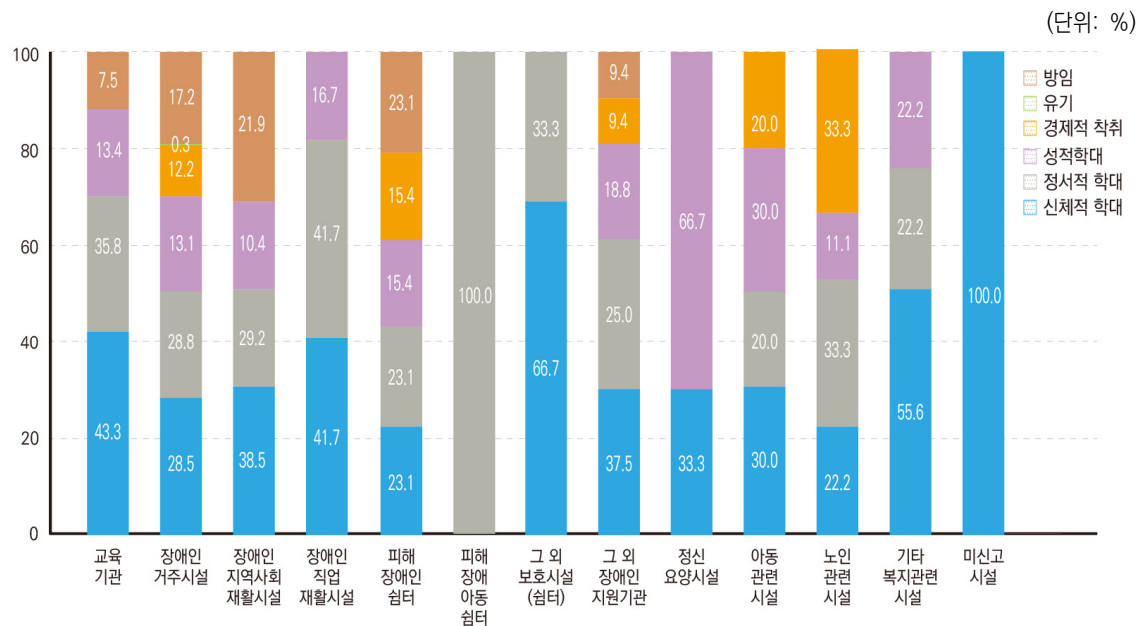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그 외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기타복지관련시설		미신고시설		계	
신체적 학대	29	43.3	98	28.5	37	38.5	5	41.7	3	23.1	-	-	2	66.7	12	37.5	1	33.3	-	-	3	30.0	2	22.2	5	55.6	1	100.0	198	33.0
정서적 학대	24	35.8	99	28.8	28	29.2	5	41.7	3	23.1	1	100.0	1	33.3	8	25.0	-	-	-	-	2	20.0	3	33.3	2	22.2	-	-	176	29.3
성적 학대	9	13.4	45	13.1	10	10.4	2	16.7	2	15.4	-	-	-	-	6	18.8	2	66.7	-	-	3	30.0	1	11.1	2	22.2	-	-	82	13.7
경제적 착취	-	-	42	12.2	-	-	-	-	2	15.4	-	-	-	-	3	9.4	-	-	-	-	2	20.0	3	33.3	-	-	-	-	52	8.7
유기	-	-	1	0.3	-	-	-	-	-	-	-	-	-	-	-	-	-	-	-	-	-	-	-	-	-	-	-	-	1	0.2
방임	5	7.5	59	17.2	21	21.9	-	-	3	23.1	-	-	-	-	3	9.4	-	-	-	-	-	-	-	-	-	-	-	-	91	15.2
계	67	100.0	344	100.0	96	100.0	12	100.0	13	100.0	1	100.0	3	100.0	32	100.0	3	100.0	-	-	10	100.0	9	100.0	9	100.0	1	100.0	600	100.0

[그림 5-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그림 5-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각각 7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2건(11.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6건(3.2%), 미신고시설 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16건, 56.0%)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사례건수는 줄어들었다. 또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례도 전년도(111건)보다 약 51.4% 감소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30인 이하 시설 사례가 103건(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31인~100인 미만 시설 58건(31.4%), 100인 이상 시설 24건(13.0%)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0인 이상 시설 사례(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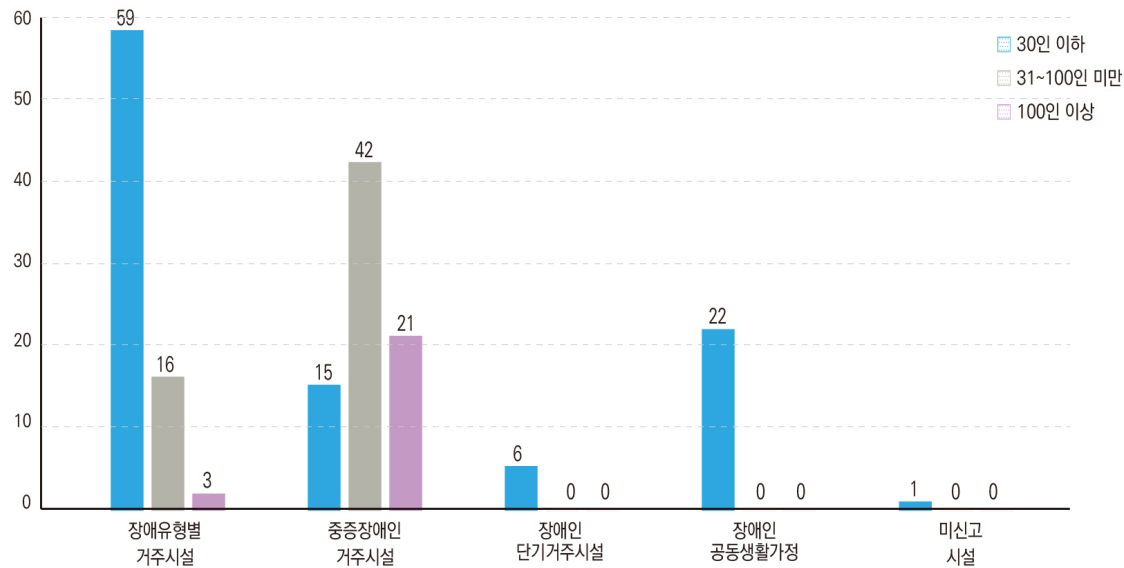
[표 5-6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단위: 건, %)

구분		30인 이하		31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	-	3	1.6	-	-	3	1.6
	시각장애인	21	11.4	-	-	-	-	21	11.4
	지적장애인	38	20.5	13	7.0	3	1.6	54	29.2
	소계	59	31.9	16	8.6	3	1.6	78	42.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5	8.1	42	22.7	21	11.4	78	42.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6	3.2	-	-	-	-	6	3.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2	11.9	-	-	-	-	22	11.9
계		102	55.1	58	31.4	24	13.0	184	99.5
미신고시설		1	0.5	-	-	-	-	1	0.5
총계		103	55.7	58	31.4	24	13.0	185	100.0

[그림 5-30]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

(단위: 건)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직영 및 위탁)와 민간(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116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법인시설 48건(26.1%), 개인시설 20건(10.9%)으로 나타났다.

[표 5-6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단위: 건, %)

구분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		계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2	1.1	1	0.5	-	-	3	1.6
	시각장애인	-	-	21	11.4	-	-	21	11.4
	지적장애인	46	25.0	8	4.3	-	-	54	29.3
	소계	48	26.1	30	16.3	-	-	78	4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6	35.9	9	4.9	3	1.6	78	42.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1.1	3	1.6	1	0.5	6	3.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	6	3.3	16	8.7	22	12.0
계		116	63.0	48	26.1	20	10.9	184	100.0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345건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각각 99건(28.7%), 방임 59건(17.1%), 성적 학대 45건(13.0%), 경제적 착취 42건(12.2%), 유기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2	0.6	-	-	1	0.3	-	-	-	-	-	-	3	0.9
	시각장애인	-	-	21	6.1	-	-	13	3.8	-	-	9	2.6	43	12.5
	지적장애인	43	12.5	30	8.7	31	9.0	4	1.2	-	-	25	7.2	133	38.6
	소계	45	13.0	51	14.8	32	9.3	17	4.9	-	-	34	9.9	179	51.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2	12.2	42	12.2	11	3.2	8	2.3	-	-	5	1.4	108	31.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0.9	2	0.6	2	0.6	-	-	1	0.3	1	0.3	9	2.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8	2.3	4	1.2	-	-	17	4.9	-	-	19	5.5	48	13.9
계		98	28.4	99	28.7	45	13.0	42	12.2	1	0.3	59	17.1	344	99.7
미신고시설		1	0.3	-	-	-	-	-	-	-	-	-	-	1	0.3
총계		99	28.7	99	28.7	45	13.0	42	12.2	1	0.3	59	17.1	345	100.0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응급조치는 총 6건 이루어졌으며, 쉼터 이용 4건(66.7%), 의료기관, 기타 장소 연계 각각 1건(16.7%)으로 나타났다.

[표 5-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쉼터	-	-	3 50.0	-	-	-	-	-	-	-	-	1 16.7	-	-	4 66.7
거주 시설	-	-	-	-	-	-	-	-	-	-	-	-	-	-	-
의료 기관	-	-	1 16.7	-	-	-	-	-	-	-	-	-	-	-	1 16.7
기타	-	-	1 16.7	-	-	-	-	-	-	-	-	-	-	-	1 16.7
계	-	-	5 83.3	-	-	-	-	-	-	-	-	1 16.7	-	-	6 100.0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2,2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지원이 1,093회(49.4%)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516회(23.3%), 기타지원 255회(11.5%), 복지지원 175회(7.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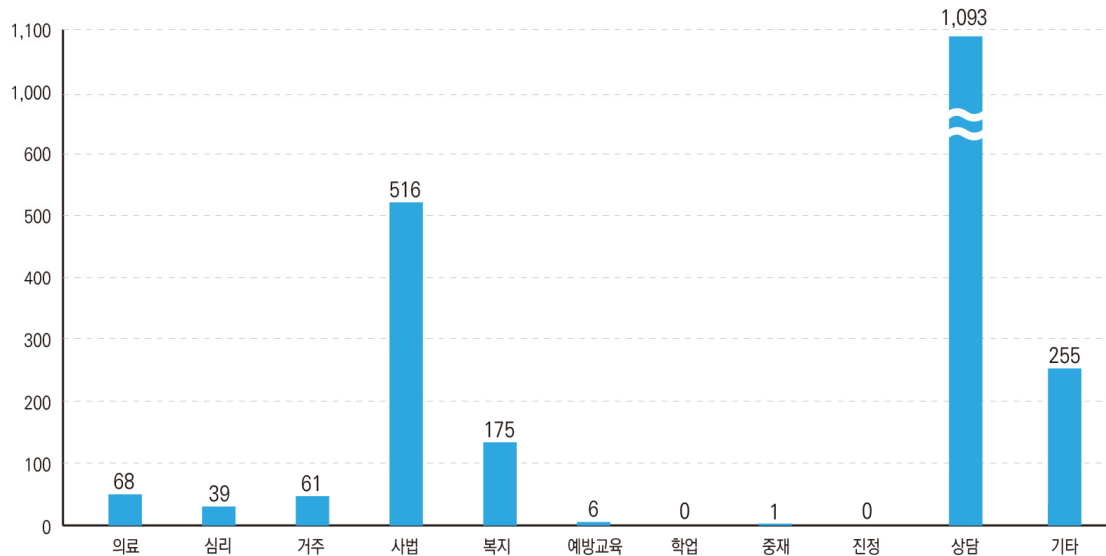
[표 5-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68	39	61	516	175	6	-	1	-	1,093	255	2,214
3.1	1.8	2.8	23.3	7.9	0.3	-	0.0	-	49.4	11.5	100.0

[그림 5-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516회 실시하였다.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101회(19.6%)로 가장 많았고, 고발 25회(4.8%), 법률상담 14회(2.7%), 수사의뢰 10회(1.9%) 실시하였다.

[표 5-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고발	-	-	19	3.7	2	0.4	1	0.2	-	-	-	-	1	0.2	2	0.4	-	-	-	-	-	-	-	-	-	-	-	-	25	4.8
고소대리	-	-	1	0.2	-	-	-	-	-	-	-	-	-	-	-	-	-	-	-	-	-	-	-	-	-	-	-	-	1	0.2
수사의뢰	-	-	6	1.2	1	0.2	-	-	-	-	-	-	1	0.2	-	-	1	0.2	-	-	-	-	-	-	-	-	-	10	1.9	
법률상담	5	1.0	8	1.6	-	-	-	-	-	-	-	-	-	-	-	-	-	-	-	-	1	0.2	-	-	-	-	-	14	2.7	
절차지원	15	2.9	13	2.5	63	12.2	-	-	3	0.6	-	-	-	-	3	0.6	-	-	-	-	1	0.2	3	0.6	-	-	-	-	101	19.6
소송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견인 선임	-	-	-	-	-	-	-	-	-	-	-	-	-	-	-	-	-	-	-	-	-	1	0.2	-	-	-	-	1	0.2	
노동청 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49	9.5	189	36.6	73	14.1	1	0.2	14	2.7	-	-	2	0.4	12	2.3	6	1.2	-	-	11	2.1	5	1.0	2	0.4	-	-	364	70.5
계	69	13.4	236	45.7	139	26.9	2	0.4	17	3.3	-	-	4	0.8	17	3.3	7	1.4	-	-	13	2.5	10	1.9	2	0.4	-	-	516	100.0

5. 재학대 사례

2023년 재학대 건수 128건(전체 학대사례 1,418건의 9.0%)에서 2024년 재학대 건수 189건(전체 학대사례 1,449건의 13.0%)으로 47.7% 증가했다.

가. 재학대 피해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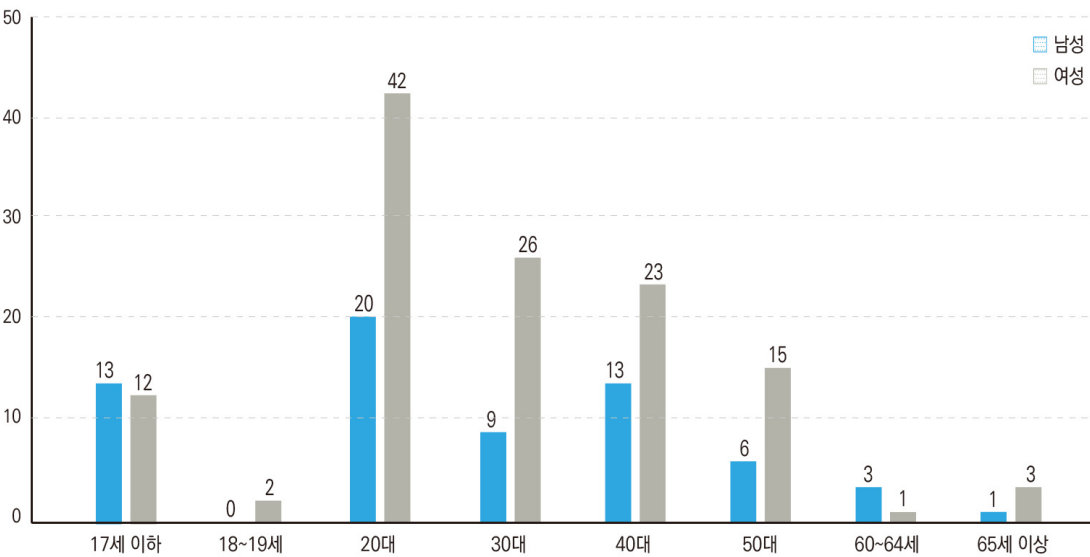
1) 성별 및 연령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124건(65.6%), 남성이 65건(34.4%)으로 여성이 1.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62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6건(19.0%), 30대 35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8]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10대 이하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60~64세		65세 이상			
남성	13	6.9	0	0.0	20	10.6	9	4.8	13	6.9	6	3.2	3	1.6	1	0.5	65	34.4
여성	12	6.3	2	1.1	42	22.2	26	13.8	23	12.2	15	7.9	1	0.5	3	1.6	124	65.6
계	25	13.2	2	1.1	62	32.8	35	18.5	36	19.0	21	11.1	4	2.1	4	2.1	189	100.0

[그림 5-32]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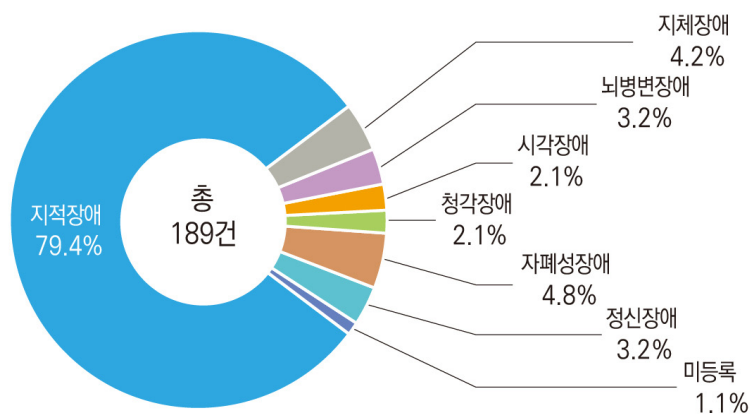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150건(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사례의 지적장애의 비율(64.7%)보다 14.7%p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자폐성장애 9건(4.8%), 지체장애 8건(4.2%)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5-69]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8	4.2
뇌병변장애	6	3.2
시각장애	4	2.1
청각장애	4	2.1
언어장애	-	-
안면장애	-	-
지적장애	150	79.4
자폐성장애	9	4.8
정신장애	6	3.2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뇌전증장애	-	-
미등록	2	1.1
계	189	100.0

[그림 5-33]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3) 거주유형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가와 시설로 나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가는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고 당시 재학대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거주 중인 경우는 175건(92.6%)이었고, 시설에서 거주 중인 경우는 14건(7.4%)이었다.

[표 5-70]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175	92.6	14	7.4	189	100.0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14건(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급자가 69건(36.5%), 차상위 계층은 6건(3.2%)이었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수급자 가정에서 재학대 사례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표 5-71] 재학대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자	계
114	6	69	189
60.3	3.2	36.5	100.0

나. 재학대 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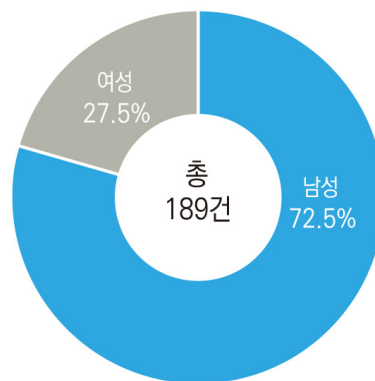
재학대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137건(72.5%), 여성이 52건(27.5%)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행위자 성별(남성 66.9%, 여성 33.1%, 파악 안 됨 0.1%)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5-72] 재학대 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성		여성		계	
137	72.5	52	27.5	189	100.0

[그림 5-34] 재학대 행위자 성별



2) 연령

재학대 행위자의 연령은 30대가 38건(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36건(19.0%), 40대 32건(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이하 행위자에 의한 재학대도 8건(4.2%)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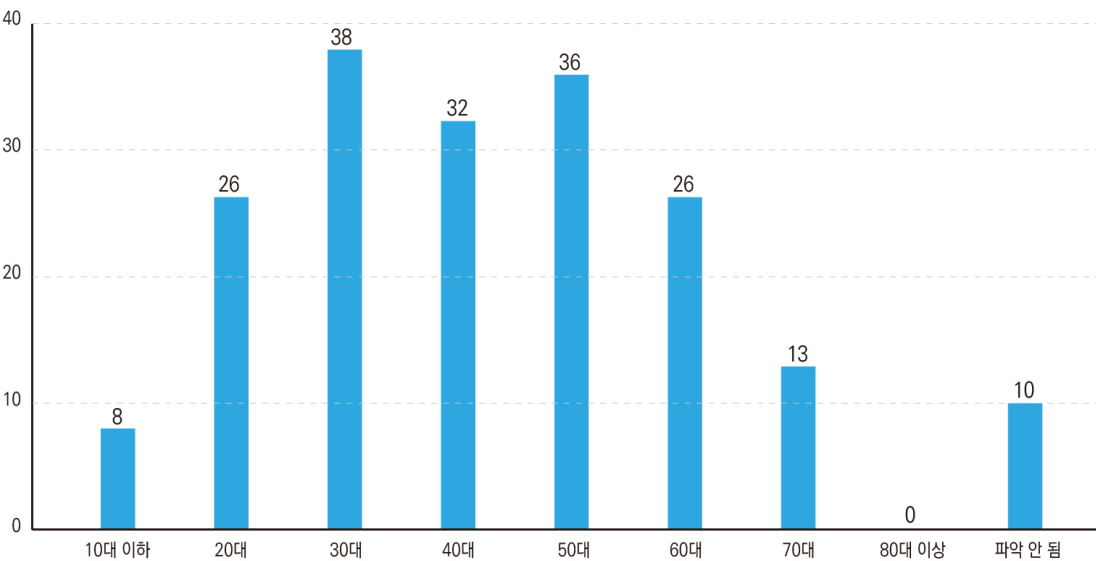
[표 5-73]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0대 이하(~19세)	8	4.2
20대(20~29세)	26	13.8
30대(30~39세)	38	20.1
40대(40~49세)	32	16.9
50대(50~59세)	36	19.0
60대(60~69세)	26	13.8
70대(70~79세)	13	6.9
80대 이상(80세~)	-	-
파악 안 됨	10	5.3
계	189	100.0

[그림 5-35]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건)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재학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 90건(47.6%), 가족 및 친인척 77건(40.7%),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4건(7.4%),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8건(4.2%) 순이었다. 재학대 행위자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4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父) 21건(11.1%), 모르는 사람 19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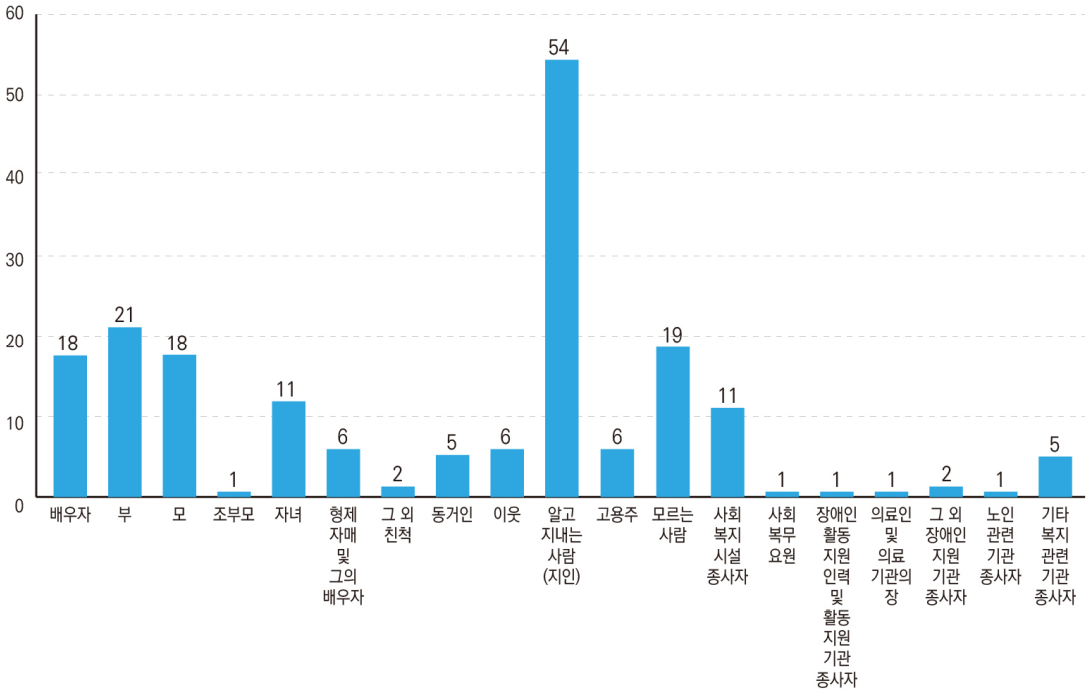
[표 5-74]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8	9.5
	부	21	11.1
	모	18	9.5
	조부모	1	0.5
	자녀	11	5.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	3.2
	그 외 친척	2	1.1
	소계	77	40.7
타인	동거인	5	2.6
	이웃	6	3.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4	28.6
	고용주	6	3.2
	모르는 사람	19	10.1
	소계	90	47.6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	5.8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1	0.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	0.5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5
	소계	14	7.4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종사자	2	1.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	0.5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	2.6
	소계	8	4.2
계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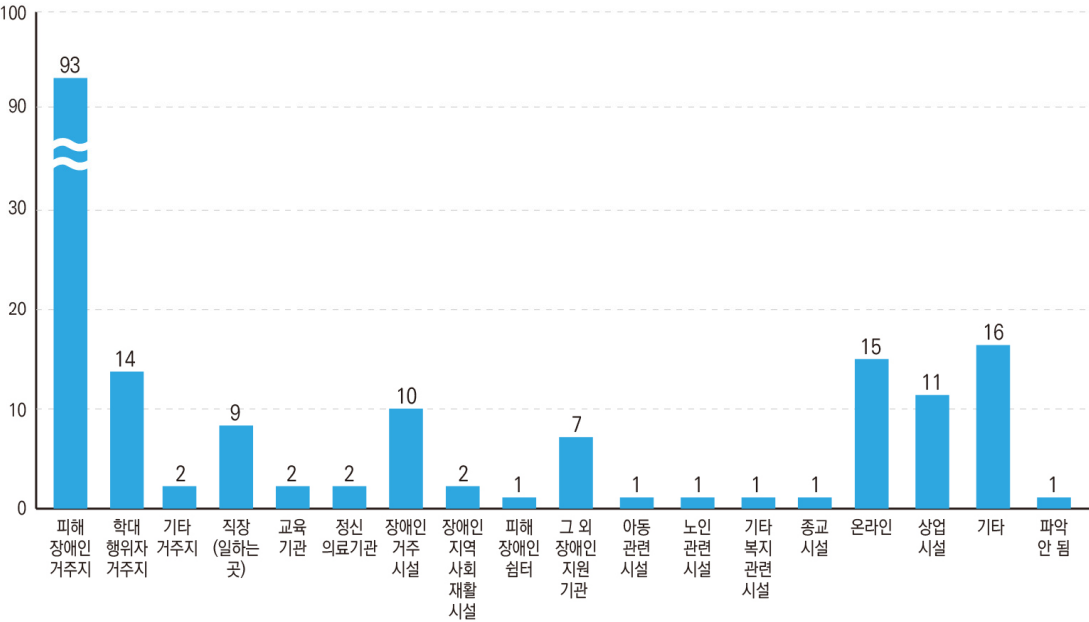
[그림 5-36]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그림 5-37] 재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다. 재학대 발생현황

1) 재학대 발생장소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93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기타 16건(8.5%), 온라인 15건(7.9%), 학대행위자 거주지 14건(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는 전년도(전체 재학대 사례 128건 중 온라인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 3건)와 비교하면 5배 증가했다.

[표 5-75] 재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93	49.2
학대행위자 거주지		14	7.4
기타 거주지		2	1.1
직장(일하는 곳)		9	4.8
교육기관		2	1.1
정신 의료기관		2	1.1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0	5.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	1.1
	피해장애인쉼터	1	0.5
	소계	13	6.9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7	3.7
아동관련시설		1	0.5
노인관련시설		1	0.5
기타 복지관련시설		1	0.5
종교시설		1	0.5
온라인		15	7.9
상업시설		11	5.8
기타		16	8.5
파악 안 됨		1	0.5
계		189	100.0

2)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재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를 보면 우선,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110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143건(75.7%)으로 전체 학대사례(3개월 미만 47.0%, 1년 미만 67.4%)의 지속기간보다 단기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빈도 역시 1~2회 이하가 87건 (46.0%)으로 가장 많았다.

[표 5-76]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이하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2	1.1	6	3.2	6	3.2	17	9.0	79	41.8	110	58.2
	3~6개월 미만	1	0.5	5	2.6	1	0.5	9	4.8	4	2.1	20	10.6
	6~12개월 미만	2	1.1	4	2.1	1	0.5	6	3.2	-	-	13	6.9
	1~3년 미만	2	1.1	11	5.8	6	3.2	5	2.6	3	1.6	27	14.3
	3~5년 미만	1	0.5	4	2.1	-	-	1	0.5	1	0.5	7	3.7
	5~10년 미만	3	1.6	2	1.1	-	-	-	-	-	-	5	2.6
	10년 이상	4	2.1	3	1.6	-	-	-	-	-	-	7	3.7
	계	15	7.9	35	18.5	14	7.4	38	20.1	87	46.0	189	100.0

라. 재학대 학대유형

1)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재학대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57건(30.2%), 경제적 착취 40건(21.2%), 중복 학대 38건(20.1%), 성적 학대 29건(15.3%), 정서적 학대 15건(7.9%), 방임 10건(5.3%)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는 없었다.

[표 5-77]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7	30.2
정서적 학대	15	7.9
성적 학대	29	15.3
경제적 착취	40	21.2
유기	-	-
방임	10	5.3
중복 학대	38	20.1
계	189	100.0

2) 재학대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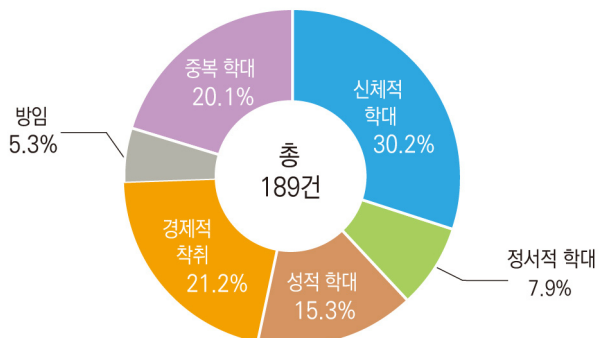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총 23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84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51건(22.0%), 정서적 학대 47건(20.3%), 성적 학대 36건(15.5%), 방임 14건(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8] 재학대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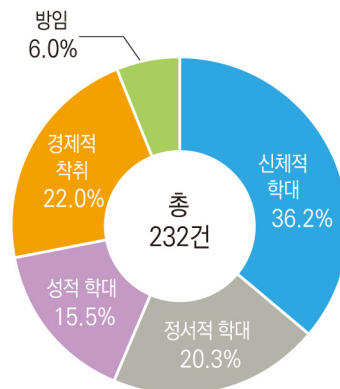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84	36.2
정서적 학대	47	20.3
성적 학대	36	15.5
경제적 착취	51	22.0
유기	-	-
방임	14	6.0
계	232	100.0

[그림 5-38]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그림 5-39]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마.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재학대 사례 189건 중 응급조치는 26건(13.8%) 실시하였으며, 쉼터 이용 23건, 기타 장소 인도 2건, 의료기관 연계 1건 순이었다.

[표 5-79] 재학대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23	-	1	2	26
88.5	-	3.8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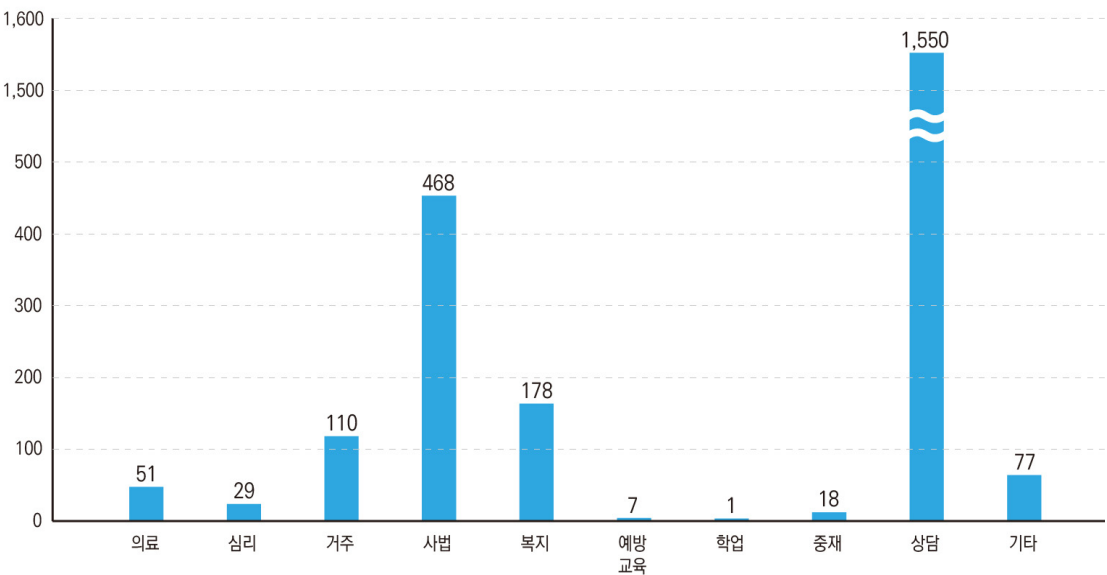
2)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총 2,489회 이뤄졌다. 상담지원이 1,550회(62.3%)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468회(18.8%), 복지지원 178회(7.2%)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5-8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 교육	학업	중재	상담	기타	계
51	29	110	468	178	7	1	18	1,550	77	2,489
2.0	1.2	4.4	18.8	7.2	0.3	0.0	0.7	62.3	3.1	100.0

[그림 5-4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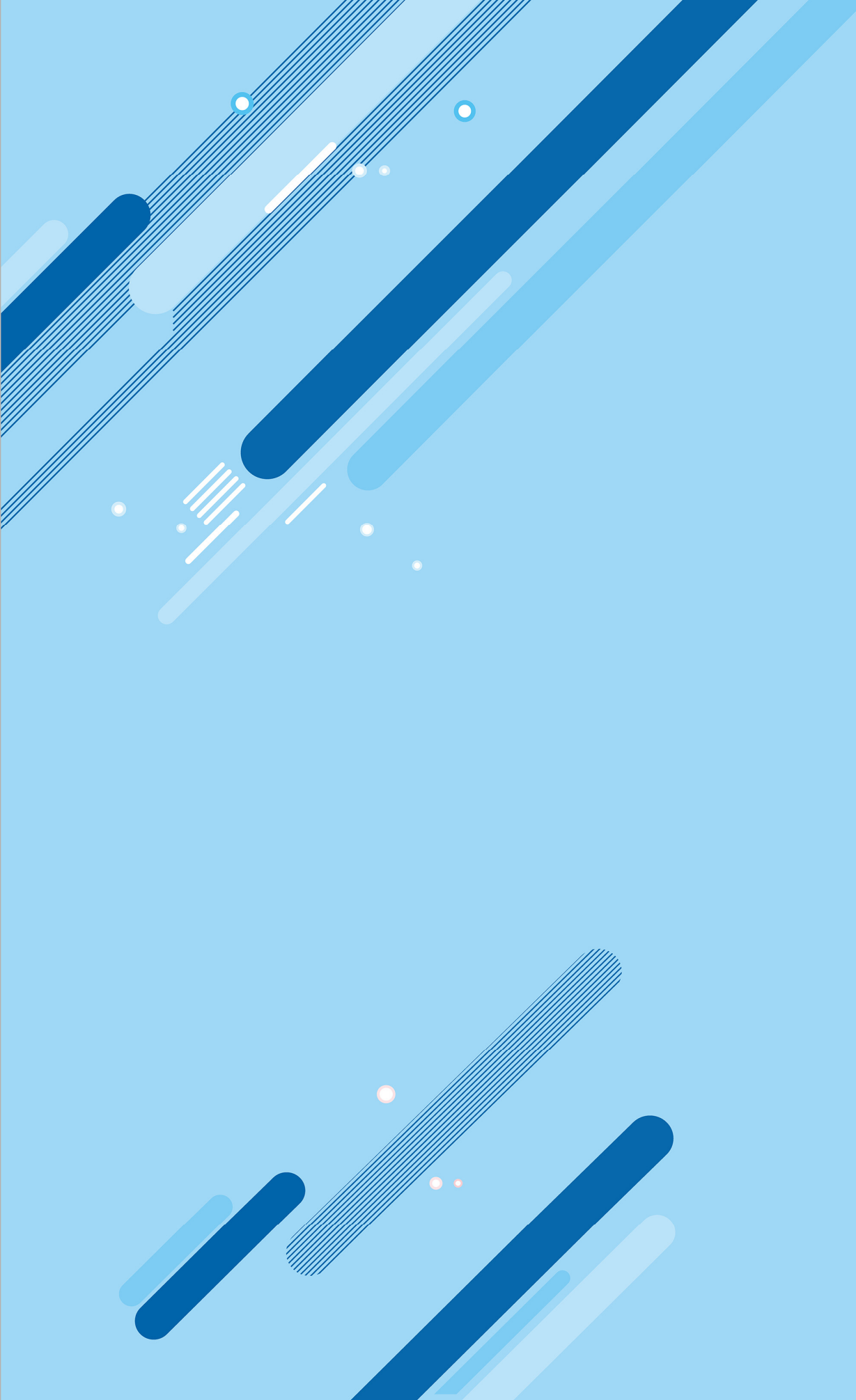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468회 실시했으며, 이 중 기타지원 316회(67.5%), 절차지원 99회(21.2%), 법률상담 24회(5.1%)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5-81] 재학대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노동청 진정	기타	계
10	12	6	24	99	1	316	468
2.1	2.6	1.3	5.1	21.2	0.2	67.5	100.0



6

일반사례 현황

1. 일반사례 현황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현황
3. 차별사례 현황

제6장

일반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사례 외에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한다. 일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 장애인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일반사례 유형

2024년 신고접수된 일반사례는 2,998건으로 전체 신고(6,031건)의 49.7%를 차지하며, 전년도(2,528건) 대비 18.6% 증가했다. 일반사례 유형을 보면 정보문의가 1,708건(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 733건(24.4%),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312건(10.4%), 장애인차별 사례 245건(8.2%)이었다.

[표 6-1]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245	1,708	312	733	2,998
8.2	57.0	10.4	24.4	100.0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지역별 일반사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91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 특별시 688건(22.9%), 충청북도 220건(7.3%), 부산광역시 194건(6.5%) 등의 순이었다.

[표 6-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구분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서울		24	9.8	479	28.0	74	23.7	111	15.1	688	22.9
부산		6	2.4	139	8.1	22	7.1	27	3.7	194	6.5
대구		4	1.6	121	7.1	26	8.3	1	0.1	152	5.1
인천		5	2.0	81	4.7	9	2.9	28	3.8	123	4.1
광주		5	2.0	43	2.5	15	4.8	19	2.6	82	2.7
대전		16	6.5	20	1.2	8	2.6	65	8.9	109	3.6
울산		0	0.0	39	2.3	10	3.2	17	2.3	66	2.2
세종		1	0.4	12	0.7	5	1.6	23	3.1	41	1.4
경기	경기남부	52	21.2	175	10.2	24	7.7	246	33.6	497	16.6
	경기북부	40	16.3	108	6.3	12	3.8	34	4.6	194	6.5
	소계	92	37.6	283	16.6	36	11.5	280	38.2	691	23.0
강원		-	-	100	5.9	11	3.5	8	1.1	119	4.0
충북	충북	2	0.8	84	4.9	3	1.0	19	2.6	108	3.6
	충북북부	1	0.4	89	5.2	2	0.6	20	2.7	112	3.7
	소계	3	1.2	173	10.1	5	1.6	39	5.3	220	7.3
충남		5	2.0	76	4.4	12	3.8	18	2.5	111	3.7
전북		6	2.4	52	3.0	18	5.8	19	2.6	95	3.2
전남		7	2.9	12	0.7	5	1.6	17	2.3	41	1.4
경북		11	4.5	31	1.8	13	4.2	18	2.5	73	2.4
경남		58	23.7	20	1.2	23	7.4	27	3.7	128	4.3
제주		2	0.8	27	1.6	20	6.4	16	2.2	65	2.2
계		245	100.0	1,708	100.0	312	100.0	733	100.0	2,998	100.0

3. 차별사례 현황

가. 차별사례 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접수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세부유형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가 있다.

2024년 접수된 차별사례는 245건으로 전년도(200건)보다 22.5% 증가하였다. 세부 유형을 보면 시설물 접근 관련 사례 65건(26.5%), 기타 사례 41건(16.7%), 고용 관련 사례 35건(14.3%), 재화·용역 일반 사례 23건(9.4%) 등의 순이었다.

[표 6-3] 차별사례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고용	35	14.3
교육	16	6.5
재화·용역일반	23	9.4
보험·금융	2	0.8
시설물 접근	65	26.5
이동·교통수단	22	9.0
정보접근·의사소통	12	4.9
문화·예술·체육	13	5.3
사법·행정	16	6.5
참정권	-	-
기타	41	16.7
계	245	100.0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사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 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 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당사자 대응포기, 기타, 지원 대상 아님 등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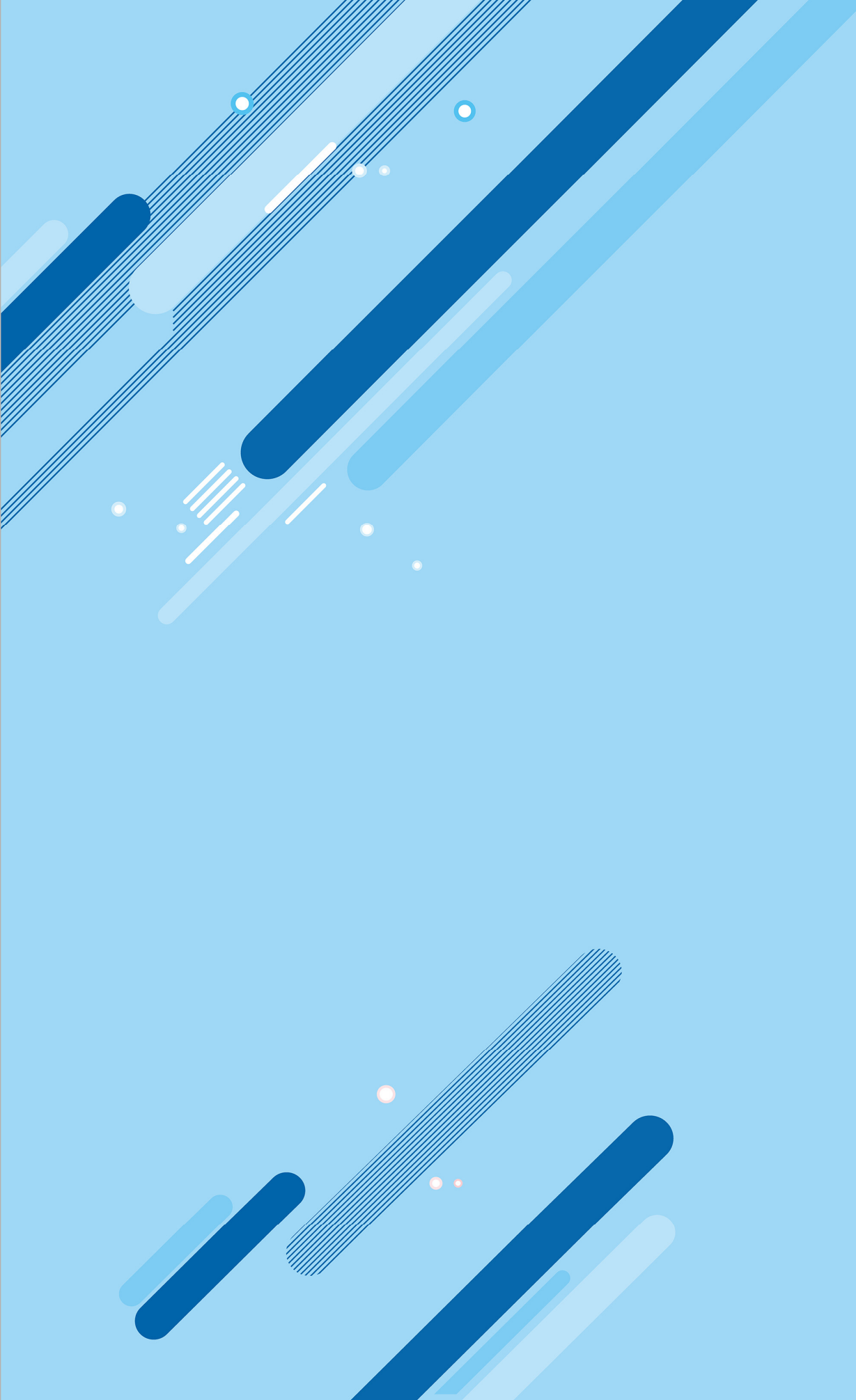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차별사례 245건에 대한 지원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이 69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49건(20.0%), 정서적 지지 20건(8.2%), 당사자 대응포기 18건(7.3%) 등의 순이었다. 진행 중인 사례는 15건(6.1%)이었다.

[표 6-4] 차별사례 지원결과

(단위: 건, %)

처리결과	건수	비율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10	4.1
고발·수사의뢰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49	20.0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3	5.3
소송구조	-	-
조정·중재	13	5.3
정보제공	69	28.2
조사 중 해결	10	4.1
정서적 지지	20	8.2
타기관 및 자원 연계	7	2.9
당사자 대응포기	18	7.3
기타	11	4.5
지원 대상 아님	10	4.1
진행 중	15	6.1
계	245	100.0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7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
4.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5. 연도별 학대행위자
6.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7. 연도별 재학대

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본 장에서는 지난 7개년의 장애인학대 현황 중 주요 항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월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17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신고 및 대응, 피해자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3,658건 대비 2024년 전체 신고는 6,031건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전체 신고 중 장애인학대의심사례는 2018년 1,835건에 비해 2024년 3,033건으로 65.3% 증가하였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발견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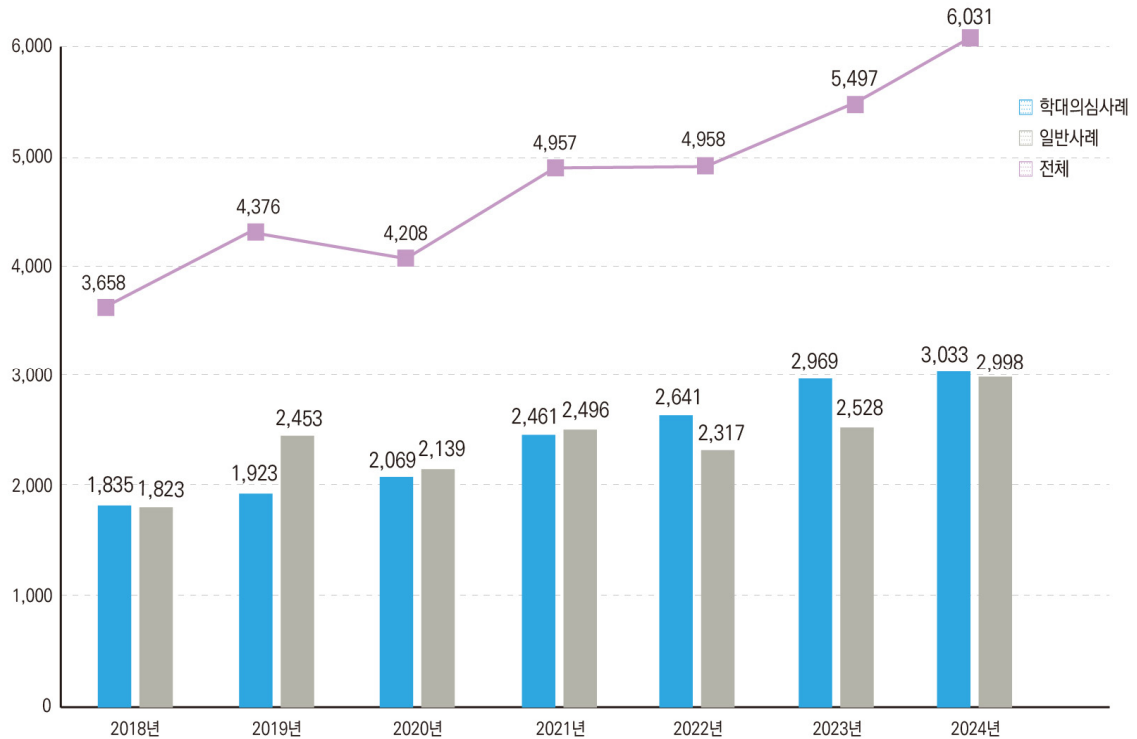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증감율	일반사례		증감율	계		증감율
2018년	1,835	50.2	-	1,823	49.8	-	3,658	100.0	-
2019년	1,923	43.9	4.8	2,453	56.1	34.6	4,376	100.0	19.6
2020년	2,069	49.2	7.6	2,139	50.8	▲12.8	4,208	100.0	▲3.8
2021년	2,461	49.6	18.9	2,496	50.4	16.7	4,957	100.0	17.8
2022년	2,641	53.3	7.3	2,317	46.7	▲7.2	4,958	100.0	-
2023년	2,969	54.0	12.4	2,528	46.0	9.1	5,497	100.0	10.9
2024년	3,033	50.3	2.2	2,998	49.7	18.6	6,031	100.0	9.7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신고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019년·2022년은 증가, 2018년·2020년·2021년·2023년·2024년은 감소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비해 낮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2.2% 증가하여 신고 의무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신고율이 감소해, 신고의무자 교육 도입에 따른 일시적 컨벤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본인 신고율로 2018년 194건(10.6%)이었으나 2024년 612건(20.2%)으로 3.2배 증가하였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읽기 쉬운 교육 자료들을 제작한 바 있다. 그 외 누구나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들이 다른 기관들에서 제작되었고, 이는 당사자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당사자를 둘러싼 누군가의 신고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학대 예방, 인권 교육자료가 제작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반면, 본인 신고 20.2%를 제외한 79.8%는 본인 외 신고자이므로 이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 고 의 무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21	22.9	308	16.0	185	8.9	195	7.9	205	7.8	156	5.3	107	3.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3	13.8	371	19.3	329	15.9	359	14.6	371	14.0	372	12.5	365	12.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3	0.1	5	0.2	15	0.5	3	0.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	-	-	-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0	2.2	35	1.8	57	2.8	85	3.5	75	2.8	58	2.0	96	3.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0.4	11	0.6	13	0.6	7	0.3	14	0.5	11	0.4	15	0.5
	의료기사	-	-	1	0.1	1	0.0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119구급대의 대원	-	-	-	-	1	0.0	-	-	3	0.1	1	0.0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4	0.2	3	0.2	9	0.4	6	0.2	6	0.2	5	0.2	8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	-	-	-	1	0.0	-	-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2	0.1	4	0.2	3	0.1	1	0.0	1	0.0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1	0.1	-	-	1	0.0	2	0.1	3	0.1	7	0.2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33	1.8	41	2.1	69	3.3	57	2.3	-	-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97	3.7	86	2.9	113	3.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1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9	1.0	35	1.8	30	1.4	30	1.2	42	1.6	54	1.8	36	1.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3	0.2	-	-	1	0.0	2	0.1	1	0.0	4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	0.7	27	1.4	21	1.0	15	0.6	25	0.9	22	0.7	28	0.9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1	4	0.2	-	-	-	-	2	0.1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2	0.1	-	-	-	-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0.1	-	-	-	-	5	0.2	2	0.1	1	0.0	3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2	0.1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0.2	6	0.3	2	0.1	1	0.0	3	0.1	2	0.1	3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1	0.0	1	0.0	2	0.1	2	0.1	1	0.0
	장기요양요원	4	0.2	9	0.5	4	0.2	2	0.1	2	0.1	5	0.2	6	0.2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	-	-	-	5	0.2	5	0.2	2	0.1
	소계	802	43.7	858	44.6	728	35.2	771	31.3	865	32.8	802	27.0	797	26.3
비 신 고 의 무 자	본인	194	10.6	162	8.4	274	13.2	325	13.2	435	16.5	530	17.9	612	20.2
	가족 및 친인척	248	13.5	247	12.8	274	13.2	325	13.2	435	16.5	530	17.9	612	20.2
	유관 기관 종사자	408	22.2	379	19.7	408	22.2	379	19.7	408	22.2	379	19.7	408	22.2
	타인	176	9.6	273	14.2	192	9.3	256	10.4	224	8.5	287	9.7	263	8.7
	파악 안 됨	7	0.4	4	0.2	8	0.4	26	1.1	38	1.4	34	1.1	43	1.4
	소계	1,033	56.3	1,065	55.4	1,341	64.8	1,690	68.7	1,776	67.2	2,167	73.0	2,236	73.7
	계	1,835	100.0	1,923	100.0	2,069	100.0	2,461	100.0	2,641	100.0	2,969	100.0	3,033	100.0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024년 학대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37건(64.7%)으로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폐성장애 역시 2018년 22건(2.5%)에서 2024년 93건(6.4%)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전체 장애인구¹⁵⁾에서 지적장애는 8.9%, 자폐성장애는 1.8%임에도 이들이 학대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장애인구에서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율인 것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학대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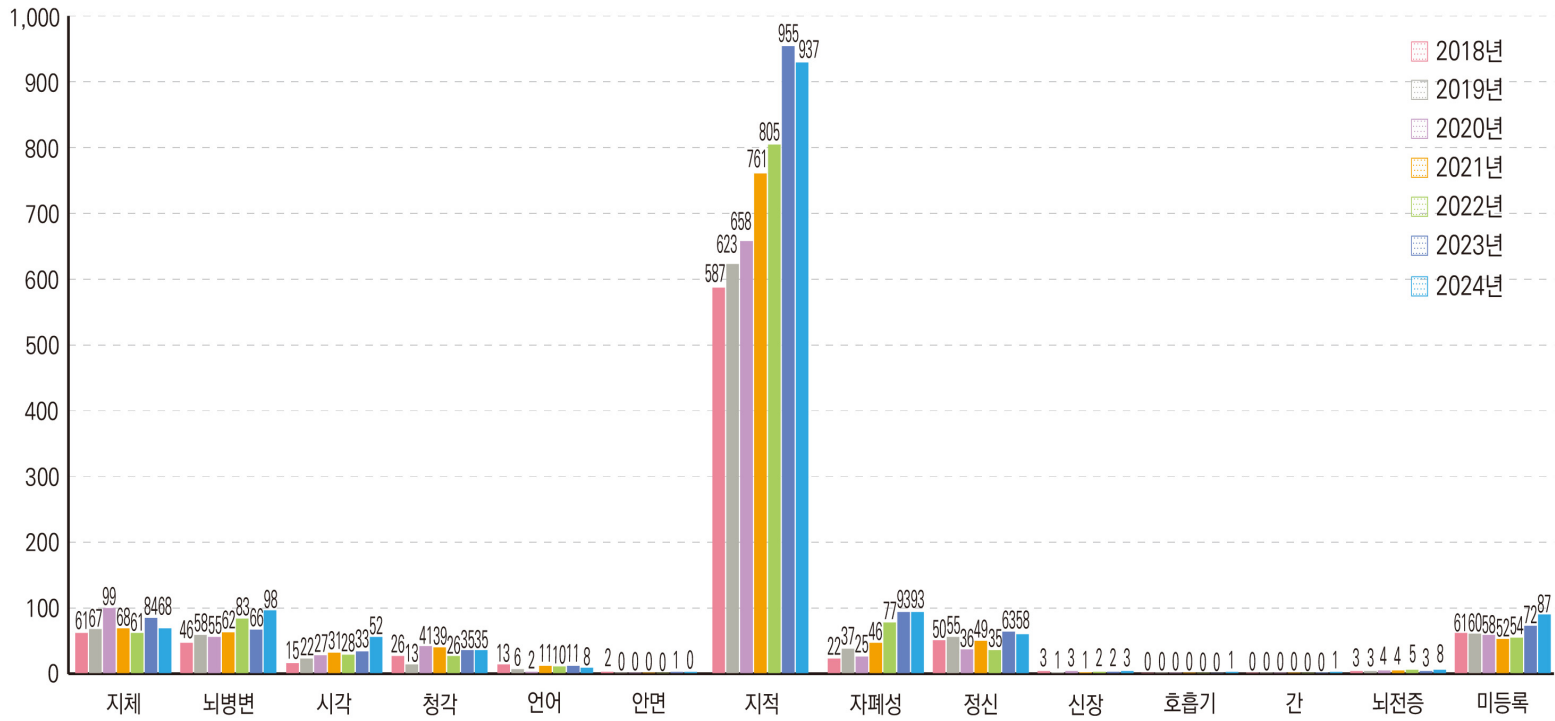
(단위: 건, %)

장애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체장애	61	6.9	67	7.1	99	9.8	68	6.0	61	5.1	84	5.9	68	4.7
뇌병변장애	46	5.2	58	6.1	55	5.5	62	5.5	83	7.0	66	4.7	98	6.8
시각장애	15	1.7	22	2.3	27	2.7	31	2.8	28	2.4	33	2.3	52	3.6
청각장애	26	2.9	13	1.4	41	4.1	39	3.5	26	2.2	35	2.5	35	2.4
언어장애	13	1.5	6	0.6	2	0.2	11	1.0	10	0.8	11	0.8	8	0.6
안면장애	2	0.2	-	-	-	-	-	-	-	-	1	0.1	-	-
지적장애	587	66.0	623	65.9	658	65.3	761	67.7	805	67.9	955	67.3	937	64.7
자폐성장애	22	2.5	37	3.9	25	2.5	46	4.1	77	6.5	93	6.6	93	6.4
정신장애	50	5.6	55	5.8	36	3.6	49	4.4	35	3.0	63	4.4	58	4.0
신장장애	3	0.3	1	0.1	3	0.3	1	0.1	2	0.2	2	0.1	3	0.2
심장장애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1	0.1
간장애	-	-	-	-	-	-	-	-	-	-	-	-	1	0.1
뇌전증장애	3	0.3	3	0.3	4	0.4	4	0.4	5	0.4	3	0.2	8	0.6
미등록	61	6.9	60	6.3	58	5.8	52	4.6	54	4.6	72	5.1	87	6.0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1,449	100.0

15) 2024년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구 2,631,356명(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4.12.말 기준).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4. 연도별 학대행위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가족, 주변인, 기관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2018년 271건(30.5%)에서 2024년 551건(38.0%)으로 103.3% 증가했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도 여전히 많은 수(542건,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의 비율은 학대행위자 개별 유형에서 2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언론을 통해 접하는 장애인학대 사건들을 보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행위자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합리적이고 일관된 처벌 체계를 확립하고, 행위자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또 학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사회 전반의 높은 인권 감수성 함양과 장애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2	5.8	40	4.2	63	6.3	78	6.9	75	6.3	100	7.1	113	7.8
	부	115	12.9	113	12.0	90	8.9	134	11.9	125	10.5	143	10.1	150	10.4
	모					66	6.5	70	6.2	87	7.3	92	6.5	115	7.9
	조부모	7	0.8	4	0.4	3	0.3	7	0.6	7	0.6	9	0.6	12	0.8
	자녀	13	1.5	13	1.4	23	2.3	22	2.0	37	3.1	41	2.9	38	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3	6.0	42	4.4	54	5.4	50	4.4	62	5.2	72	5.1	76	5.2
	그 외 친척	31	3.5	41	4.3	32	3.2	46	4.1	39	3.3	40	2.8	47	3.2
	소계	271	30.5	253	26.8	331	32.8	407	36.2	432	36.4	497	35.0	551	38.0
타인	동거인	26	2.9	44	4.7	49	4.9	69	6.1	33	2.8	56	3.9	45	3.1
	이웃	45	5.1	36	3.8	38	3.8	29	2.6	30	2.5	46	3.2	36	2.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93	10.5	173	18.3	203	20.1	235	20.9	244	20.6	297	20.9	328	22.6
	고용주	58	6.5	48	5.1	62	6.2	33	2.9	24	2.0	29	2.0	34	2.3
	모르는 사람	42	4.7	64	6.8	68	6.7	66	5.9	94	7.9	138	9.7	99	6.8
	소계	264	29.7	365	38.6	420	41.7	432	38.4	425	35.8	566	39.9	542	37.4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	-	-	-	-	-	-	1	0.1	-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05	23.1	198	21.0	157	15.6	137	12.2	184	15.5	184	13.0	163	1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74	8.3	69	7.3	17	1.7	15	1.3	36	3.0	19	1.3	35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6	0.6	58	5.2	2	0.2	2	0.1	17	1.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	-	1	0.1	-	-	-	-	1	0.1
	그 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15	1.5	5	0.4	5	0.4	29	2.0	12	0.8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	-	-	-	-	-	-	8	0.7	8	0.6	4	0.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0	7.9	54	5.7	17	1.7	17	1.5	24	2.0	26	1.8	25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0.9	1	0.1	2	0.2	5	0.4	6	0.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1	0.1	-	-	2	0.1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0.2	5	0.4	6	0.5	20	1.4	2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	-	1	0.1	1	0.1	1	0.1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13	1.3	13	1.2	-	-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28	2.4	16	1.1	24	1.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1	0.1	-	-	1	0.1	-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1	0.1	-	-	1	0.1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1	0.1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1	4	0.4	1	0.1	2	0.1	4	0.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6	0.5	-	-	-	-
	소계					237	23.5	258	23.0	304	25.6	316	22.3	298	20.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49	39.3	321	34.0	11	1.1	2	0.2	1	0.1	4	0.3	3	0.2
	의료기관 종사자					1	0.1	1	0.1	1	0.1	6	0.4	3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1	12	1.1	8	0.7	15	1.1	19	1.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2	0.2	1	0.1	3	0.2	1	0.1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1	0.1	-	-	-	-	4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3	0.3	4	0.3	2	0.1	10	0.7
	경찰공무원					1	0.1	-	-	-	-	1	0.1	-	-
	일반공무원					-	-	-	-	1	0.1	-	-	-	-
	소계					14	1.4	21	1.9	16	1.3	31	2.2	40	2.8
본인		-	-	-	-	2	0.2	1	0.1	2	0.2	2	0.1	1	0.1
파악 안 됨		5	0.6	6	0.6	4	0.4	5	0.4	7	0.6	6	0.4	17	1.2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1,449	100.0

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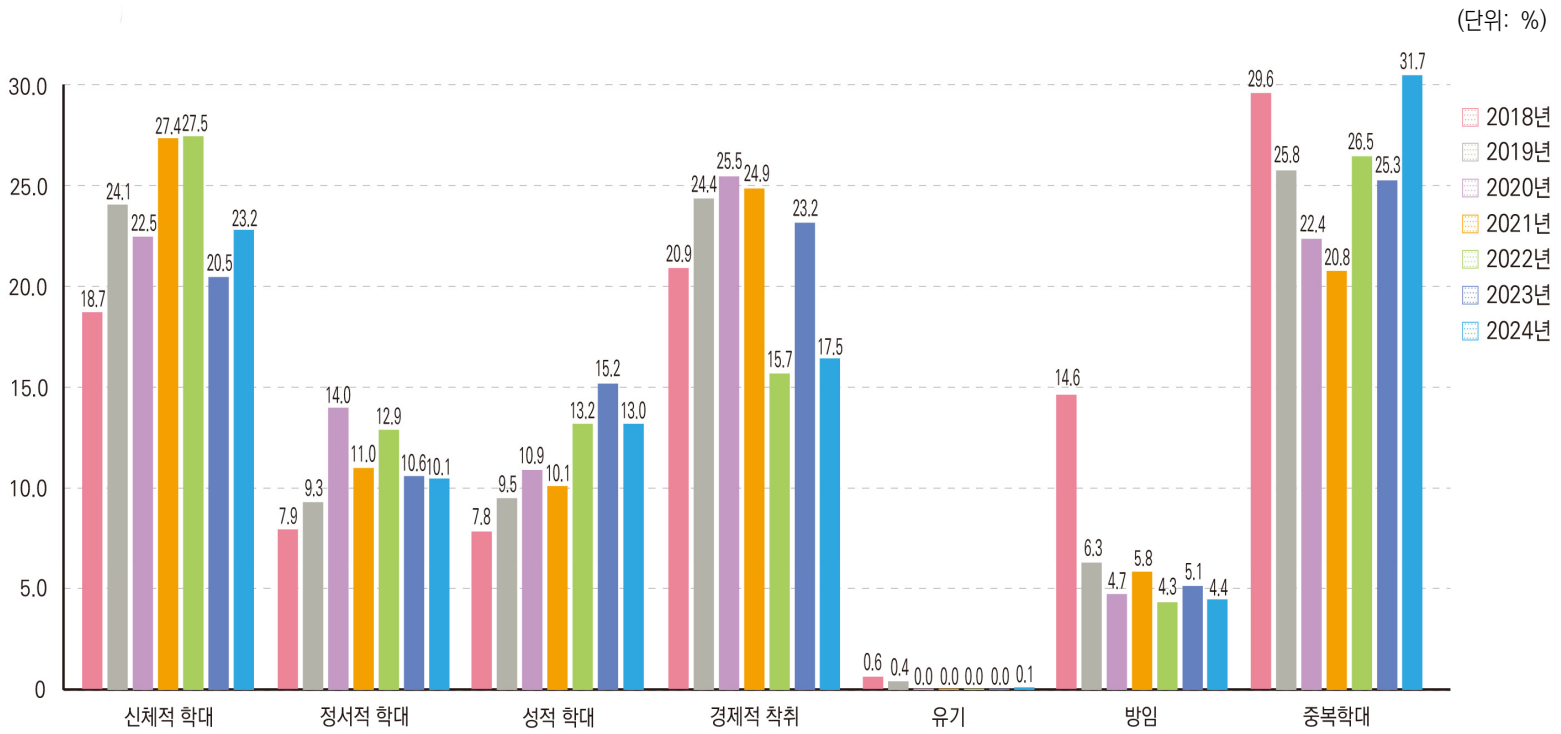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복 학대가 매년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2024년에는 460건으로 31.7%까지 상승하였다. 장애인학대가 하나의 학대 행위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학대 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체적 학대	166	18.7	228	24.1	227	22.5	308	27.4	326	27.5	291	20.5	336	23.2
정서적 학대	70	7.9	88	9.3	141	14.0	124	11.0	153	12.9	151	10.6	146	10.1
성적 학대	69	7.8	90	9.5	110	10.9	113	10.1	156	13.2	216	15.2	188	13.0
경제적 착취	186	20.9	231	24.4	257	25.5	280	24.9	186	15.7	329	23.2	253	17.5
유기	5	0.6	4	0.4	-	-	-	-	-	-	-	-	2	0.1
방임	130	14.6	60	6.3	47	4.7	65	5.8	51	4.3	72	5.1	64	4.4
중복 학대	263	29.6	244	25.8	226	22.4	234	20.8	314	26.5	359	25.3	460	31.7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1,449	100.0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학대유형을 살펴봤을 때, 신체적 학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까지는 경제적 착취였으나 2022년, 2023년, 2024년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할 경우 정서적 학대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정서적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정서적 학대가 다른 학대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착취는 2023년 대비 2024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학대유형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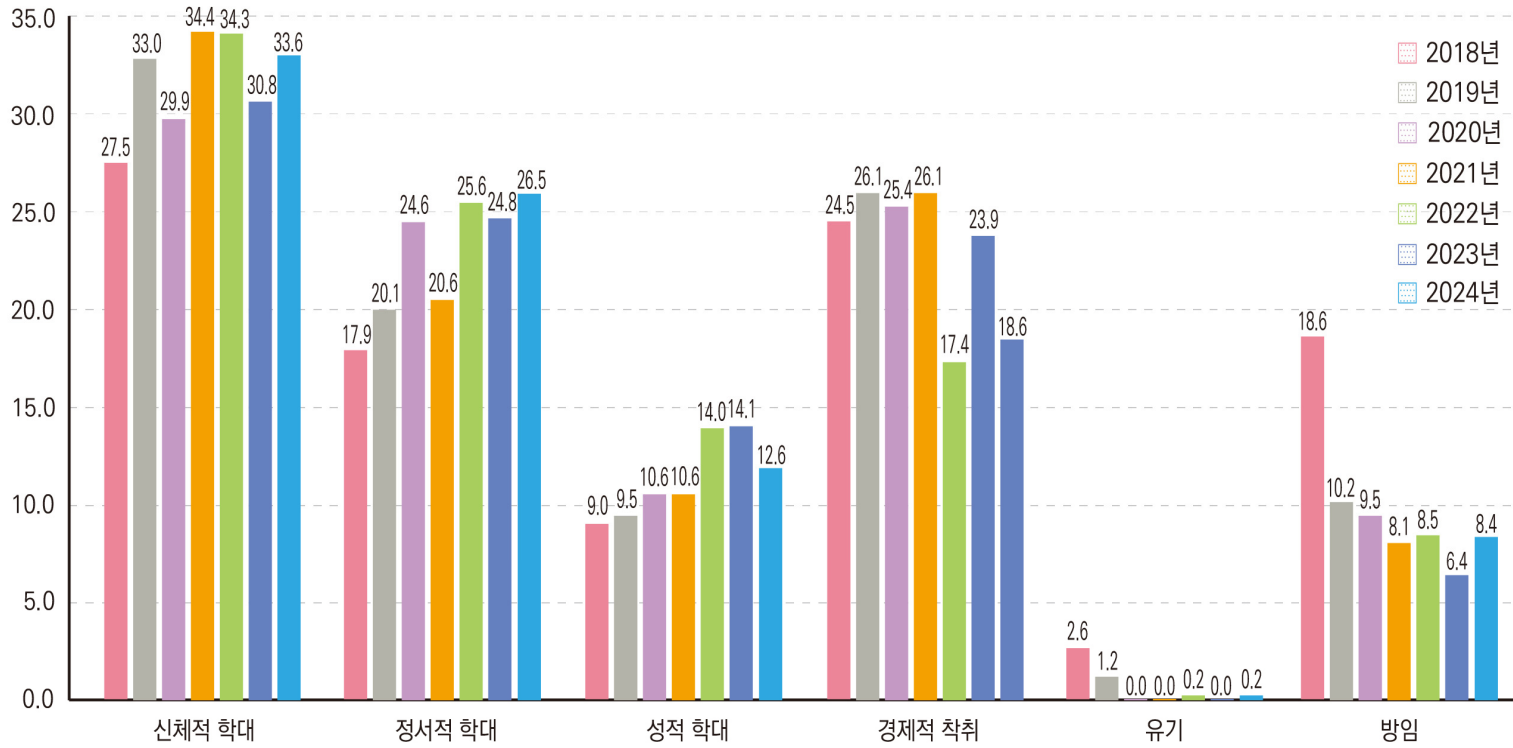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체적 학대	339	27.5	415	33.0	378	29.9	482	34.4	538	34.3	572	30.8	692	33.6
정서적 학대	221	17.9	253	20.1	311	24.6	289	20.6	401	25.6	460	24.8	547	26.5
성적 학대	111	9.0	119	9.5	134	10.6	149	10.6	219	14.0	261	14.1	260	12.6
경제적 착취	302	24.5	328	26.1	321	25.4	366	26.1	273	17.4	443	23.9	384	18.6
유기	32	2.6	15	1.2	-	-	-	-	3	0.2	-	-	5	0.2
방임	229	18.6	128	10.2	120	9.5	114	8.1	133	8.5	119	6.4	174	8.4
계	1,234	100.0	1,258	100.0	1,264	100.0	1,400	100.0	1,567	100.0	1,855	100.0	2,062	100.0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



6. 연도별 재학대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재학대 사례’라고 한다. 재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49건에서 2024년 189건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3.9배 증가했다. 재학대 비율도 함께 증가하여 2020년 4.9%에서 2024년 13.0%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학대 판정 사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 상황이 반복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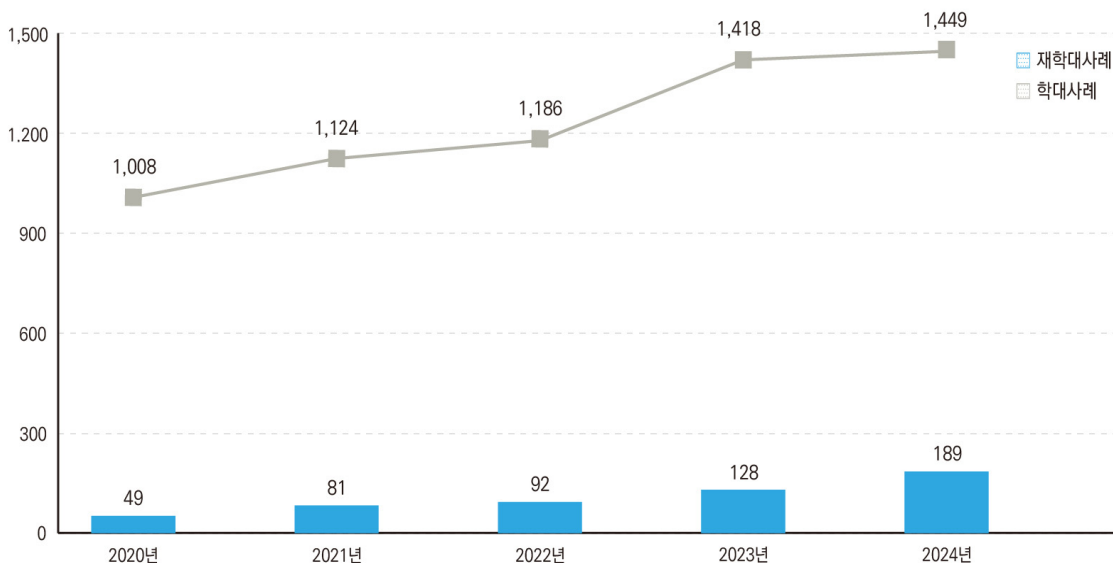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재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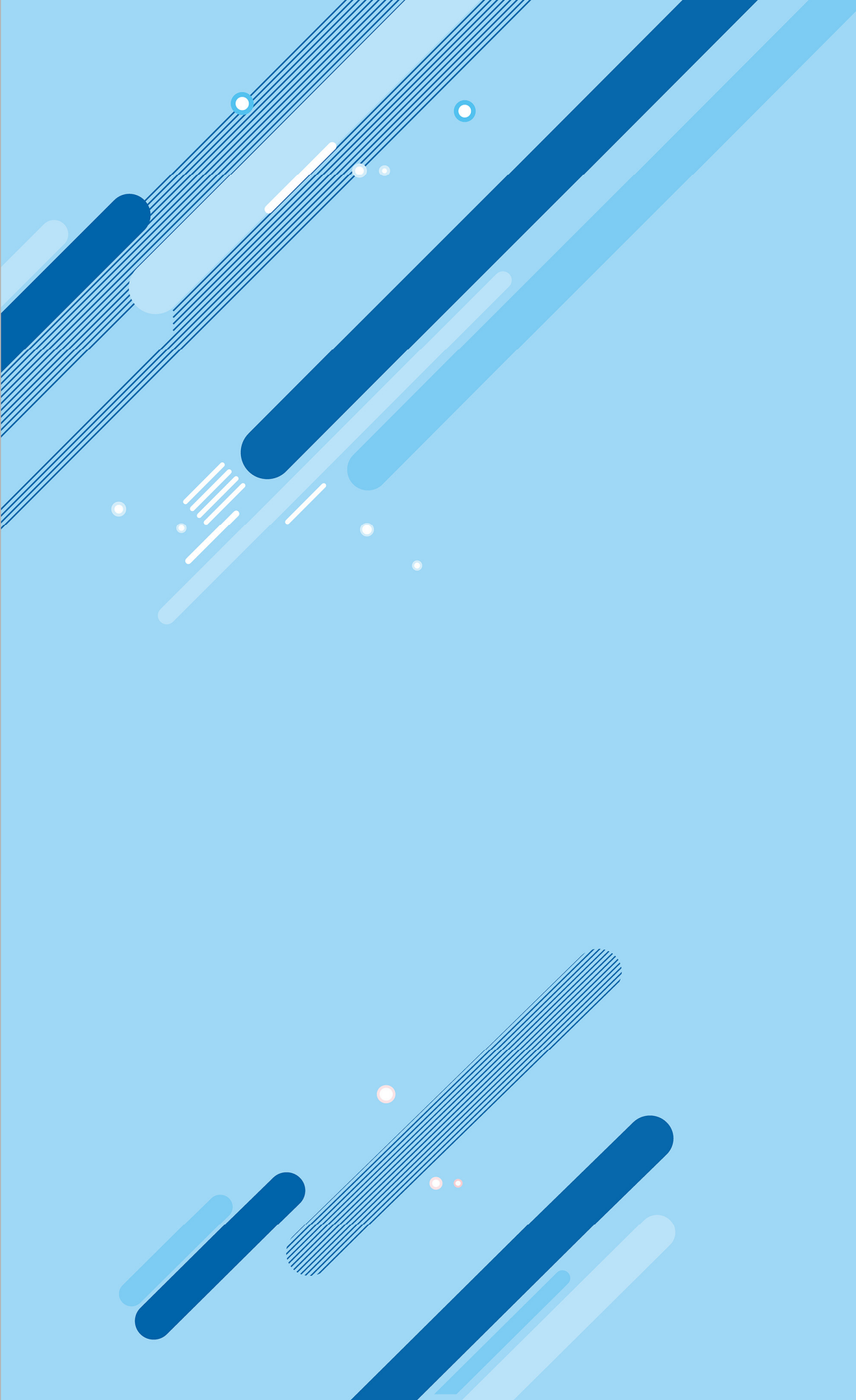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대사례	1,008	1,124	1,186	1,418	1,449
재학대건수	49	81	92	128	189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	4.9	7.2	7.8	9.0	13.0

[그림 7-5] 연도별 재학대

(단위: 건)





부록

—

부록

1. 특성별 장애인학대 상담 및 지원 부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부표 1-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2	59	16	4	98	179
1.1	33.0	8.9	2.2	54.7	100.0

[부표 1-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4	49	57	110
3.6	44.5	51.8	100.0

[부표 1-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81	16	7	10	2	280	396
20.5	4.0	1.8	2.5	0.5	70.7	100.0

[부표 1-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5	135	145	605	890
0.6	15.2	16.3	68.0	100.0

[부표 1-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24	-	15	3	42
57.1	-	35.7	7.1	100.0

[부표 1-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7	-	7
100.0	-	100.0

[부표 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32	27	59
54.2	45.8	100.0

[부표 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2	-	-	3	5
40.0	-	-	60.0	100.0

장애아동 학대사례

[부표 2-1] 피해 장애아동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1	14	4	-	12	31
3.2	45.2	12.9	-	38.7	100.0

[부표 2-2] 피해 장애아동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1	24	35	60
1.7	40.0	58.3	100.0

[부표 2-3] 피해 장애아동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16	-	2	-	-	12	30
53.3	-	6.7	-	-	40.0	100.0

[부표 2-4] 피해 장애아동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8	75	53	140	276
2.9	27.2	19.2	50.7	100.0

[부표 2-5] 피해 장애아동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5	-	9	-	14
35.7	-	64.3	-	100.0

[부표 2-6] 피해 장애아동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3	-	3
100.0	-	100.0

[부표 2-7] 피해 장애아동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1	1	2
50.0	50.0	100.0

[부표 2-8] 피해 장애아동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	-	-	-	-
-	-	-	-	-

노동력 착취사례

[부표 3-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	20	1	-	12	33
-	60.6	3.0	-	36.4	100.0

[부표 3-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	-	5	5
-	-	100	100

[부표 3-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9	2	2	2	1	39	55
16.4	3.6	3.6	3.6	1.8	70.9	100.0

[부표 3-4]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2	19	16	72	109
1.8	17.4	14.7	66.1	100.0

[부표 3-5]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2	-	1	-	3
66.7	-	33.3	-	100.0

[부표 3-6]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	-	-
-	-	-

[부표 3-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9	11	20
45.0	55.0	100.0

[부표 3-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3	-	-	-	3
100.0	-	-	-	100.0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부표 4-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1	4	2	5	56	68
1.5	5.9	2.9	7.4	82.4	100.0

[부표 4-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	11	28	39
-	28.2	71.8	100.0

[부표 4-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3	1	-	1	1	55	61
4.9	1.6	-	1.6	1.6	90.2	100.0

[부표 4-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2	40	22	111	175
1.1	22.9	12.6	63.4	100.0

[부표 4-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4	-	1	1	6
66.7	-	16.7	16.7	100.0

[부표 4-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	-	-
-	-	-

[부표 4-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	1	1
-	100.0	100.0

[부표 4-8]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	-	-	-	-
-	-	-	-	-

재학대 사례

[부표 5-1] 재학대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1	13	5	-	32	51
2.0	25.5	9.8	-	62.7	100.0

[부표 5-2] 재학대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1	17	11	29
3.4	58.6	37.9	100.0

[부표 5-3]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25	5	4	3	1	72	110
22.7	4.5	3.6	2.7	0.9	65.5	100.0

[부표 5-4] 재학대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1	34	38	105	178
0.6	19.1	21.3	59.0	100.0

[부표 5-5] 재학대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1	-	6	-	7
14.3	-	85.7	-	100.0

[부표 5-6] 재학대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1	-	1
100.0	-	100.0

[부표 5-7]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7	11	18
38.9	61.1	100.0

[부표 5-8] 재학대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기관	기타	계
-	-	-	-	-
-	-	-	-	-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안내

사례지원 개요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장애인과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 행위자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사례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에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그 과정은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사례판정 이후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의 개입을 종료한다.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한다.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 신고도 가능하다.

◆ 학대조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에 따라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의7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동법 제59조의7 제5항, 제90조 제3의5항에 근거하여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법 제59조의7 제2항에 근거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 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 되면 조사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 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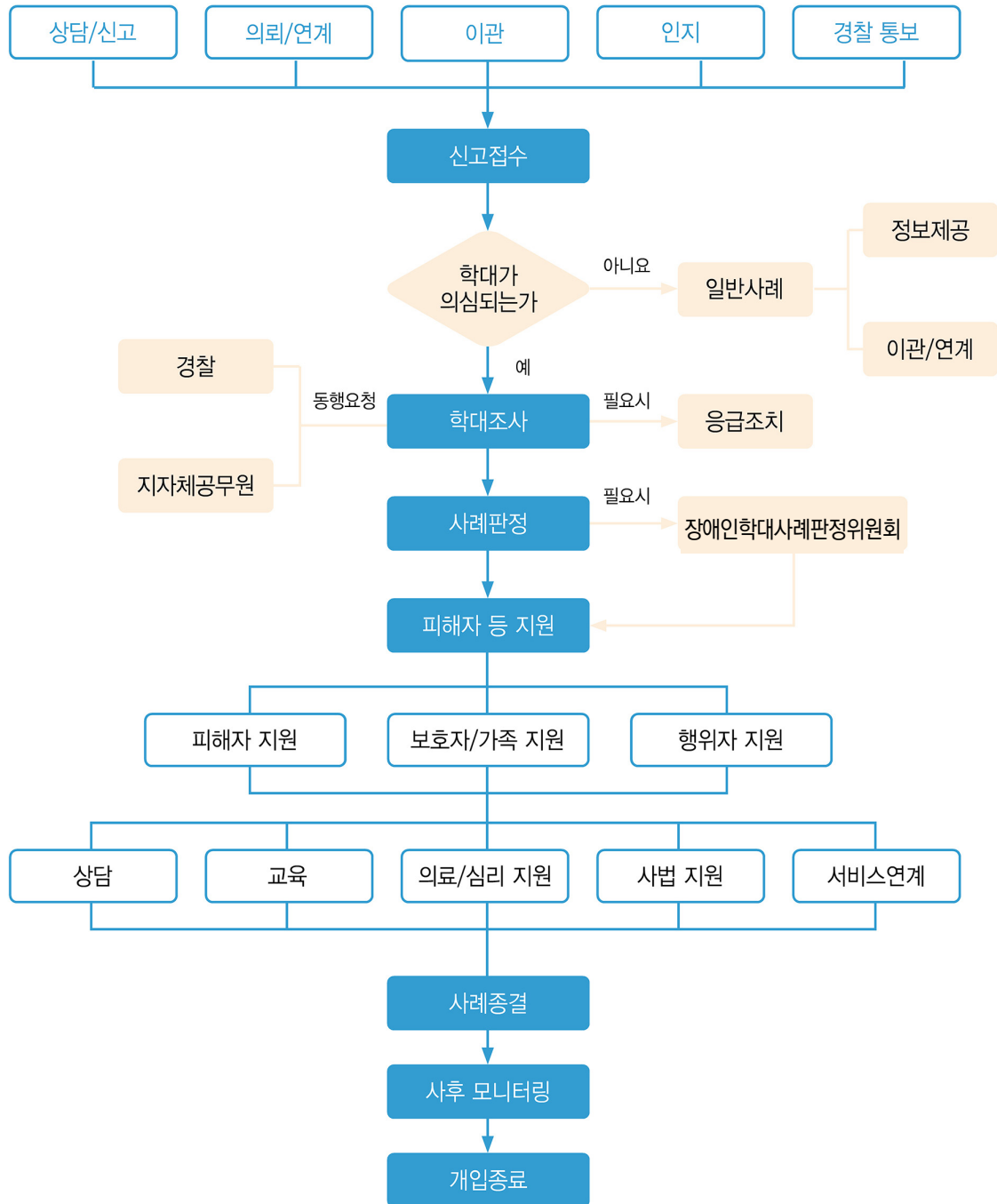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한다.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 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구분	주요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위 법률 제59조의1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2025. 8. 31. 기준, 20개)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양평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429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4층(화원읍)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22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6196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3454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44669)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보람동)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11485)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삼송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2439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2879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빌딩슬레이관 3층 303-1호(분평동)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847-8295	(27352) 충청북도 충주시 갯고개로 166, 3층(연수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3119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5496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효자동)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5861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376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굴로 5길 21, 1층(이도이동)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2025년 9월
발 행 일	2025년 9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편 집 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정식
편집위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지형, 조은임, 최지연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인 쇄	라온기획(044-999-3897)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신고번호
1644-8295

